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4년도 시행계획

2024. 5.



차 례 CONTENTS



과 제		소관	페이지
1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1-1-1-①	불법촬영 예방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	경찰청	1
1-1-1-②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 등 유통사범 엄정단속	대검찰청 경찰청	3
1-1-2-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여가부	9
1-1-2-②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효율화	여가부 방심위	12
1-1-2-③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법무부	18
1-1-2-④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대검찰청	22
1-1-3-②	다중이용시설 수사점검	행안부 국토부 복지부	30
1-2-1-①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불법 촬영기기 규제 관리	과기부	38
1-2-2-②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 시행	방통위	40
1-2-2-③	영상물 재유포 방지	방심위	44
1-2-3-①	약물이용 성범죄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력 강화	경찰청 여가부	47
1-3-1-①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 제작·유통사범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법무부 경찰청	49

과 제		소관	페이지
1-3-2-①	해외성매매 방지 체계 구축 및 단속 강화	외교부 경찰청	53
1-4-1-①	성매매·알선 정보 전달 매체 감시 강화	방통위 경찰청	58
1-4-1-②	랜덤채팅앱 등 온라인 성매매 등의 불건전 정보 차단	여가부	62
1-4-2-①	1인 가구 대상 성범죄 대응 강화	경찰청	68
1-4-3-①	장애인 대상 학대·성범죄 피해 실태 파악 및 예방교육 강화	복지부	71
1-4-3-②	장애인거주시설 폭력예방 강화	복지부	74
1-4-3-③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 전문 지원기관 확대	여가부	76
1-4-3-④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종사자 역량 강화		76
1-4-4-①	사업장 대상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점검	고용부	79
1-4-4-②	이주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강화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82
1-4-4-③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활동 확대	여가부	91
1-4-4-④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여성 폭력피해 점검	법무부	94
1-4-5-①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정보 접근성 확대	여가부	96
1-4-5-②	이주여성 폭력피해 신고 활성화	여가부 고용부 법무부	98
1-4-5-③	이주여성 보호·지원을 위한 지원기반 확충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여가부	103
1-4-5-④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운영	고용부	106

과 제		소관	페이지
2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		
2-1-1-①	가정폭력 사건 대응력 강화	경찰청	108
2-1-1-②	가정폭력 재범 방지 조치 강화	경찰청	112
2-1-2-①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 현장 대응력 강화	경찰청	115
2-2-1-①	형사절차 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대검찰청 경찰청	118
2-2-1-②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활성화	법무부	127
2-2-1-③	2차 피해 방지 및 불법촬영 삭제·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경찰청	133
2-2-1-④	신고처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및 조력자 보호강화	여가부 고용부	135
2-2-2-①	형사절차 상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청	139
2-2-3-①	형사절차 상 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청	142
2-2-3-②	수사 과정에서의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여가부 법무부	144
2-2-4-①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가부 경찰청	149
2-2-5-①	여성폭력 2차피해 방지교육 신설	법무부 대검찰청 국방부 고용부 국토부 경찰청 해경	153
2-3-1-①	재범억제를 위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법무부 경찰청	166
2-3-1-②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제도 관리 강화	여가부	172
2-3-1-③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법무부 여가부	175
2-3-2-①	성구매자 교육(존스쿨) 효과성 분석을 통한 교육 운영 내실	법무부	181

과 제		소관	페이지
3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내실화		
3-1-1-①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교육부 여가부	183
3-1-1-②	교육 분야 인식개선 추진	교육부 여가부	189
3-1-1-③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교육부	196
3-1-1-④	초·중·고등학교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개선	교육부	298
3-1-1-⑤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	교육부	201
3-1-1-⑥	대학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개선	교육부	203
3-1-2-②	재발방지 조치 강화	교육부	206
3-1-3-②	문화·예술계 여성폭력 예방조치 내실화	문체부	209
3-1-3-③	문화·예술분야 가해자 등에 대한 제재 강화	문체부	213
3-1-3-④	문화·예술계 전담 상담센터 활성화	문체부	216
3-1-4-①	스포츠비리 조사 및 체육인 인권보호 전담기구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문체부	220
3-1-4-③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 실시	여가부	225
3-2-1-①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여가부	228
3-2-1-②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및 조치의무 이행력 제고	고용부	230
3-2-1-③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구제절차 내실화	고용부	234
3-2-1-④	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 등 교육 지원	고용부 여가부	238
3-2-2-①	공공부문 사건 대응력 강화	여가부 인사처	243
3-2-2-②	공공부문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문화 조성	행안부 인사처	248
3-2-2-③	기관의 사건 대응 및 재발방지 역량 강화	여가부	253

과 제		소관	페이지
3-2-3-①	군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국방부	255
3-2-3-②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국방부	259
3-2-3-③	군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및 수사 역량 강화		259
3-2-3-④	징계 절차에서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국방부	262
3-3-1-①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강화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여가부	264 264
3-3-1-②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여가부	271
3-3-1-③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여가부 경찰청	275
3-3-1-④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지원체계 구축	여가부	282
3-3-1-⑤	성매매 관련 아동·청소년 지원시설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	여가부	285
3-3-1-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효율화 및 지원 강화	여가부	287
3-3-2-①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	여가부	290
3-3-2-②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및 피해 여성 지원 확대	여가부	293
3-4-1-①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관련 법적근거의 일원화	여가부	296
3-4-1-②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 내실화	여가부	298
3-4-1-③	중앙행정기관 소속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 소관부처 책무성 강화	여가부	301
3-4-1-④	폭력예방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여가부	303
3-4-1-⑤	지역 기반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강화 및 성평등 교육과 추진 체계 연계 필요성 검토	여가부	306
3-4-1-⑥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 강화	여가부	309
3-4-1-⑧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맞춤형 콘텐츠 제공	여가부	311
3-4-2-①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여가부	315
3-4-2-②	여성폭력 추방주간 운영	여가부	318

과 제		소관	페이지
4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4-1-1-④	성폭력 범죄 처벌 관련 조항 통합 검토	법무부 여가부	321
4-1-1-⑤	의료기관 내 의료인 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복지부	325
4-1-2-②	가정폭력 가해자 수사 시 엄정한 조치	대검찰청	329
4-1-2-⑥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필요성 분석 및 검토	법무부 여가부	332
4-1-3-②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사각지대 개선 방안 검토	법무부	335
4-1-4-③	디지털 성범죄 기록물 삭제 비용 가해자 부과	여가부	338
4-1-5-①	온라인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행위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여가부	340
4-1-6-①	성매매 전담 수사체계 구축 및 지속적 단속 추진	고용부 경찰청	342
4-1-6-②	성구매자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 환경 조성	대검찰청	346
4-2-1-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여가부	349
4-2-2-①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여가부	352
4-2-3-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가부	355
4-3-1-②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여가부	358
4-3-2-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	여가부	361
4-3-2-③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전담기구 마련	여가부	364
4-3-3-③	여성폭력 지원시설 간 네트워크 강화	여가부	367
4-3-4-①	여성폭력 통계 구축	여가부 법무부 대검찰청 통계청 경찰청	370
4-3-4-②	여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여가부	378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 과제개요

-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다양화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역량 제고

□ 그간의 추진실적

- 신학기·하계기간 등 시기별·대상별 집중 예방 강화 기간 운영
- 탐지기술 개발·도입, 최신 탐지 장비 정보공유 및 현장 보급 지원
- 불법촬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불법촬영 점검 표준 매뉴얼」 제작·배포('23.7월) 및 탐지 실습 위주의 「맞춤형 장비활용법」 등 교육 실시
- 지자체와 협업, △ 불법촬영 관련 조례 제·개정('23. 10월 총247개) △범죄 취약 장소 합동점검 △ 공중화장실·지하철역 등 시설 보완·범죄예방 환경 조성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연중)

- 지자체·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시기·대상별 특성에 맞춰 학교·지하철·다중이용집 행사장소 등 합동점검 및 범죄다발지역 순찰 강화
- 탐지 장비 운용실태 점검(반기1회) 및 탐지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활성화
- 불법촬영 기기 첨단화 대비, 전문 IT업체와 협업을 통해 고성능 탐지 장비 현장 보급 및 장비 기술 자문·정보공유

- 지역사회와 협업, 숙박업소·목욕탕 등 민간영업장 대상 홍보·교육 및 자체 점검 유도 등을 통해 불법촬영 예방 활동 참여 독려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불법카메라 탐지장비 활용 교육	-	-	-	19회	탐지장비 전문교육 개최 (경찰청 1, 시도청 18)	경찰청, 시도청별 교육 실적

□ 기대효과

- 불법촬영 현장 대응력 향상, 유관기관·지역사회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공감대 확산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경감 송진영	전화번호	02) 3150-0823
------	----------------	-----	--------	------	---------------

대검찰청 형사4과,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과제개요

<대검찰청>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9. 12. 25.) 및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 개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검찰청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성착취 불법영상물 유포 등 사건 엄정 대응 요구
 - 텔레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단체 대화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협박, 성폭력 등 범행을 자행하는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 유통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 요구

<경찰청>

-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26개팀 131명)을 중심으로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 등에 적극 대응
- △불법촬영물 △아동성착취물 촬영·제작·유통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조치로 피해자 보호

□ 그간의 추진실적

<대검찰청>

- '20. 3. 성착취 불법영상물 유포 등 사건 엄정 대응 지시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착취 불법영상물 유포 등 사건 관련 영리 목적 유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사범 원칙적 구속 등 카메라 촬영·유포 사범 사건처리기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사건처리기준 등 철저 준수, 엄정대응 지시

- '20. 3. 전국 여성아동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 개최
 - 일선 수사상황 점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범죄 수익 환수 방안 등 논의
- '20. 3.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국적 수사지휘·지원 체계 구축
 - 전국 18개 및 수도권 차치지청에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설치, 기타 청은 전담검사 지정
- '20. 3. 성착취 영상물 관련 수사 참고자료 제공 등 일선 지원
 - 의율 죄명, 적용법조, 법률적 쟁점 등 법리검토 자료(형사부), 신종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등 의율 검토, 형법상 범죄 단체 및 범죄집단 법리검토 자료(반부패강력부) 등 일선 지원
- '20. 4.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 엄정 대응 지시
 - 불법촬영·유포 사범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성착취 범죄에 집중 대응, 대폭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 지시
- '20. 5.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 토론회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유관기관 합동 토론회 개최
- '20. 10~ 「성범죄 사건처리기준」 T/F 운영
 -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 제·개정 내역 반영 및 현행 성폭력범죄 사건처리기준 중 신설·개정할 내역 논의
- '21. 1. 전국 여성·아동범죄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 개최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처리기준 개정(안)에 관한 논의
- '21. 2.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건처리기준 개정·시행 알림 및 철저 준수 지시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처리기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관련 사건처리기준 개정·시행 및 개정 사건처리기준 철저 준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지시

- '21.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시청 목적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
- '21. 7.~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 구성 및 운영
 - 디지털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를 구성, 관련 수사매뉴얼 제·개정 및 관련 지침 개정 작업 진행
- '21. 8. 디지털성범죄 관련 우수 피해자보호 사례 전파 및 피해자보호조치 적극 활용 요청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우수 사례 전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검찰 핫라인 구축 및 적극 활용 지시
- '21. 12.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 및 책자 배포
 - 디지털성범죄 관련 내용을 대폭 수록하는 등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하고 전국 청에 배포하여 적극 활용
- '22. 6. 성착취물 소지범 처분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협조 요청
 - 디지털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수요 범죄인 성착취물 소지·시청 엄단
- '22. 8. 「검찰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핫라인 협조 사항」 배포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검찰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신속한 피해자 연계 및 피해촬영물 제공 방법의 보안 강화를 위해 제작한 「검찰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핫라인 협조 요청 사항」을 일선 청에 배포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 업무에 적극 참고
- '22. 9.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
 - '21. 2. 전면 개정하여 시행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처리기준」 및 관련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여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

- '22. 9. 검찰총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방문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중 불법영상물 삭제 업무 등 피해자들에게 실효적으로 필요한 보호·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방문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피해자 보호·지원 연계 등 다각적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
- '22. 12. 디지털성범죄 전담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검사 지정
 - 전국 18개 지검,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23명 지정
- '22. 12.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례 연구」 제작·배포
 -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사례 연구 책자 제작, 전국 청에 배포
- '22. 12.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 신설
 - 여성·아동 범죄의 증가 추세, 충실한 전문 수사 및 특별 보호조치(부가처분, 성폭력 미성년 피해자 증거보전조치 등)의 필요성 등을 고려, 전담부서를 추가 신설하여 전문 수사대응체제 구축
- '23. 1. 대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간담회 개최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보호·지원 현황 공유, 국내외 사이트에 업로드된 불법영상물 삭제 현황 및 애로사항 확인, 불법영상물 삭제·차단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등 논의
- '23. 5.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 일시 : 2023. 5. 12.(금) 14:00 ~ 17:50
 - 장소 : 대검찰청 NDFC 6층 대강의실
 - 참석 대상 : 전국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등
 - 교육내용 : 디지털성범죄 관련 외부 전문가 강연, 주요 디지털성범죄 우수 수사사례 및 수사기법 등 전파 등

<경찰청>

- '20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수사 및 피해자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총력 단속체제 가동
 - ※ '20. 3. 25. ~ 12. 31.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하여 총 2,807건 · 3,575명(구속 245명) 검거, 피해자 1,094명 대상 4,387회 보호·지원 조치
- '21년,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해 「특별수사본부」 운영 후에도 사안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능동적 엄정단속 실시
 - * ㄱ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단속('20. 12. 1. ~ '21. 4. 30) : 총 85건 94명 검거(구속 10명)
 - ㄴ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 사범 집중단속('21. 3. 2. ~ 10. 31.) : 총 1,419건 1,597명 검거(구속 97명)
- '22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적극 시행, 전국 시·도 경찰청 중심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실시
 - ※ '22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22. 3. 1. ~ 10. 31.) : 총 1,694명 검거(구속 99명)
- '23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적극 시행, 전국 시·도 경찰청 중심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실시
 - ※ '23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22. 11. 1. ~ 10. 31.) : 총 1,700건 1,961명(구속 140명)

□ 2024년도 시행계획

<대검찰청>

- 성착취 영상물 사범 등 디지털성범죄 엄정 대응(연중)
 - 전국 청의 여성·아동 범죄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대폭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디지털성범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
-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강화(연중)
 - 수사과정에서 성착취물 삭제 관련 유관기관 연계하여 삭제 지원, 그 외 법률적·경제적·심리적 지원 철저
- 철저한 범죄수익환수로 범행 동기 차단(연중)
 - 비트코인 등 인터넷상 통화 대체수단에 대한 철저한 몰수·추징 보전으로 범죄 수익 박탈, 동기 차단

<경찰청>

- (상시단속체계 유지) 집중단속 실시로 디지털 성범죄 공급·수요 요인 근절
- (위장수사 활성화)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위장수사 적극 실시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대검찰청>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착취물 소지, 제작·배포 사범 기소율(%)	30.5	34.3	38.1	36.9	35.1	검찰통계 시스템
○ 성과목표치 산식 : 처분 인원 대비 기소인원 비율						

<경찰청>

성과목표	실적 (2023년)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사이버성폭력 단속 검거율	80%	75%	KICS통계

기대효과

- 성착취 영상물 사범 등 여성·아동 대상 디지털성범죄 엄정 대응

담당부서	대검찰청 형사4과	담당자	고성민 수사관	전화번호	02) 3480-2527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윤태수 경감		02) 3150-1159

□ 과제개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 ① 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삭제지원, ② 방심위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③ 전문상담, 의료서비스 및 보호시설 입소,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 그간의 추진실적

- 불법촬영물 등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요청범위 확대('20.4월)

* '성폭력방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20.4.30.시행)

-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20.4월)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전 모니터링 및 24시간 상시 상담체계 구축 등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능 강화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삭제지원 근거* 마련('21.1월)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1.7월 시행.)

- 디성센터-검·경 수사기관 피해접수 핫라인 개설('22년)

- 디성센터-지자체 삭제시스템 연계 추진('23년)

* 중앙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전문성을 지역에 공유, 거점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역특화상담소 등 피해 지원기관 전문성 제고를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 추진 내용 및 방법

- NCMEC(美 국립아동실종학대예방센터)과 MOU 체결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 공조 체계 구축
- 종사자 간담회, 통합연수, 교육 콘텐츠 제작 등 피해 지원기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
-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시스템 연계 등 지원기관 협력 추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연중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피해자 지원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14,233 (2,593)	14,233 (2,593)	14,692 (2,986)	459 (393)	3.2 (15.2)

※ 해당 기관을 통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건수						
○ 산식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 센터를 통한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연계 지원 등 서비스 합계	170,697건	188,083건	209,429건	275,520건	283,786건	'23년도 실적 대비 3% 상향

□ 기대효과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상담 및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을 통해 피해 확산 방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담당자	김영숙 사무관 김계영 주무관	전화번호	02) 2100-6167 02) 2100-6165
------	--------------------	-----	--------------------	------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확산방지팀

□ 과제개요

<여성가족부>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일지, 삭제이력 및 관련 통계의 체계적 관리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란 동영상 스트리밍 차단기술 개발 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기부와 협조체계 강화
- 유포 불안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성에 맞는 치유회복프로그램 개발('20년) 및 지원 실시('21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디지털성범죄 24시간 상시 신속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여성가족부>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20~'22)
 - * 피해영상물 자동수집 기능(크롤링) 연계 사이트 확대, 서버 증축 등
- 디지털 성폭력 피해 치유회복 프로그램 개발('2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
-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운영 확대('21년 7개소 → '22년 10개소 → '23년 14개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디지털성범죄정보 상시 심의를 통한 24시간 내 신속 대응

- 디지털성범죄정보 24시간 내 신속 심의 및 시정요구: 171,535건<'20.1.~'23.10.>
- 디지털성범죄정보 사업자 자율규제(심의 전, 선 삭제) 요청을 통한 선제적 조치 : 41,391건<'20.1.~'23.10.>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10월)	누적합계
심의건수	35,603	26,000	55,287	54,645	171,535
자율규제	6,021	18,144	8,183	9,043	41,391

○ 디지털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 디지털성범죄정보 확산·재유통 방지를 위한 긴급·사후 모니터링 : 125,614건 <'20.1.~'23.10.>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10월)	누적합계
모니터링	29,927	17,043	39,444	39,200	125,614

- 디지털성범죄정보「자동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및 고도화<'21.~'23.>
* 웹 크롤링 및 특징값(DNA) 비교, AI·RPA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기술 적용 등

○ 디지털성범죄정보 근원적 유통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 해외 사이트 유통 비중이 높은 디지털성범죄정보의 특성을 고려, 원(源)정보 삭제 등 근원적 유통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체계 구축*
* 주요 국제협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와 아동성착취물 DB 상호 공유 업무협약 체결<'21.10.> · 호주 온라인안전국(eSafety)과 디지털성범죄 관련 글로벌 연대 구축 및 동참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발표<'21.11.> · 프랑스 사업자 자율규제 협회(Point de Contact)와의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발표<'22.9.> · 글로벌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네트워크(GOSRN) 회원기관 간 '인권과 온라인 안전 규제를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발표<'23.9.>

-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구축
 - 원스톱 신고 ARS 시스템 구축 완료<'23.9.> 및 시범운영

□ 2024년도 시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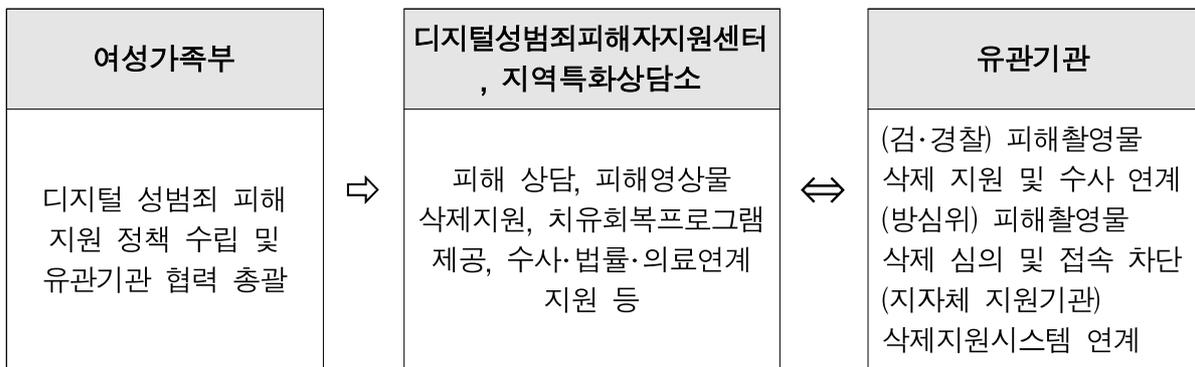
<여성가족부>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운영 내실화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접근성 강화

○ 추진 내용 및 방법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자체 지원기관, 지역특화상담소) 및 관계기관(경찰청, 방통위 등) 간 협업 강화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계획 수립 -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2/4분기	-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간담회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삭제지원시스템 연계 -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3/4분기	-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4/4분기	-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간담회
연중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역특화상담소 운영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통합상담소 - 디지털 성범죄특화형 지원)	39,199 (595)	37,907 (548)	39,615 (613)	416 (18)	1.1 (3.0)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표명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및 참여(회) * 산식 :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및 참여 횟수	4	4	4	4	4	분기별 협의체 운영 및 참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디지털성범죄정보 상시 심의 등 신속 대응을 통한 피해자 보호 강화
- 디지털성범죄정보 공동 대응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운영

○ 추진 내용

- 24시간 상시 심의체계를 위한 전자심의시스템 운영
- 심의 관련 업무 자동화를 통한 디지털성범죄정보 피해 신속 대응

- 국내·외 유관기관·사업자와 디지털성범죄정보 근절을 위한 실무협의 등 다각적 협력 방안 모색·추진
-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운영을 통한 소관 부처·기관별 담당업무에 대한 종합 안내 및 신고내용에 따른 자동 연계

○ 추진 방법

-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한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상시 운영
-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무업무 자동화 프로세스 운영
- 국내·외 유관기관·사업자와 협력회의 등 다각적 협력 방안 추진
-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운영 활성화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연중	디지털성범죄정보 상시 심의 및 24시간 신속 대응
연중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운영
수시	국·내외 유관기관·사업자와 협력회의 등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방송통신발전기금)	406	265*	186**	△220	△54.2

* 원스톱 신고 ARS 홍보(70), 자동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38) 등 일부 사업 미집행, 연말 집행 예정.

**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종료(△220) 반영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10.		
○ 디지털성범죄심의회소위원회 운영	261회	131회	269회	225회	250회	일1회 이상 (근무일 기준)
○ 사업자 및 유관기관 협력	4회	29회	31회	12회	4회	분기별
○ 디지털성범죄정보 해외 협력회의	-	6회	15회	28회	4회	분기별
○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	1회 (구축)	1회 (고도화)	1회 (고도화)	-	완료사업

□ 기대효과

<여성가족부>

- 피해 지원기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역특화상담소, 지자체 지원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디지털성범죄 24시간 상시 신속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디지털성범죄 피해유형에 따라 적합한 기관·단체 신속 연계

담당부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확산방지팀	담당자	이도한 차장	전화번호	02) 3219-5813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강동근 사무관 김영숙 사무관		02) 2100-6162 02) 2100-6167

□ 과제개요

- 불법촬영 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아 경제적 활동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비 등 지원
- 불법촬영 범죄 피해로 심리치유가 필요한 경우 스마일센터 등을 통해 심리 치유 지원
- 불법촬영 범죄로 법률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를 통해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 그간의 추진실적('23. 1.~'23. 10.)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관리 및 집행 지침」을 개정('21. 12.)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명시
- 불법촬영 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아 경제 활동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상시)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 190건('23. 10.)
- 불법촬영 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 치유가 필요한 경우, 범죄 피해 트라우마 치유 전문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통해 전문 심리치유 서비스, 임시주거 시설 등 지원(상시)
 - *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유 등 서비스 지원 : 6,454건('23. 10.)
- 대한법률구조공단(중위소득 125% 이하), 법률홈닥터(법률상담·유관기관 연계·법률문서 작성 조력 등 1차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 소송수행 제외)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상시)
 -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 358건('23. 10.) ▲소송구조 : 151건('23. 10.)
 - * (법률홈닥터) 법률상담 등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101건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경제적 활동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비 등 지원
- 스마일센터를 통한 전문 심리 치유 서비스 제공 및 임시주거 시설 등 지원
-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상담, 민사 법률지원 등 종합 법률 서비스 지원
-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에게 다양한 지원이 체계적·유기적으로 안내·연계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추진

○ 추진 내용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5주 미만 상해 피해자 치료비 지원, 생계비 지원, 간병비·취업지원비 지원, 수사기관 법정 동행 등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범죄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범죄피해 트라우마 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를 통해 PTSD, 불안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회복에 필요한 심리상담, 심리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지원 연계 등의 전문 서비스 지원
- 성범죄 피해 법률상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 절차 법률지원, 손해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 법률지원, 2차 피해 발생 방지 등을 위한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불법촬영 동영상 삭제 지원과 함께 기타 필요한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연계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추진

* '24. 7. 개소 예정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안심 지원센터' 입주 계획

○ 추진 방법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생계비, 치료비 등 지원
- 스마일센터를 통한 무료 심리치유 서비스 지원

- 법률홈닥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안내·연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추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법률홈닥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서비스 지원(연중)
2/4분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법률홈닥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서비스 지원(연중)
3/4분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법률홈닥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서비스 지원(연중)
4/4분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법률홈닥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서비스 지원(연중)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만을 위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지 않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집행 실적만 별도 산출하기는 어려움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1년)	(2022년)	2023년 10월		
○ 성과지표명 :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건)	266	352	190	279	* '21. 실적 대비 5% 상향된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명 : 심리치유 서비스 제공(건)	5,072	5,483	6,454	5,326	
○ 성과지표명 :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건)	672	899	610	706	

* '21. 기준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별도 통계 산출을 시작하였으므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실적 산출이 가능한 '21. 실적부터 기재

□ 기대효과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한 2차 피해 방지 및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
-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경제·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편리하게 제공 가능

담당부서	법무부 인권구조과	담당자	조은정 주무관	전화번호	02) 2110-3640
------	--------------	-----	---------	------	---------------

대검찰청 형사4과·인권기획담당관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과제개요

<대검찰청>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9. 12. 25.) 및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 개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검찰청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
 - * 피해자 회유 및 협박, 피해자 ‘행실’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
- 이에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상태에 대한 배려 및 신변 보호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

<경찰청>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피해 진술할 수 있도록 피해자 친화적 수사 환경 조성

□ 그간의 추진실적

<대검찰청>

- '20. 4. 디지털성범죄의 불법동영상 관련 2차 피해 방지 매뉴얼 배포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위한 불법동영상 유포 차단 및 삭제 지원 절차 마련
- '20. 5. 가명조서 작성 피해자에 대한 통지 절차 철저 지시
 - 가명조서 작성된 경우 고소사건에서도 인적사항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입력 금지 등
- '20. 5.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이전비 신속 지원 및 활성화 지시

- '20. 6. 불법동영상 유포차단·삭제 지원 매뉴얼 배포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 의사 확인 불요, 성폭범위반 불법동영상이지만 피해자 의사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도 2차 피해가 예상된다면 피해자 의사 확인 전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매뉴얼 개선
- '20. 연중. 가명조서 작성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보장 및 지원 강화
 - 가명조서 작성 피해자 통지 및 지원절차를 개선하는 KICS 수사결정시스템 등 구축 중
- '20. 11.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 안내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시행(제17282호, 2020. 11. 20. 시행)으로 인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 실시
- '20. 11. 2020년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 12. 25.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21. 7~.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 구성·운영
 -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아동 범죄 대응 TF' 구성·운영
- '21. 7.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지시
 - 사법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유기적·상시적 협업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적극 대응, 실질적 피해 아동 보호에 만전
- '21. 8. 디지털성범죄 관련 우수 피해자보호 사례 전파 및 피해자보호조치 적극 활용 요청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우수 사례 전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검찰 핫라인 구축 및 적극 활용 지시

- '21. 10.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포함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대응 TF 구성·운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대응 TF' 구성·운영

- '21. 1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개정 보고
 - 성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 등 서식 개정, 성폭력 피해자 조사 중 유의 사항 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 제도 추가

- '21. 12. 2021년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 12. 25.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21. 12. 「헌법재판소의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 일부 위헌결정」에 따른 조치사항 시달
 - 헌법재판소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 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부분에 대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 이에 따라 일선 청에 위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달

- '21. 12.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 및 책자 배포
 -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일선 청 송부
 - ※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용 포함

- '22. 1.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관련 사경 협력 강화, 신속·엄정 대응 피해자 보호 철저 지시
 -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의 보복·회유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건 송치 전 범죄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소통·협력하여 신속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신변 등 사건 수사에 있어 관련 매뉴얼 및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며, 관련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
- '22. 1.~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TF」 구성 및 운영
 - 장애인,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전담검사·수사관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례집 제작을 위한 TF 구성
- '22. 2. 스토킹·성폭력 등 강력범죄 관련 영장 검토 시 피해자 보호 철저 지시
 - 사경신청 구속영장 등 사법통제를 함에 있어, 사건송치 전이라도 경찰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고, 피해자 진술청취 등을 통해 재범 및 위해우려 등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 특히 피해자가 추가 피해 우려를 호소할 경우, 영장 검토 시 가해자 접근 차단(신병처리, 안전가옥 제공, 대상자 유치 등)을 비롯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 '22. 4. 피해자지원 매뉴얼 책자 배포 및 원스톱 피해자 보호·지원 활성화 지시
 - 검찰실무에 적합한 피해자지원 매뉴얼 제정·배포
 -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성폭력·학대·보복 범죄 등 강력사건에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일상으로 회복 시까지 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 신변보호, 심리상담·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 지원
- '22. 4. 성착취물 소지범 처분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협조 요청
 -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수요 범죄인 성착취물 소지·시청에 대한 엄단 및 성착취물 등 불법 동영상 삭제·유포 차단,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상담 등 피해자지원 적극 실시 지시

- '22. 8. 「검찰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핫라인 협조 사항」 배포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검찰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신속한 피해자 연계 및 피해촬영물 제공 방법의 보안 강화를 위해 「검찰청-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핫라인 협조 요청 사항」을 제작, 일선 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 업무에 적극 참고
- '22. 9. 검찰총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방문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중 불법영상물 삭제 업무 등 피해자들에게 실효적으로 필요한 보호·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방문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피해자 보호·지원 연계 등 다각적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
- '22. 11. 2022년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 12. 25.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22. 12. 디지털성범죄 전담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검사 지정
 - 전국 18개 지검,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23명 지정
- '22. 12.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발간]디지털성범죄 수사 관련 충실한 사법 통제 및 피해자 보호 방안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발간
- '22. 12. 검찰의 피해자지원제도 안내 자료 배포 및 적극 활용 요청
 -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아동학대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리플릿과 홍보동영상 제작·배포 및 적극 활용 요청
- '22. 12. 「범죄피해자지원 Q&A 및 우수사례」 제작·배포 알림

- '23. 1. 대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간담회 개최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보호·지원 현황 공유, 국내외 사이트에 업로드된 불법영상물 삭제 현황 및 애로사항 확인, 불법영상물 삭제·차단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등 논의
- '23. 3. 피해자 중심,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 강화를 위해 인권정책 관실에 '피해자인권팀' 신설
 -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를 중점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강화하여, 체계적·전문적 업무 수행 목적
- '23. 5.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 일시 : 2023. 5. 12.(금) 14:00 ~ 17:50
 - 장소 : 대검찰청 NDFC 6층 대강의실
 - 참석 대상 : 전국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등
 - 교육내용 : 디지털성범죄 관련 외부 전문가 강연, 주요 디지털성범죄 우수 수사사례 및 수사기법 등 전파 등
- '23. 7.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 활성화 방안」을 통한 범죄 피해자의 헌법상 권리 보장 및 인권보호 강화
 - 재판절차 진술권 상세 안내 및 구공판시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에 대한 추가 문자 통지, 피해자 의견 진술서 양식 제공 및 관련 포스터 및 리플릿 배포
- '23. 11. 2023년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 12. 25.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21. 1.~'24. 3. 여성아동 전용 조사실 추가 설치 및 시설 개선 리모델링 공사 완료 ('24. 3.말 기준, 43개 검찰청 공사 완료)
 - 여성·아동 피해자 전용 조사실 추가 설치 및 리모델링을 통해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경찰청>

-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조사 시 보호제도* 적극 활용하여 전국 경찰관서에서 종합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실시 중

* 상담센터연계, 가명조서 작성, 국선변호사, 진술녹화, 신뢰관계자 동석, 신변 보호 요청 등

<수기통계(중복집계), '23. 10월말 기준>

구분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상담센터 연계	가명조서	국선변호사 선임	진술녹화	신뢰관계자 동석	신변보호 요청
건수	54250	8781	638	533	203	332	131

□ 2024년도 시행계획

<대검찰청>

-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등 제도 활용(연중)
 -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법정 동행 등을 통한 2차 피해 방지, 피해자에 대한 경제·의료·법률 지원, 예술·심리치료 등 적극 실시
- 피해자 조사 전용조사실 추가 설치 및 리모델링 추진(연중)
 - 일선 검찰청의 시설 노후화 정도,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전용 조사실 추가 설치 및 리모델링 진행
 -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연중)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 편의성 향상, 신속한 지원 등을 위한 차세대 KICS 「피해자 지원포털 시스템」구축 추진
 -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재판진행상황, 재판결과 및 출소사실 등을 통지하는 정보제공 제도 지속 및 확대 실시
 - 성폭력 등 강력사건에 있어서 가명조서 및 신원관리카드 작성 실태 지속 점검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명)	성폭력 : 22,849	성폭력: 25,648	성폭력: 23,987	성폭력: 20,319 (23.1.~10.)	성폭력: 24,945	전국청 수기취합
○ 성과목표치 산식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인원						

<경찰청>

○ (피해자 친화적 환경 조성) 최초 신고접수부터 사후 연계 지원까지 수사全过程에 걸쳐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실시 및 진술녹화실 확대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경찰청 수사인권보호계 수기통계>

성과목표	실적 (2023년)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진술녹화실 확대	10개 신축	10개 신축	수기통계

기대효과

○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아동대상 범죄 관련 피해자 보호 강화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대검찰청 형사4과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실	고성민 수사관 노태종 수사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02) 3150-1159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과제개요

<행정안전부>

- **(추진배경)** 범부처 불법 촬영 근절 대책('18.6.15.) 발표에 따라 공중화장실 내 범죄예방을 위해 불법 촬영 점검 추진
- **(추진목적)**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통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법 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예방 환경 조성
- **(추진체계)** 행정안전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 민간단체, 경찰 등 협업 추진
- **(주요내용)** 지자체별 상시·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 점검 활동,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 등

<국토교통부>

- **(사업목적)** 최근 불법카메라 촬영범죄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어, 철도분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이 필요
- * (최근 3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현황) '21년 787건, '22년 1,171건, '23년 979건

<보건복지부>

- **(추진목적)**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 내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토록 점검 및 관련 규정 안내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 총괄 기획·조정) ⇒ 시·도(자체 평가계획 수립·홍보) ⇒ 시·군·구(평가 실시), 영업자단체*(홍보 등 협조) ⇒ 공중 위생영업소(평가대상)
- * 영업자대상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 홍보, ▲영업소 내 불법카메라 설치위반 시 처분 등 관련 규정 안내

- (주요내용)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 시 영업소 내 불법카메라(유사장치 포함) 설치 검사확인증 부착 여부 확인 및 ▲공중위생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시 영업소 내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 등 관련 규정 안내

□ 그간의 추진실적

<행정안전부>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상시점검 체계 운영('18.6.15.~)
 - 지자체별 합동점검반 구성(4,077명) 및 상시점검* 추진
 - * 점검실적 : ('18년 6월~'19년) 520천개소, ('20년) 446천개소, ('21년) 483천개소, ('22년) 566천개소, ('23년) 414천개소
 - 주요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보유한 탐지장비와 인력으로 자체점검
 - *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교통공사
 - 명절 및 휴가철 공중화장실 국민편의·안전 점검 3회 실시(행안부·지자체·경찰)
-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 예산지원
 - 불법촬영 탐지장비 지원(7,298대, 26억) 및 안전시설 개선(24억) : '18년
 - 국민안심화장실 선도사업('19년, '20년 : 각 20억, '21년, '22년 : 각 10억, '23년 : 20억)
-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근절 등 이용문화 개선 홍보물 3만 부 제작·배포('23. 5월, 11월)
- 불법촬영 예방 등을 위한 공중화장실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
 -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 신설('23.7.11.)
 - *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과 바닥 간의 거리를 5mm이하로 설치
 -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23.7.21.)에 따라 표준조례안 시달 ('23.7.5.) 및 설치 독려(영상회의, 공문 등 5회)
 - 불법촬영 점검 등 화장실내 시설 정기점검 횟수 개정(연 1회 → 연 2회)
 - 법령 개정사항 반영, 불법촬영 및 비상벨 점검 매뉴얼 개정('23. 8월)

<국토교통부>

- 철도운영자가 철도·지하철 역사 및 차량 내 화장실, 수유실에 대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1일 1회 이상 점검 실시(국토부 고시*, '19.1.시행)

-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국토부 고시) :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 및 역구내 화장실, 수유실에 대해 카메라 등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설치여부를 1일 1회 이상 점검

-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는 출·퇴근 및 범죄취약시간대에 전동차, 역구내 등을 중심으로 성폭력 근절 100일 특별단속활동* 실시

- * '23.5.15~8.22.기간 동안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폭력 범죄 142건 검거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영업자 영업소 내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 위반 시 처분기준,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검사 등 근거 신설(「공중위생관리법」개정, '18.12.11.)

- 공중위생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시 관련 규정 안내(매년)

- 공중위생영업소 대상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 실시(2020년~2023년)

- 업종별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격년 실시(숙박·목욕 : 짝수해, 이·미용 : 홀수해)

□ 2024년도 시행계획

<행정안전부>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상시점검 체계 운영 및 점검실적 총괄 관리

-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 및 비상벨 등 설치현황 지속 관리

- '24년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을 통해 비상벨 등 설치 지원(10억, 40개소)

○ 추진 내용

-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상시점검 체계* 운영 및 점검실적 총괄 관리
 - * 시·도, 시·군·구, 소속·산하기관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연1회) 및 점검반 구성·운영
- 명절 및 휴가철 공중화장실 국민편의대책* 및 캠페인 추진
 - *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비상벨 설치·작동 여부 점검 등
- 불법촬영 근절 지자체 점검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 점검 매뉴얼에 따른 불법촬영 점검 교육 및 불법촬영 근절 홍보물 제작·배포
- 안심화장실 선도사업을 통한 비상벨 설치 지원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추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점검계획 수립 및 시달 ▪ 설 명절 대비 공중화장실 국민편의대책 추진 ▪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현황 관리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점검실적 현황 관리 ▪ 2023년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최종점검 ▪ 2024년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추진계획 수립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점검계획 수립 및 시달 ▪ 휴가철 및 추석 명절 대비 공중화장실 국민편의대책 추진 ▪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현황 관리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점검실적 현황 관리 ▪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 개정 ▪ 2024년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추진현황 중간점검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개소)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다중시설 내 공중·민간 화장실에 대한 점검실적	566,877	414,927	456,000	최근 3년 평균실적과 '23년도 실적의 평균값으로 목표 설정
○ 성과목표치 산식 - 점검 화장실 총 개소 수				

<국토교통부>

- 철도운영자는 철도역사(화장실, 수유실 등)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화장실, 수유실 등)에 대한 일일점검을 지속적으로 지속 실시
-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성범죄 빈도가 높은 수도권 광역철도 구간에서 불법 카메라 촬영범죄를 포함한 성범죄 단속활동 강화
- 또한 철도운영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합동으로 주요 철도역사* 등에서 불법카메라 촬영범죄 합동단속 실시

* 기존 단속지역 외 내부자 범위에 취약한 직원 대기실·숙직실 등 합동단속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철도운영자 철도역사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2/4분기	철도운영자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합동으로 철도역사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3/4분기	철도운영자 철도역사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4/4분기	철도운영자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합동으로 철도역사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회))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철도차량 및 역구내 화장실, 수유실 일일 점검	365	365	365	365	365회 이상	점검결과 보고
○ 성과목표치 산식 : 1일 1회 이상 점검						

<보건복지부>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24년도 공중위생서비스수준(평가대상 : 숙박·목욕) 평가항목에 불법카메라 설치
검사확인증 부착 여부 포함하여 평가 실시
- 숙박·목욕장업자 위생교육 시 영업소 내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관련 규정 안내

○ 추진 내용

- 숙박·목욕장업소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 시 불법카메라 설치검사확인증 부착
여부 확인
- 공중위생영업자 대상 불법카메라 설치위반 시 처분 등 관련 규정 안내

○ 추진 방법

- (보건복지부)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지침(안) 마련 및 지자체·영업자단체
관련 사항 안내
- (시·도)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 자체 계획 수립·결과 취합 보고, 홍보
- (시·군·구)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 실시, 불법 카메라 위반업소 확인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지침(안) 마련 - 지자체·영업자단체 관련 사항 안내
2/4분기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및 홍보 지속 - 공중위생영업소 방문, 현지조사를 통해 불법 카메라 설치 검사확인증 부착 여부 확인 ○숙박·목욕장업자 대상 위생교육 시 영업소 내 불법카메라 설치위반 시 처분 등 관련 규정 안내
3/4분기	
4/4분기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녹색등급 (최우수업소) 부여율	32%	41%	46%	-	-	(녹색등급 업소수 / 평가업소수)×100
○ 성과지표명 : 공중위생영업소 불법 카메라 설치 위반 건수	-	-	-	-	5건 미만	전국 공중위생영업소 불법 카메라 설치위반 행정처분 건수

□ 기대효과

<행정안전부>

○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 및 안전관리시설 설치 확대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조성

<국토교통부>

○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카메라 촬영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철도 역사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안전체감도 제고

<보건복지부>

- 영업자에게 영업장 내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경각심 제고 및 관련 범죄 발생 사전 예방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담당자	문소영 주무관	전화번호	044) 205-3535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김태영 철도경찰사무관		044) 201-4617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곽미연 주무관		044) 202-2857

□ 과제개요

-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불법 촬영기기 규제 관리
 - 변형카메라 취급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변형카메라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이력정보시스템 구축

□ 그간의 추진실적

-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진선미 의원, '21.3.25) 및 과방위 상정('21.4.20)
 - * 취급업자 등록,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관리사실 고지, 판매·구매정보의 기록 등
-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운영찬 의원, '21.9.24) 및 과방위 상정('21.11.9)
 - * 취급하고자 하는 자 허가,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관리사실 고지, 판매·구매정보의 기록 등
-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운영석 의원, '22.9.30) 및 과방위 상정('22.11.10)
 - * 취급업자 및 소지자 등록,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및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시 하위법령 마련 추진
- 추진 내용
 - 법률안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내용들을 구체화

○ 추진 방법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하위법령 제정 연구반을 구성·운영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법률안 제정 시 하위법령 마련 추진
2/4분기	○ 법률안 제정 시 하위법령 마련 추진
3/4분기	○ 법률안 제정 시 하위법령 마련 추진
4/4분기	○ 법률안 제정 시 하위법령 마련 추진

○ 예산 현황 : 해당없음

○ 성과지표 : 국회에서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하위규정 마련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변형카메라 관련 법 제정에 따른 불법 촬영기기 규제 관리	-	-	-	-	법률 제정 이후 하위규정 마련	법률 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 성과목표치 산식 : 법 제정 후 하위규정 마련						

□ 기대효과

- 변형카메라의 취급 관리, 이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도입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및 사생활 침해행위 등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담당자	심향섭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2-4951
------	--------------------	-----	---------	------	---------------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과제개요

- 웹하드 등을 통한 불법영상물 유통 통제
 - 웹하드 등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실태 점검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그간의 추진실적

- 웹하드 사업자 기술적 조치 의무 이행 점검 및 위반 시 행정제재
 - 웹하드 사업자 대상 불법영상물 유통 관련 상시 점검
 - 90개 주요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 및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실시
- 인터넷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강화를 위한 책무 부과('20.6.)
 - 웹하드사업자의 불법음란물 기술적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2천만원 → 5천만원) 상향
 - 부가통신사업자 유통방지 의무부과 및 위반시 매출액의 3%이하 과징금 신설
 -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 디지털성범죄물 필터링 기술 개발·보급 및 불법촬영물 등 공공 DNA DB 구축·제공('21.8.~)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해 방통위 주관으로 법무부, 여가부, 검찰청, 경찰청 등 5개 부처가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협업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23.3.) 및 과징금 협의체 운영('23.6.)

- 사전조치의무사업자 투명성 보고서 검증 및 방통위 홈페이지 공개('23.6.)
 - 국내외 인터넷사업자 및 웹하드 등 90개 사업자가 제출한 투명성보고서의 불법 촬영물 신고·삭제/차단 현황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내역 등 유통방지를 위한 법정 의무 사항 이행여부 점검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지정 고시('22.12.)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해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를 대리하여 신고·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17개 기관·단체 지정고시
- 불법촬영물 대리신고삭제 요청기관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중
 - 불법촬영물등 대리신고·삭제요청기관 지정 조건을 완화하여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및 신속한 삭제·차단 적극 대응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행실태점검
 - 주요 인터넷사업자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실태 점검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대상 교육 실시
 - 주요 인터넷사업자 투명성보고서 홈페이지 게시
 -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지정 고시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협의체 운영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인터넷사업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보고서 제출 확인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인터넷사업자 투명성보고서 홈페이지 게시 · 불법촬영물 등 표준 필터링기술 고도화 ·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 조치 및 게재제한 조치 시행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협의체 운영(6월)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대상 교육 실시 · 주요 인터넷사업자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실태 점검(7~12월) · 웹하드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행실태점검(7~12월)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인터넷사업자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실태 점검(7~12월) · 웹하드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행실태점검(7~12월)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12월)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3,177	2,573*	4,662(심의중)	1,485	46.7
국비					
▪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3,177	2,573*	4,662(심의중)	1,485	46.7

* 2023. 10월 교부금 기준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등록 건수				68,425건	83,120건	'24년 목표치는 전년 실적대비 약 1% 상향 설정
○ 성과목표치 산식 : 상시점검 등을 통해 확보한 불법음란정보의 DNA DB 등록 건수	65,702건	68,391건	81,542건	('23.10. 기준)		

□ 기대효과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에 기여

담당부서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담당자	김기호 사무관	전화번호	02) 2110-1549
------	-----------------------	-----	---------	------	---------------

□ 과제개요

- 범정부 '공공 DNA DB' 구축 배포 등 기술지원을 통한 불법촬영물등 재유통 방지

□ 그간의 추진실적

- 불법촬영물 등 불법·음란 정보 재유통 방지
 - 범정부 「공공 DNA DB」 구축·배포 : 총 63,655건<'20.1.~'23.10.>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관계기관 간 '공공 DNA DB' 통합 구축·개선을 위한 수시 협력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사업자 확대 ('21.12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 일정기준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 공공 DNA DB 통합 관리·공조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 '디지털성범죄 등 공공 DNA DB 기술 지원 포털' 개설 및 서비스 운영
 - 'DNA 오식별 신고센터' 구축 및 원본 동영상 정제 실시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불법촬영 정적이미지 재유통 방지 기술 도입 및 운영
 - 해외망 유통 불법촬영물 방지를 위한 해시 공유 체계 구축
 - DNA 오식별 신고센터 운영 및 불법촬영물 원본 동영상 정제

○ 추진 내용

- 불법촬영 정적이미지 재유통 방지 기술 도입·배포 및 사업자 문의 대응
- 불법촬영물 파일 해시정보 해외 관계기관 연계 실시
- DNA 오식별 최소화를 위한 원본 동영상 정제 실시

○ 추진 방법

- 관계기관과의 연계 API 등 해시 공유 환경 구축
- 공공 DNA DB 원본 동영상 전수조사 및 정제 실시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연중	불법촬영물 원본 동영상 전수조사 및 정제 실시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방송통신발전기금)	508*	295**	-***	△508	△100

* 인건비, 경상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 예산 기준으로 변경 작성

** 공공 DNA DB 등 통합·관리공조시스템 장비증설 등 일부 사업 미집행(209), 연말 집행 예정.

***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종료(△508) 반영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공공 DNA DB 통합 관리시스템 고도화	-	1회 (구축)	1회 (고도화)	1회 (고도화)	-	고도화 완료

□ 기대효과

- 불법촬영물 등 불법음란정보 재유통 방지 강화 및 기술 안정성 증대
 - 정적이미지 유통방지 기술배포로 불법촬영물 재유포 방지 강화
 - DNA 기술적조치의 오식별 감소로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

담당부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확산방지팀	담당자	이도한 차장	전화번호	02) 3219-5813
------	--------------------	-----	--------	------	---------------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 과제개요

- 약물 성범죄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위한 탐지기술 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신고·홍보 활성화 등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 그간의 추진실적

- 여성가족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 '마약류 이용 성범죄' 예방 및 홍보 활동 적극 전개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성범죄에 특화된 예방 리플릿 제작 ('의심되면 거절하세요', 총 3만부), 전국 경찰관서 배부(5월)
 - 여성가족부와 협업, '마약류 이용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 (5.8.~5.31.), 수상작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 총 1,041명·1,080건 접수(슬로건 924건·포스터 156건) ⇨ 우수작 10건 선정·시상
 - 마약류 이용 성범죄 예방을 주제로 '캠퍼스 안심 소식지'를 제작, 교육부와 협업하여 각 대학 인권센터를 통해 전파·게시(8월)
- 시·도경찰청에서도 대학교·성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협업, △ 홍보 콘텐츠 제작 △ 예방 캠페인 △ 간담회 등 예방활동 및 지역별 대응체계 구축
- 신속한 탐지를 위한 '휴대용 약물 탐지기술' 개발 완료('20~'22년) 및 현장에서 국민과 경찰관이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등 추진

□ 2024년도 시행계획

- '휴대용 약물 탐지기술'을 토대로 제작 중인 '마약류 검출 간이키트' 시제품 성능 등 현장실증 추진(상반기) 및 신속 도입(예산 150백만원 확보)

- 마약류 이용 성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청소년·20대 등 대상 맞춤형 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및 부처 협업 지속 강화

※ 홍보 영상·카드뉴스·리플릿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 △ 피해사례 △ 예방·대처방법 △ 상담·신고창구 등 안내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마약류 검출 간이 키트보급	-	-	150	150	-
○ 마약류 이용 성범죄 예방홍보	-	-	28	28	-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23년)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대국민 홍보물 제작	2건	2건	홍보물 제작 건수

□ 기대효과

- '휴대용 약물 탐지키트' 도입·보급으로 마약류 이용 성범죄 신속 대응 강화
-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교육 콘텐츠를 제작, 활용하여 대국민 대상 마약류 이용 성범죄 홍보 활성화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송진영 경감	전화번호	02) 3150-0832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차경선 사무관		02) 2100-6395

법무부 국제형사과,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과제개요

<법무부>

- 해외 주요사범당국과 사범공조 강화 및 범죄인인도 실무협의 개최를 통해 불법 촬영물·아동성착취물 제작·유통사범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경찰청>

- 형사사범공조, 인터폴 공조와 함께 외국 법집행 기관·글로벌 기업 등과 직접 공조 등 국제공조 체계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법무부>

- 해외도피 불법촬영물 사범 **국내 강제송환**
 -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뒤 인터넷에 영상을 업로드하여 돈을 받고 판매한 성폭범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범을 덴마크에서 강제송환(2020. 7.)
 - *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와 덴마크간 직항편이 없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환승하며 왕복 40시간 가량 소요되는 일정으로 범죄인 송환
- 주요 국제회의 참여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 UN 범죄예방·형사사범총회 참석하여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입장 표명(2021. 3., 2023. 5.)
 -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UNTOC) 당사국총회 참석하여 여성·아동 성착취물 및 인신매매 방지에 대한 결의안 채택 및 협력 방안 논의(2022. 10., 2023. 9.)

○ 국제 공조 네트워크 강화

-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가입('23. 1.) 및 총회 서울 개최('23. 4.), 4년만에 한·미('23. 5.), 한·일('23. 3.) '형사협력 실무협약' 재개 등 국제 공조 네트워크 강화

* 'South East Justice Network', 동남아시아 공조 중앙기관 간의 네트워크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노동력착취, 성적착취, 장기적출 목적의 인신매매 규정이 더욱 적극적으로 의율되고 그에 상당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교육

- 법무연수원 저년차검사 대상 성착취 등 인신매매 범죄 수사 및 공소유지 강의 (2022. 10., 2023. 3., 2023. 11.)
- 법무연수원 검찰 6급 승진후보자 대상 국제기준에 부합한 성착취범죄 등 수사 역량 강화 강의(2022. 10.)

<경찰청>

○ 인터폴·유로폴 공조와 함께 해외 범집행 기관(美 FBI·HSI 등)·글로벌 IT 기업(구글·페이스북 등)과 직접 공조를 통해 국제공조 체계 강화

- 불법촬영물 등 제작·유통 사건 관련 해외 IT 기업에 대한 국제공조 요청 1,267건 ('23. 10월말 기준)

□ 2024년도 시행계획

<법무부>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해외 서버 등에 소재한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 관련 전자증거 신속 수집을 위해 「부다페스트 사이버 협약」의 국내 가입 절차 추진하여 위 협약 가입국인 유럽·미국 등 주요 국가와 국제공조 네트워크 강화

○ 추진 내용

- UN 범죄예방·형사사법총회(CCPCJ),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UNTOC) 회의,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 총회, 한·미, 한·일 ‘형사협력 실무회의’ 등 국제 다자·양자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 협약」 가입을 통해 주요 사법당국과의 형사사법공조 네트워크 강화 지속

- 성착취 범죄 및 인신매매 범죄 관련 검사·수사관 실무 교육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부다페스트 사이버 협약」 국내 가입 절차 추진 ○ 형사사법공조 국제회의 참여 및 디지털성범죄 국제공조 협의
2/4분기	○ 「부다페스트 사이버 협약」 국내 가입 절차 추진 ○ 형사사법공조 국제회의 참여 및 디지털성범죄 국제공조 협의 ○ 성착취 범죄 및 인신매매 범죄 관련 검사·수사관 실무 교육
3/4분기	○ 「부다페스트 사이버 협약」 국내 가입 절차 추진 ○ 형사사법공조 국제회의 참여 및 디지털성범죄 국제공조 협의
4/4분기	○ 「부다페스트 사이버 협약」 국내 가입 절차 추진 ○ 형사사법공조 국제회의 참여 및 디지털성범죄 국제공조 협의 ○ 성착취 범죄 및 인신매매 범죄 관련 검사·수사관 실무 교육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해외 주요사법당국 및 관계부처와 불법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실무협의회 실시(회)	4	4	4	4	4	불법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실무협의회 분기별1회 실시

<경찰청>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국외 체류 및 도피 사범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및 국내송환 요청 등 적극 추진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경찰청 국제공조협력계 통계, 1~10월 누적>

성과목표	실적 (2023년)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사이버성폭력 사건 관련, 해외 IT기업에 대한 국제공조 요청건수	1,267건	1,267건	수기통계

□ 기대효과

○ 해외 사법기관과의 형사사법공조 강화를 통한 신속한 사건 처리

-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요청한 불법촬영·유포사범 관련 국제형사사법공조 사건에 대해 신속한 공조 이행 기대

담당부서	법무부 국제형사과	담당자	김남훈 주무관	전화번호	02) 2110-3296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윤태수 경감		02) 3150-1159

외교부 여권과,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마약조직범죄수사과,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과제개요

<외교부>

- 해외 성매매로 인하여 관계기관에 의해 국위손상자로 통보된 자에 대해 현행 여권법령 등에 따라 여권 발급 제한

<경찰청>

- 인터폴 전용통신망을 통해 해외성매매 공조요청을 접수하거나, 해외 경찰주재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등으로부터 해외성매매 첩보를 수집하여 국수본에 인계
- 국수본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조직범죄수사계에서는 인계받은 첩보 및 자체 생산 첩보 바탕으로 해외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 등 상시단속하여 해외성매매 방지

<여성가족부>

- 해외성매매 방지 체계 구축 및 단속 강화
 - 해외성매매 실태를 파악하고,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외교부>

- '20.1월~'23.12월 간 관계기관 등의 통보에 따라 해외 성매매 사범 1명에 대해 여권 발급 제한 조치 완료(2021년 1건)
- 해외성매매 범죄 사실의 보고 누락 방지를 위하여, 전 재외공관에 국위손상자 보고에 관한 지침 등 공문 발송을 통해 주의 환기 2회* 실시

* '23.3월, '23.10월

<경찰청>

○ '23년 해외성매매 피의자 검거 현황

구분	계	성매매알선	성매도	성매수
검거인원(명)	4	4	0	0

<여성가족부>

○ 전국 국제공항 전광판을 통한 해외성매매 불법 홍보('20.1월~계속)

※ 한국공항공사를 통해 전국 국제공항 내 전광판을 통한 홍보 추진

홍보문구: “아직도 모르십니까? 해외성매매도 처벌됩니다. 성매매피해상담 1366”

○ 성매매 실태조사를 통한 해외 성매매 경험 등 실태조사 추진('22년)

※ 성구매 경험 및 경로(본인, 주변인), 해외 성매매 처벌 인식 등(2,000명)

○ 성매매추방주간(9.19~25) 등 계기를 활용하여 성매매 방지 공감대 확산

○ 추진 내용

- 성매매 추방주간(9.19~25) 운영 등 대국민 홍보(매년)
- 전국 공항 전광판을 통한 해외성매매 불법 홍보(계속)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공항 전광판 홍보 협조요청
2/4분기	- 공항 전광판 홍보 협조요청
3/4분기	- 공항 전광판 홍보 협조요청 - 성매매 추방주간 계기 성매매 방지 홍보
4/4분기	- 공항 전광판 홍보 협조요청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개월)	산출근거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공항 전광판 홍보 횟수	12	12	12	12	관련 공문서에 기재된 연간 개월 수 합산
○ 성과목표치 산식 : 관련 공문서 상의 전광판 홍보 개월 수의 합계					

□ 2024년도 시행계획

<외교부>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해외 성매매로 인해 국위손상자로 통보된 자에 대해 여권 발급 제한

○ 추진 내용

- 현행 여권법령에 따라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해 여권 발급 제한
- 해외 성매매 범죄 사실의 보고 누락 방지를 위하여, 반기별로 전 재외공관에 국위손상자 보고에 관한 지침 등 공문 발송을 통해 주의 환기

○ 추진 방법

-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이 해외 성매매 사범을 적발하여 보고 시 외교부 본부가 관련 법령상* 제재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 후 일정 기간 여권 발급 제한 처분

* 「여권법」 제12조의2(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 ② 외교부장관은 외국에서 살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성범죄, 마약류범죄, 밀항·밀입국이나 그 밖의 중대한 위법행위(유죄 판결이 확정된 행위로 한정한다)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조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나 시정·배상·사죄 요구 조치 또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권익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신설·강화하는 조치를 받고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法定刑)이 단기 1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거나 그보다 중한 사람: 3년
2.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인 반면 장기 3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람: 2년

3.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미만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람: 1년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의 내용 및 횟수, 국위(國威)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전 재외공관에 반기별 국위손상자 보고에 관한 지침 등 공문 발송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연중상시	해외 성매매로 인한 국위손상자 적발 및 보고 시 검토 후 여권 발급 제한 처분
상반기	전 재외공관에 국위손상자 적시 보고 환기 공문 발송
하반기	전 재외공관에 국위손상자 적시 보고 환기 공문 발송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해외 성매매 사범 여권 발급 제한						
○ 성과목표치 산식 : ① 조치건수÷여권 발급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해외성매매 사범 통보건수×100 ※ 다만 요청건수가 0건인 경우 이행을 100%로 하며, 통보 후 조치가 진행중인 건수는 산식에서 제외한다.	0건	1건	0건	0건	80%	여권발급 제한 요청에 따른 조치건수
② 전 재외공관에 국위손상자 적시 보고 환기 공문 발송					2회	국위손상자 적시 보고 환기 공문 발송 횟수

<경찰청>

○ 해외성매매 첩보 수집 강화 및 상시 단속 실시

- 해외 경찰주재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등을 통해 해외 성매매 첩보 수집 강화
- 국제범죄수사계를 활용, 해외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 상시 단속 등 실시

○ 유관기관 협업 강화

-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참여 및 여성가족부·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제 구축하여 해외성매매 상시단속에 대해 정부 부처간 긴밀히 협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23년)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해외성매매 피의자 검거인원(명)	4	8	수기통계

<여성가족부>

○ 성매매추방주간 등 계기별 성매매 방지 홍보 추진

- 성매매방지 영상물, 포스터 등 제작하여 지상파(KBS, EBS 등), 온라인(SNS, 유튜브 등),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

○ 해외 성매매 경험·인식 등 실태조사('25년 예정)

□ 기대효과

○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

-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을 통한 재발 방지

담당부서	외교부 여권과	담당자	전봄 외무행정관	전화번호	02) 2002-0133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신재엽 경감 김태현 경감		02) 3150-0416 02) 3150-2043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김대중 사무관 양동혁 주무관		02) 2100-6435 02) 2100-6446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 과제개요

<방송통신위원회>

- 휴대전화를 통해 유통되는 성인스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스팸신고 정보를 통해 성매매 알선 정보의 유통 여부 파악·대응

<경찰청>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추진

□ 그간의 추진실적

<방송통신위원회>

- 성매매·성인광고·음란물 등의 불법스팸 전송자로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거나 청소년 대상 전송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분조치

구분	성인스팸 전송자 조사업체 수	결과
2021년	22개소	수사의뢰 22개소
2022년	10개소	수사의뢰 4개소, 행정처분 5개소
2023년	9개소	수사의뢰 6개소

<경찰청>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매뉴얼> 하달('21년 9월)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권역별 간담회 실시('22년 9-10월)
- <성매매 피해자 식별 관련 업무지시> 하달('23년 8월)

□ 2024년도 시행계획

<방송통신위원회>

○ 추진 내용

- 휴대전화를 통한 성인 스팸 발송업체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13개)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성매매 알선 등 음란·성인스팸 신고내역 모니터링 및 주요 전송자 확인
2/4분기	성매매 알선 등 음란·성인스팸 신고내역 모니터링 및 주요 전송자 확인
3/4분기	성인 스팸 전송자 현장점검 실시
4/4분기	성인 스팸 전송자 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 조치(행정 및 형사처분)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 불법스팸 신고접수 및 처리	865	865	865(심의중)	-	-
국비					
▪ 일반회계	865	865	865(심의중)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1년)	(2022년)	(2023년)		
○ 성인스팸 발송 업체 기획 점검 대상업체 수(개)	22	10	9	13	스팸 신고건 기반조사가 이루어지므로 '21~'23년도 실적치 평균값으로 산정
※ 성과목표치 산식 : 불법 성매매 신고 접수 후 진행한 현장점검 건수 집계			('23.10. 기준)		

<경찰청>

- (아동·청소년 재피해 방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발견 시 피해자로 보호 및 지원센터 연계하여 상담·자활 등 지원을 통해 재피해를 방지하고,
 - 신학기 성범죄 예방 활동(매년 3·9월) 시 신고 방법, 보호·지원내용 등에 대해
 - △ 온라인 홍보·교육 △ SPO 특별 예방 교육 등 실시
- (성매매 사범 검거 및 범죄 예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위장 수사를 적극 실시 하여 범죄자 검거 및 범행심리 억제로 범죄 예방 효과 증대
- (성매매 알선 정보 차단) 성매매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성매매 광고 차단 시스템*’을 통해 성매매 광고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차단
 - * 성매매 전단지·알선사이트 광고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자동전화 시스템에 등록, 3초마다 전화를 걸어 성매수자의 통화를 차단하는 시스템('18년~)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2년)	(2023년)		
전년도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 검거 인원	292명	385명	400명	KICS 통계 시스템

기대효과

<방송통신위원회>

-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알선 정보 유형파악 및 신속차단 등 대응조치

<경찰청>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근절

담당부서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담당자	전혜정 사무관	전화번호	02) 2110-1522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전중현 경감 박도현 경위		02) 3150-0827 02) 3150-2868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보호팀

□ 과제 개요

<경찰청>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추진

<여성가족부>

- 랜덤채팅앱 등 온라인 성매매 등의 불건전 정보 차단
-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사이버 상에서 성매매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긴급 상담, 구조지원 등 성매매 예방활동 추진
- 청소년 온라인 성매매 예방을 위한 상담 및 모니터링 실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주요 창구인 랜덤채팅앱 등 온라인 성매매 정보에 대한 적극적 모니터링을 통해 심의 및 시정요구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경찰청>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매뉴얼> 하달('21년 9월)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권역별 간담회 실시('22년 9-10월)
- <성매매 피해자 식별 관련 업무지시> 하달('23년 8월)

<여성가족부>

- 채팅앱, 채팅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온라인 청소년 성매매 의심 이용자 신고

-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서비스 홍보 및 온라인 상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적절한 지원서비스(법률, 의료, 교육 등) 연계

○ 연도별 추진실적

구 분	'18	'19	'20	'21	'22
상 담(명)	4,063	4,284	3,611	4,396	4,174
지원 연계(건)	4,719	5,699	4,751	5,920	5,473
방심위 신고(건)	902	971	954	993	79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랜덤채팅앱 및 SNS를 통한 개인 간 성매매 정보 시정요구
 - 랜덤채팅앱 : 8,395건(2022년) → 12,106건(2023년 10월 현재), 44% 증가
 - SNS : 5,091건(2022년) → 7,660건(2023년 10월 현재), 50% 증가
- 인터넷 상 공개되어 유통되는 성매매 광고 정보 시정요구
 - 1,471건(2022년) → 1,708건(2023년 10월 현재), 16% 증가
- 출장마사지 및 화상채팅, 애인대행 등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 1,901건(2022년) → 3,831건(2023년 10월 현재), 102% 증가

□ 2024년도 시행계획

<경찰청>

- **(아동·청소년 재피해 방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발견 시 피해자로 보호 및 지원센터 연계하여 상담·자활 등 지원을 통해 재피해를 방지하고,
 - 신학기 성범죄 예방 활동(매년 3·9월) 시 신고 방법, 보호·지원내용 등에 대해
 - △ 온라인 홍보·교육 △ SPO 특별 예방 교육 등 실시
- **(성매매 사범 검거 및 범죄 예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위장 수사를 적극 실시 하여 범죄자 검거 및 범행심리 억제로 범죄 예방 효과 증대

- (성매매 알선 정보 차단) 성매매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성매매 광고 차단 시스템*'을 통해 성매매 광고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차단

* 성매매 전단지·알선사이트 광고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자동전화 시스템에 등록, 3초마다 전화를 걸어 성매수자의 통화를 차단하는 시스템('18년~)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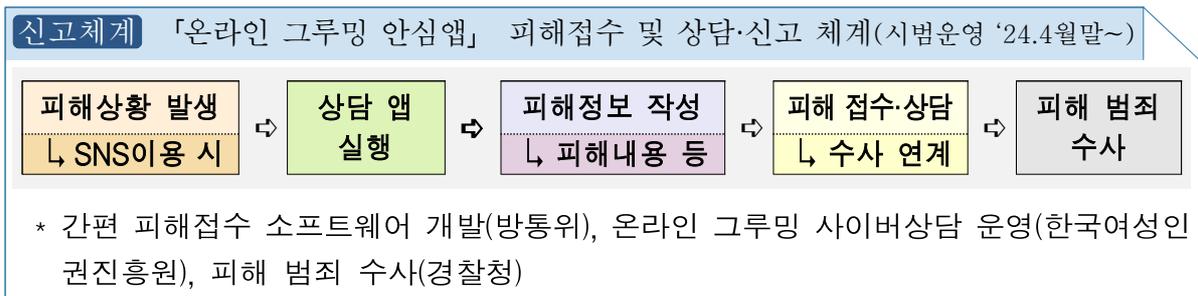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2년)	(2023년)		
전년도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 검거 인원	292명	385명	400명	KICS 통계 시스템

<여성가족부>

○ 추진 내용

- 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 상담 지원, 법률·의료·수사 연계 지원
- * 아동·청소년이 온라인그루밍 위험 노출 시 피해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그루밍 안심앱」 개발·보급



- 온라인플랫폼 내 성착취 의심정보 모니터링 및 피해 접수, 신고(인터넷 사업자, 방심위, 수사기관 등)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증 감	
	예산	집행		증감액	증감률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정보보호활동 지원 (청소년 성매매 사이버상담)	6,116 (261)	4,871 (261)	5,403 (265)	△713 (4)	△13.2 (1.5)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온라인 성매매 유인 의심신고 건 수	1,410건	1,360건	1,161건	4,079건	4,283건	'23년 실적치 대비 5% 상향 목표치 설정
○ 성과목표치 산식 :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건수 합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랜덤채팅앱에 대한 중점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추진 내용

-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주요 창구로 악용되는 랜덤채팅앱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 지속 실시
- 주요 글로벌 SNS를 통해 유통되는 성매매 및 성매매 광고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의·시정요구
- 해외서버에서 URL 변경을 통해 단속을 회피하는 성매매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심의 및 시정요구

○ 추진 방법

- 랜덤채팅앱 모니터링 강화 : 연2회 중점모니터링 및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주요 글로벌 SNS 내 조건만남 등 개인 간 성매매 유인 정보 및 성매매 업소 및 유사 성매매 업소 홍보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접속차단)' 결정 및 해당 SNS 사업자의 원 정보 삭제 등 '시정요청' 병행
- URL 변경 성매매 사이트 관리목록 작성 및 매주 변동여부 파악을 통해 수사 심의상정 및 시정요구 실시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랜덤채팅앱 전담 모니터요원 배치
2/4분기	성매매 정보 모니터링 단체 대상 업무협약 및 모니터링 실무 교육
3/4분기	SNS를 통한 개인 간 성매매 정보 중점 모니터링 실시
4/4분기	URL 변경 성매매 사이트 심의실적 자체점검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랜덤채팅 성매매정보 시정요구 실적	6,517건	8,395건	12,106건	9,907건	최근 3년 간 평균 실적 대비 10% 증가
○ 성과목표치 산식 : $\frac{6,517+8,395+12,106}{3} \times 1.1$					

□ 기대효과

<경찰청>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근절

<여성가족부>

- 성매매 등 성착취 피해 유입 및 확산 방지
- 상담·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상 회복 지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특정 기간 동안의 집중 단속과 아울러 전담인력의 상시 모니터링으로 랜덤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제안 이용자 발견 시 신속한 시정요구 가능
-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다양화함으로써 타 플랫폼으로 이전되는 규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성매매 정보 유통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대응 가능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담당자	전중현 경감 박도현 경위	전화번호	02) 3150-0827 02) 3150-2868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황재원 사무관 김민형 주무관		02) 2100-6575 02) 2100-616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보호팀		김준희 차장		02) 3219-5842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행안부 자치경찰지원과

□ 과제개요

<경찰청>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선제적 범죄 불안요인 발굴 및 성범죄 등 여성대상 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초기대응으로 강력범죄화 차단, 범죄 불안감 해소

<행정안전부> * '24년 신규

- 공모사업을 통한 취약지 범죄예방 및 협력치안 공동대응 등을 위해 CPTED, CCTV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 개요》

- ▶ (사업명)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 동네 만들기
- ▶ (사업비) 20억원(특별교부세) * 지방비 매칭(5:5) 시 총 40억 규모
- ▶ (기간) '24. 8. ~ '26. 12.(2년 5개월)
- ▶ (지원분야) ①취약지 범죄예방, ②협력치안 공동대응, ③사회적 약자보호

□ 그간의 추진실적

<경찰청>

- 「스토킹처벌법」시행('21.10월)에 기반하여 엄정한 범집행 및 초기대응 강화
 - 종전 경범죄에 불과했던 반복·지속적 '주거 접근하기',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등에 대해 법 제정·시행으로 엄정 대응 기반 마련
 - * 가·피해자 분리를 위해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 신고 초기 보호조치 적극 실시
- 시기·대상별 성범죄 예방활동을 통해 치안 사각지대 발굴
 - 신학기 초·중·고교 주변 및 대학 내·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자체·학교 등과 합동 홍보·교육 및 피서지 등 하계기간 성범죄 예방활동 추진

□ 2024년도 시행계획

<경찰청>

- **(취약요인 진단)** 범죄예방진단팀(CPO) 및 범죄예측·분석시스템(Pre-CAS) 적극 활용, 원룸촌·대학가 등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치안환경 진단·분석
 - 취약요소·구역에 대해 지자체 협업을 통한 CCTV 등 방범시설 확충 및 범죄 예방 환경개선 사업 추진, 주거침입·성범죄로부터 안심환경 조성
- **(불법촬영 예방)** 일상 속 불안감이 높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탐지 장비 성능 개발·확충 및 지자체·민간과 합동 점검, 관련 조례개정 확대 등
- **(신고·보호지원 활성화)** 성범죄 피해 신고·상담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개발한 비대면 상담 '챗봇'을 행안부 '국민비서'와 연계 추진, 이용자 확대
 - 성범죄·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데이트폭력 등 범죄 '피해자 권리 안내서' 정비,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다국어용 안내서 제작
- **예산 현황**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1년)	(2022년)	(2023년)		
성폭력 범죄(강간·강제추행) 발생 건수 감소	20,267	22,484	22,504	전년대비 발생건 감소 (1.5% ↓)	범죄발생원포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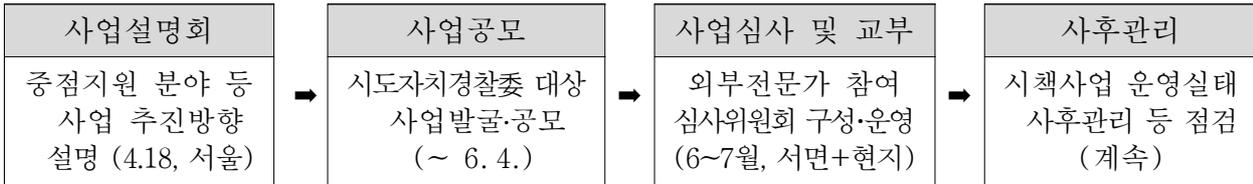
- **(취약지 범죄예방)** 노후 주택가 밀집지역 등 우범지역 환경개선 사업
 - 천변·산책로 방범용 CCTV, 조도 개선, 비상벨 등 기반시설 확충
 - 원룸 밀집지역 침입방지시설, 안내표지, LED벽화 등 환경 개선

- (협력치안 공동대응) 정신질환자 및 주취자, 여성·아동 보호를 위한 합동 대응 거점시설* 신설·확대 지원

* (사례) 정신질환응급대응센터, 주취해소센터, 위기아동·성폭력 합동대응센터 등

- (사회적 약자 보호) 아동·노인 사고 예방 등 생활안전 시설 지원 등

○ 추진체계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1년)	(2022년)	(2023년)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	-	-	-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교부	CCTV 설치 등 환경개선 실적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송진영 경감	전화번호	02) 3150-0823
	행안부 자치경찰지원과		임근호 사무관		02) 2100-432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장애인 대상 학대·성범죄 피해 실태 파악 및 예방교육 강화
 - 장애인 학대 신고현황 등을 활용하여 실태 파악 및 예방 강화
- (추진체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 1개, 지역 19개)
- (주요 내용) 여성장애인의 학대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학대 및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 교육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교육 실적('22년 8월 기준)
 - '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인원 총 874,485명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내실화
- 추진 내용·방법
 - 장애인학대 인지 가능성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 직종 종사자 대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점검 강화
 -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적 부진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지도방안 수립 추진
 - 기 제작한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현행화 등 수정·보완
 - * 「신고의무자를 위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2022)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학대·성범죄 예방 교육 실시
2/4분기	학대·성범죄 예방 교육 실시, 교육자료 수정·보완
3/4분기	학대·성범죄 예방 교육 실시
4/4분기	학대·성범죄 예방 교육 실시, 연간 실적 점검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5,971	5,971	4,962	△1,009	△16.9
국비	5,971	5,971	4,962	△1,009	△16.9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성과지표명 : 학대 예방 교육 목표 대비 실시율(%)	해당없음	103% (당초 목표치	105,106% (당초 목표치	'24.2.28. 취합예정	100% (874,500명)	*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실시 학대·성범죄 예방 교육 목표치 및 실시 근거
○성과목표치 산식 : 예방교육 실시인원/ 목표건수×100		832회 대비 842회)	832(명) 대비 874,485명)			

* 2022년부터 지표 수정(교육 실시건수(회) → 교육인원(명))

□ 기대효과

- 여성장애인의 학대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학대 및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인권 향상에 기여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담당자	문동원 주무관	전화번호	044) 202-3312
------	-------------------	-----	---------	------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이용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 (추진체계) 인권지킴이지원센터 및 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 (주요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지원센터를 통해 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사무국장 대면 집합교육(10회/693명)
- 장애인거주시설 직원 인권 교육(11회/455명)

□ 2024년도 시행계획

- 매년 실시하는 인권지킴이지원센터의 시설장·사무국장 인권침해예방교육 및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시 여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 실시
- 거주시설 자체적으로 종사자 연 2회(8시간 이상) 및 이용자 연 1회(4시간 이상) 인권교육 실시
-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하여 모니터링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인권지킴이지원센터운영	100	100	90	△10	△10
국비	100	100	90	△10	△10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및 사무국장 인권교육 참여자수	1,289명 (온라인)	1,554명 (온라인)	1,801명 (온라인)	693명 (집합)	650명 (집합)	* 인권지킴이 지원센터 교육 목표치 근거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추진)

□ 기대효과

- 시설 이용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자정기능을 강화하고, 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도모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침해 여부 등 모니터링 지속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담당자	윤민수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2-3309
------	-------------------	-----	---------	------	---------------

1-4-3-③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 전문 지원기관 확대

1-4-3-④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종사자 역량 강화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장애인 특화 상담소·보호시설 확대 및 종사자 역량 강화를 통해 관련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예산 편성 및 배정) → 시·도, 시·군·구(사업추진 및 예산집행관리)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피해자 지원, 정산 보고 등)
- (주요내용)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23개소)·보호시설(8개소), 자립지원시설(3개소) 운영지원, 장애인 가정폭력 상담소(4개소)·보호시설(2개소) 운영지원, 신규 국비지원 기관 컨설팅 및 종사자 슈퍼비전 등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자립지원시설* 운영 강화 및 확대(연중)
 - * (성폭력) 성폭력 피해 상담소 22개, 피해자 보호시설 8개, 자립지원시설 3개
 - (상담소) 중증장애인 상담편의 확충*, 일반 상담소 인력(소장 1명, 상담원 3명) 외에 추가로 상담지원 인력(1명) 인건비 및 교통비 지원 확대('19년~)
 -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상담원의 방문상담, 수화통역인(청각장애인) 지원 가능
 - (보호시설)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장애인용 통행로, 승강기, 화장실, 침실 등 편의시설*의 구축, 인건비**·교통비 등 추가 지원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 일반 보호시설 인력(시설장 1명, 상담원 2-3명, 보조원 1명) 외 상담원(1-2명) 추가 배치
- 신규 국비지원 기관(8개) 컨설팅, 관련 종사자(총275명) 슈퍼비전 실시('20년)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연중)
- 신규 국비지원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슈퍼비전 실시(계속)

○ 추진 내용

-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22개소), 보호시설(8개소), 자립지원시설(3개소) 운영지원
-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연중)

○ 추진 방법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예산 교부(매분기별) 및 운영 지원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예산교부(1/4분기)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계속)
2/4분기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예산교부(2/4분기)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계속)
3/4분기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예산교부(3/4분기)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계속)
4/4분기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예산교부(4/4분기)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계속)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한국여성 인권진흥원 지원’에 포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39,199	37,907	39,615	416	1.1
○성폭력 피해자 지원	37,537	36,689	37,354	△183	△0.5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14,233	14,233	14,692	459	3.2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상담 지원 실적(천건)	224	240	235	집계중	238	상담소의 성폭력 상담건수와 보호시설 심리지원 실적의 합계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상담지원 실적(천건)	306	317	363	363 (추정치)	374	전년대비 3% 증가
○성과목표치 산식 : 가정폭력상담소의 가정폭력 상담건수와 보호시설 심리지원 실적의 합계						

□ 기대효과

-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시설 접근성 강화 및 시설의 추가인력 확충으로 피해자 지원서비스 내실화 제고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담당자	양재명 사무관	전화번호	02) 2100-6396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이현진 사무관		02) 2100-6425

□ 과제개요

- 직장 내 기숙사에 대한 시설 기준 마련 및 여성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 직장 내 동료 등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시 사업주로 하여금 배치 전환 및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 구제절차 지도
-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업주에 대해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 그간의 추진실적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침 마련 ('21.1.)
 - * 근로기준법령 상 규정 된 기숙사 시설기준을 바탕으로 거주인원, 설치 장소, 냉난방시설, 채광 및 환기시설, 소방시설 등 기준 마련
 - *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시 주거환경 실태조사 병행
-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시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으로 직장 내 성희롱,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 준수,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점검
-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사업장 변경, 고용허가 취소·제한

- (**'20년**) 법 위반 사업장 555개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140건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93건, 교육자료 미게시 26건, 사업주교육 미 실시 20건,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미조치 1건 적발
 - * 시정지시 139건, 과태료 1건 조치
- (**'21년**) 법 위반 사업장 1,334개소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670건으로 성희롱예방교육 360건, 교육자료 미게시 308건,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미조치 2건 적발
 - * 시정지시 670건

-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중 숙소 제공 사업장 1,930개소에 대해 주거실태 조사 실시, 근로기준법령 상 기숙사 시설기준 미비와 안전위생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117건)
- (**22년**)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3,021개소 대상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 지도·점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총 615건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365건, 교육자료 미게시 230건
-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중 숙소 제공 사업장 2,522개소에 대해 주거실태 조사 실시, 근로기준법령 상 기숙사 시설기준 미비와 안전위생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95건)
- (**23년**)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1,523개소 대상 지도·점검 실시,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은 총 404건으로 교육자료 미게시 215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89건 등
- 상반기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중 숙소 제공 사업장 1,240개소에 대해 주거실태 조사 실시, 근로기준법령 상 기숙사 시설기준 미비와 안전위생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93건)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외국인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여성 외국인근로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및 발생 시 조치사항 준수여부, 성희롱 예방 교육 취약 의심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실시

○ 추진 내용

- '24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3,000여 개 고용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실태조사,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이행 여부 등 중점 점검
- *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여부 등

○ 추진 방법

- 점검 시 통역원을 대동하여 사업주와 분리된 상태에서 외국인근로자 직접 면담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근로감독관과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사법 조치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상반기 지도점검 계획 수립
2/4분기	상반기 지도점검 추진
3/4분기	하반기 지도점검 계획 수립
4/4분기	하반기 지도점검 추진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외국인 고용사업장 점검(개소)	1,502	2,310	3,021	3,000	3,000	지방고용 노동관서 사업장 점검 결과
○ 성과목표치 산식 : 150(명)×20(개소)						

* '20~'21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초 점검수행 3,000개소에서 축소 조정

□ 기대효과

-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익 보장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업무에 전념하고 성차별 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담당자	이동희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2-7739
------	------------------	-----	---------	------	---------------

여성가족부 권익구조과, 법무부 이민통합과,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 과제개요

<여성가족부>

- (사업목적) 이주여성이 폭력피해 없이 한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수용성 제고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7(가정폭력 추방주간)

<법무부>

- (사업목적)
 - 이주배경에 따른 언어적 어려움, 정보 부족 등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신고가 어려운 이주여성에게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 최소화
- (법적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39조(사회통합프로그램)
- (주요내용)
 - 법무부와 경찰청 협업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이민자에게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예방 교육 특강 실시
 - ※ 경찰청 범죄예방교육 전문강사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방문하여 실제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사례와 함께 예방교육 특강 실시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법무부 이주여성 성폭력 예방교육 동영상*(법무부 유튜브 게시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 강화
 - * '18년 법무부 연구용역으로 내·외국인 대상 유형별 이주여성 성폭력 예방교육 동영상을 언어별로 개발(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경찰청>

- 이주여성은 여성·외국인이라는 이중적 취약점으로 인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우며 범죄신고 및 피해회복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음
 - 성폭력·가정폭력 등 이주여성이 노출되기 쉬운 범죄유형과 범죄예방 및 대응법을 교육해 국내 체류외국인의 범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 정착을 도모
- 법무부·여가부·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결혼이주여성·근로이주여성·유학생·다문화가정 자녀 등 유형별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여성가족부>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 * 유튜브 및 tv(방송) 송출('22년),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송출('23년)
-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 * 유튜브, 카카오(인터넷), tv(방송) 송출('21년)

<법무부>

- (사업목적)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이해를 바탕으로 결혼이민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 속성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가정 형성 지원
 -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이미 국제결혼을 한 상태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실시
 - * 고시 국가 이외 국민과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도 교육 신청 가능
 - ①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 소개, ②결혼이민 사증발급 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책 안내, ③사례 및 경험담 소개, ④인권교육(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가정폭력 방지 등) 등 4개 과정으로 구성

<법무부>

- (사업목적)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이해를 바탕으로 결혼이민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 속성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가정 형성 지원
 -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이미 국제결혼을 한 상태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실시
 - * 고시 국가 이외 국민과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도 교육 신청 가능
 - ①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 소개, ②결혼이민 사증발급 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책 안내, ③사례 및 경험담 소개, ④인권교육(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가정폭력 방지 등) 등 4개 과정으로 구성
- '20. 7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주말 교육 시범 실시
- '21. 2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대면·비대면 교육 선택 실시
- '21. 12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2개국(중국·베트남) 교재 전면 수정
- '22. 3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공통교재 및 5개국(필리핀·캄보디아·태국·몽골·우즈베키스탄) 교재 전면 수정
- '22. 4월 대면 교육 전면 재개(비대면 교육 선택 가능)
- '22. 8월 교육 신청인원 증가에 따라 수강횟수를 추가하여 교육 실시
- 현재 전국 17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동 프로그램 운영

<경찰청>

- 이주여성 체류유형별 맞춤형 성폭력·가정폭력 등 범죄예방 교육을 제공
 - 외국인 지원업무를 주관하는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타부처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교육과정을 활용, 경찰관이 출강하여 범죄예방 교육 실시
 - * '23년 법무부·여가부·고용노동부 등 협업하여 체류외국인 76,498명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유관기관을 통해 「외국인 범죄예방 가이드」 리플릿을 배포하고 각종 범죄예방 카드뉴스·교육자료를 SNS상 이주여성 커뮤니티 게재

□ 2024년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공감대 형성

○ 추진 내용

- 이주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인권증진을 위해 일반국민 대상 이주여성인식 개선 홍보(연중)
- 이주여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등 홍보 강화(연중)

○ 추진 방법

-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홍보 추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4/4분기	- 이주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홍보 추진(연중)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24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 (이주여성 인식개선 및 폭력피해예방 홍보)	76	76	-	△76	순감
국비	76	76	-	△76	순감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이주여성 홍보영상 송출 건수	-	2건	2건	2건	-	성과보고서
○ 성과목표치 산식 : 송출건수						
○ 성과지표명 : 자체 SNS 등 홍보 실적	-	-	-	-	1건	실적보고서
○ 성과목표치 산식 : 노출건수						

※ 송출 등 홍보예산 감액에 따라 성과지표 변경

<법무부>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국내 체류 이주여성 등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범죄예방교육 실시
- 조기적응프로그램 기초법·질서 교육에 성범죄,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 추진 내용

- 동영상을 활용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지속
- 범죄예방교육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민교육으로 운영
- 한국사회이해(기본, 심화) 동영상을 활용한 이주여성 대상 범죄예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모성보호 교육 시행
- 계절근로자, 유학생 등 성폭력 취약계층 대상 예방 교육 강화

○ 추진 방법

- 전국 사회통합교육 운영기관에서 교육 시행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연중 상시	사회통합프로그램 범죄예방 교육 운영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명)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사회통합프로그램 범죄예방교육	200	1,316	2,093	2,167	2,384	전년대비 10% 증가
○ 성과목표치 산식 : 범죄예방교육참여자수(명)						

※ 코로나 19 이후 '22년부터 집합교육이 재개되고, 온라인교육 활성화 등 교육방식을 다양화하여 참여자가 증가함에 따라 '24년 목표치는 전년 대비 약 10% 적극 상향

<법무부>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을 위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 운영

○ 추진 내용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실시 :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월 2회 실시
- 만족도 조사 : 교육참여자 대상 설문실시, 교육만족도 조사

○ 추진 방법

- 전국 17개 출입국·외국인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교육 시행
- 추진절차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일정에 맞게 교육일정 공지(월 2회)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해 교육 신청 → 교육 참여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월 2회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 실시
2/4분기	월 2회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 실시
3/4분기	월 2회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 실시
4/4분기	월 2회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 실시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운영					
국비	265	182 (10월 현재)	265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만족도	80.9	78.7	81.5	81.5 (10월 현재)	75	매우만족+만족/전체 응답자
○ 성과목표치 산식 : 교육 참여자 만족도(%)						

<경찰청>

○ 이주여성 체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

- △ 결혼이주여성 △ 근로이주여성 △ 유학생 △ 다문화가정 자녀 등 특성을 고려해 성폭력·가정폭력 등 외국인 범죄예방 교육 실시

구 분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 내용
결혼이주자	기초질서 및 안전교육, 가정폭력·성폭력 대응방안 등
외국인 근로자	기초질서 및 안전교육, 성범죄 예방, 근로법 등
다문화가정 자녀	한국어, 성범죄·학교폭력(피해) 예방법 등

○ 외국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의 내부 교육과정 뿐만아니라 외부기관의 외국인 교육과정을 적극 발굴·활용해 범죄예방 교육 추진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외사경찰활동	138	138	138	0	0
- 체류외국인 범죄예방 교육	138	138	138	0	0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범죄예방 교육						
○ 성과목표치 산식 : [∑활동별(가중치×수혜자수) / 시도경찰청 등록외국인 ×100]	4.8	4.92	5.04	5.16	5.20	다문화 치안활동 DB실적 산출

□ 기대효과

<여성가족부>

○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공감대 형성

<법무부>

- 이주 여성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등 범죄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언어문제, 정보부족 등에 따른 여성폭력 피해 최소화

<법무부-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인권교육 실시>

- 문화적 갈등으로 인한 국제결혼 가정의 혼인 파탄 및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인권 및 가정폭력 방지 교육을 통해 속성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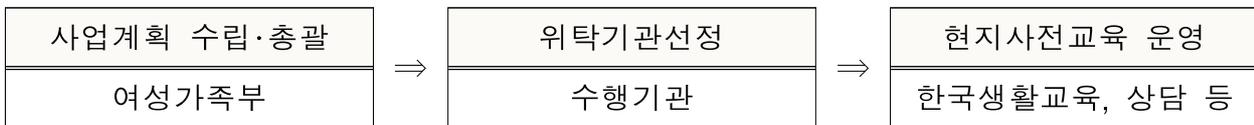
<경찰청>

- 이주여성의 국내법 이해도를 제고하고 안전한 다문화사회 분위기 조성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구조과	담당자	한송이 사무관 현승환 주무관	전화번호	02) 2100-6424 02) 2100-6428
	법무부 이민통합과		전강섭 사무관 홍동우 사무관		02) 2110-4146 02) 2110-4144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김민규 경사		02) 3150-2866

□ 과제개요

- (사업목적)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정착 지원
- (주요내용) 결혼이민자가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 (추진체계)



□ 그간의 추진실적

-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현지사전교육(베트남, 필리핀, 태국)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가별 현황		
		베트남	필리핀	태국
2020년	2,061	1,714	246	101
2021년	866	330	266	270
2022년	2,717	1,970	330	417
2023년	4,021	3,327	447	247

- 결혼이민예정자 온·오프라인 상담 실시

- 전화, 방문, 온라인(전자우편) 등을 통해 1:1 방식 운영

* ('20년) 1,051명 → ('21년) 419명 → ('22년) 1,577명 → ('23년) 2,303명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젠더폭력 예방 등 교육 내용에 대한 성인지 강화
- 코로나19 상황 호전에 따른 참여자 확대 추진

○ 추진 내용 및 방법

- 결혼이민예정자 현지 사전교육
- 결혼이민예정자 온·오프라인 상담 실시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사업계획 수립(젠더폭력 예방 포함)
2/4분기	- 현지사전교육 상시교육 추진 및 분기별 성과점검
3/4분기	- 현지사전교육 상시교육 추진 및 분기별 성과점검
4/4분기	- 현지사전교육 상시교육 성과평가 등 추진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375	375	375	0	0
국비	375	375	375	0	0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현지사전교육 참여인원	2,061	866	2,717	4,021명	4,021명	'24년 실적보고
○ 성과목표치 산식 : '24년 실적 유지						

□ 기대효과

- 현지사전교육 참여대상자 확대 추진 및 교육 접근성 제고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담당자	신혜경 사무관 한지훈 주무관	전화번호	02) 2100-6370 02) 2100-6379
------	-----------------	-----	--------------------	------	--------------------------------

□ 과제개요

- 예술홍행(E-6)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매매
강요·알선, 임금착취 등 인권침해 및 불법행위 실태 파악
 -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한 관련 법령 위반여부 확인
 - * 여성가족부(주관), 법무부, 고용노동부, 문체부, 영등위 및 지자체 참여

□ 그간의 추진실적

- ('20~'21년) 코로나19로 미실시
- ('22년 下)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9월)
- ('23년 下)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10월~12월)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외국인전용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E-6) 관련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 및 인권
침해 사례 발생여부 확인 등
- 추진 방법
 - 여성가족부 주관 외국인전용 유흥업소 관계기관 합동 점검 참여
 -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체류허가 시 인신매매 피해 여부 확인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유흥업소 종사자 체류허가 시 인신매매 피해식별 조사
2/4분기	• 유흥업소 종사자 체류허가 시 인신매매 피해식별 조사 • 외국인전용유흥업소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3/4분기	• 유흥업소 종사자 체류허가 시 인신매매 피해식별 조사
4/4분기	• 유흥업소 종사자 체류허가 시 인신매매 피해식별 조사 • 외국인전용유흥업소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외국인전용 유흥업소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0회	0회	0회	1회	2회	시행 문서
유흥업소 종사자 인신매매 피해식별 지표	-	-	-	-	90% 이상	이행여부 점검

기대효과

-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및 폭력 예방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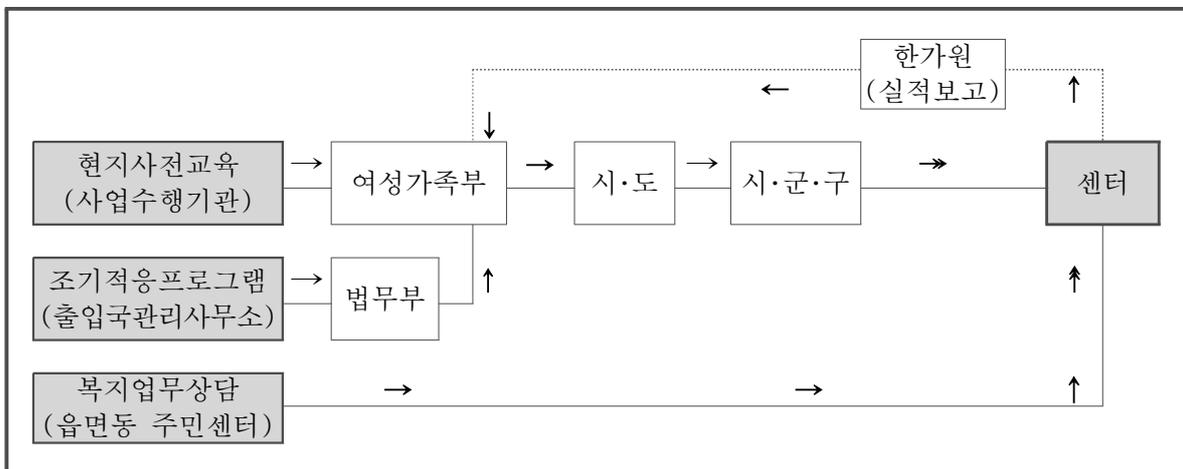
담당부서	법무부 체류관리과	담당자	손흥기 사무관	전화번호	02) 2110-4067
------	--------------	-----	---------	------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과제개요

-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수료자 대상 입국 전·후 가족센터 연계를 통한 한국어교육, 상담, 자조모임 지원 등을 통한 정보 접근성 확대
- 폭력피해 발생시 가족센터 상담, 전문기관 연계 등 지원

<개인정보제공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체계>



□ 그간의 추진실적

-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개인정보 제공(국적, 연락처, 거주예정지) 동의를 통한 가족센터 입국 전 연계

* '23 기준 3,991명 연계 추진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결혼이민예정자 교육 대상자 확대 및 정보연계 강화

○ 추진 내용 및 방법

- 결혼이민예정자 정보연계 동의 및 가족센터 연계(연중)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가족센터 연계 추진준비
2/4분기	-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가족센터 연계 추진(상시)
3/4분기	-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가족센터 연계 추진(상시)
4/4분기	- 정보연계 포함 사업 성과평가 등 추진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정보연계 동의율						
○ 성과목표치 산식 : 교육대상자 대비 가족센터 정보연계 동의율 * '21~'23년 정보제공 동의율 평균	94.5	88.5	91.7	99.3	93.1	결과보고서

기대효과

-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공적 인프라 접근성 확대를 통한 폭력예방 강화
- 결혼이민자 한국정착 후 고충 상담 및 정보교류 확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담당자	한지훈 주무관	전화번호	02) 2100-6379
------	-----------------	-----	---------	------	---------------

여성가족부 권익구조과,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법무부 이민통합과

□ 과제개요

<여성가족부>

- (사업목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을 통한 피해자 인권보호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및 제6조(상담소의 업무)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외국어판 운영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기관별로 '인·권·고충상담관'을 지정하고 전용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관내 체류외국인의 국내 체류지원과 권익보호
 - * 필요시 유관기관 등에 피해구제 지원, 행정서비스를 위한 협조 및 연계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여성가족부>

- 이주여성 상담소(9개소)를 운영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 서비스 등 제공

<고용노동부>

- '18.4.11., 여성 외국인근로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근절방안 마련
 - * 외국인근로자도 우리부 홈페이지의 '익명신고센터'를 활용하도록 외국어 버전 운영
- '18.10.15.,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영어 외 동티모르 등 16개국* 외국어 버전 제공
 - * 영어, 베트남, 네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동티모르,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크, 방글라데시, 중국, 스리랑카, 몽골,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법무부>

- 2008년 이후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인권·고충상담관 지정, 운영

□ 2024년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자녀에게 상담·보호 및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및 자립 지원

○ 추진 내용

- 국비지원 상담소를 통해 상담지원, 의료·통·번역 지원, 고용·체류에 관한 상담, 보호시설(쉼터, 그룹홈 등) 연계 서비스 지원

○ 추진 방법

-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예산 교부(분기별) 및 운영실적 관리(반기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연중)
2/4분기	-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연중)
3/4분기	-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연중) - 이주여성 상담소 현장점검
4/4분기	-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연중)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	1,335	1,335	1,379	44	4
국비	1,335	1,335	1,379	11	4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이주여성 상담소 피해자 지원건수	9,358	25,676	33,608	집계중	30,531	'21~'22년 실적 평균에 3% 상향조정
○ 성과목표치 산식 : 지원건수						

<고용노동부>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운영 홍보 강화
- 폭행 및 성희롱 피해 전담 상담서비스 운영 활성화

○ 추진 내용 및 방법

- 입국 후 취업교육 시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및 익명신고센터 운영 안내 포함
-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시 외국인근로자 대상 안내
-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에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홍보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신규 및 재입국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시 교육
2/4분기	신규 및 재입국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시 교육
3/4분기	신규 및 재입국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시 교육
4/4분기	신규 및 재입국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시 교육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년)	(21년)	(22년)	(23년)		
○ 성과지표명: 외국인근로자 대상 교육(명)	3,854	6,885	71,249	62,634	신규 입국인원	입국인원
○ 성과목표치 산식: 입국인원						

* '23년 실적은 9월말 기준

<법무부>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인권·고충상담관 (재)지정, 운영

○ 추진 내용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별로 관내 체류외국인의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하여 상담 및 체류 지원 실시
-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인권·고충상담관 (재)지정, 운영

○ 추진 방법

-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인권·고충상담관으로 별도 지정
- *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6급 또는 7급 출입국관리공무원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23년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인권·고충상담관 (재)지정
2/4분기	전국19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인권·고충상담 제도 상시 운영
3/4분기	전국19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인권·고충상담 제도 상시 운영
4/4분기	전국19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인권·고충상담 제도 상시 운영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인권·고충상담관 지정	18	18	19	19	지정현황 통계 등	지정현황 통계 등

기대효과

<여성가족부>

○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을 통해 외국인 여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 정착에 기여

<고용노동부>

○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신속한 구제

- 외국인근로자가 성희롱 등 성폭력에 대한 사전 대처방법, 사후 신고절차 등에 대해 인지하여 신속히 구제

<법무부>

○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인권고충상담관 및 상담창구를 별도로 지정·운영함으로써 국내 체류외국인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권익보호 및 안정적 체류 지원 효과 기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구조과	담당자	한송이 사무관	전화번호	02) 2100-6424
			현승환 주무관		02) 2100-6428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이동희 사무관		044) 202-7739
	법무부 이민통합과		홍동우 사무관		02) 2110-4144

□ 과제개요

- (사업목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에 대한 모국어 상담, 일시보호, 의료·법률지원, 직업훈련 등을 통한 폭력피해이주 여성의 인권보호 및 자립 지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 그간의 추진실적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33개소)
 -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에 대한 일시보호, 상담,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의료·법률 및 주거지원 등
- 폭력피해이주여성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조성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1인당 500만원)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보호 및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 종합형 서비스 지원
- 추진 내용
 - (보호시설 운영)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확대를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 (만족도 조사)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내실화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호시설 입소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추진 방법

- 폭력피해 보호시설 운영 예산 교부(분기별) 및 운영실적 관리(반기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연중)
2/4분기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연중)
3/4분기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연중)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현장점검
4/4분기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연중)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5,939	5,930	6,230	291	5
국비	5,939	5,930	6,230	291	5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이주여성 보호시설·상담소 지원 실적	97,778	139,185	158,617	집계중	153,368	'21~'22년 실적 평균에 3% 상향조정
○ 성과목표치 산식 : 지원건수						

□ 기대효과

-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을 통해 외국인 여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 정착에 기여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구조과	담당자	한송이 사무관 현승환 주무관	전화번호	02) 2100-6424 02) 2100-6428
------	----------------	-----	--------------------	------	--------------------------------

□ 과제개요

- 사용자의 성폭행을 이유로 사업장 변경 요청 시, 필요성이 인정되면 즉시 사업장 변경 허용

□ 그간의 추진실적

- '18.5월 긴급 사업장 변경 대상 성폭행 범위 검토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실시 및 법률자문 등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경기 안산해바라기센터 관계자 등
- '19.2.1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도입(사업장 변경 고시 개정)
- '21.4.1 긴급 사업장 변경 대상 및 가해자 범위 확대*
 - * 가해자 범위: 사용자 ⇒ 사용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긴급 사업장 변경신청 시 신속히 검토하여 피해 근로자 적극보호
- 추진 내용 및 방법
 -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를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 즉시 사실관계 확인 후 3일 이내 긴급 사업장 변경 조치
 - * 근무시간 여부 및 사업장 내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인정
 - 사용자가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고용변동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지방관서 직권으로 사업장 변경 절차 진행
 - * 성폭행에 대한 증거나 증인의 진술, 성폭력 상담기관의 상담결과 등을 통해 성폭행 사실 여부를 판단하여 우선 사업장 변경을 진행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사업장변경 신청시 즉시 조치
2/4분기	사업장변경 신청시 즉시 조치
3/4분기	사업장변경 신청시 즉시 조치
4/4분기	사업장변경 신청시 즉시 조치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긴급사업장변경 조치(%)	100(1건) (3일 이내	100(3건) (3일 이내	100(1건) (3일 이내	0건	100 (3일 이내 조치 완료)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우선 긴급 사업장 변경 조치 여부
○ 성과목표치 산식: 3일 이내 조치	조치 완료)	조치 완료)	조치 완료)			

□ 기대효과

○ 성폭행 피해 외국인 근로자 신속한 구제

- 성폭행을 당한 외국인 근로자를 가해자와 신속히 분리 보호하고 신속히 사업장
변경 조치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담당자	이상영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2-7148
------	------------------	-----	---------	------	---------------

2-1-1-① 가정폭력 사건 대응력 강화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 과제개요

-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 마련·보완
- 여성폭력 사건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 수사팀·학대예방 경찰관(APO) 인력 확충 및 직무교육 강화
 - ※ 국정과제 69-2.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 '19.6월 「가정폭력 범죄 단계별 대응모델」 시행 이후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한 정책 지속 추진, (긴급)임시조치 증가 등 경찰대응 지표 개선
 - 긴급임시조치 결정 : 5,529건, 임시조치 신청 : 6,155건 <'23.1~10월>

< ※ 단계별 대응모델 주요 내용 >

① 초동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혐의와 객관적 위험성 토대로 적극적 사건처리·긴급임시조치 △ 피해자 응급조치, 전문기관 연계 등 피해자 보호 철저 △ 긴급임시조치 활성화를 위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기준 개선
② 엄정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밀한 수사로 상습성 규명, 입건 및 구속여부 검토 철저 △ 임시조치, 피해자(임시)보호명령 적극 추진 등 △ 피해자가 처벌 불원할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 송치(보호처분)
③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 재발 방지 및 피해자 상담 등 경찰·지자체 중심 다기관 협업체제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후관리 강화 △ 실효성 있는 현장 법집행력 확보를 위한 法 개정 추진

- 가정폭력 대응 순 단계에서의 적극적 경찰활동을 위해 교육자료 제공
 - 적극적 혐의 판단 및 가해자 격리 등 조치를 위한 내부지침(△ 쌍방폭행 분별지표 △ 조사항목 등) 마련하고, 매뉴얼·정책자료집·Q&A 등 제작·배포
 - * △ 「가정폭력 정책참고자료집」(‘22.1月) △ 「여성청소년 정책 자료집」(‘23.2月)
 - △ 긴급임시조치 Q&A(‘23.8月) △ 「가정폭력 대응 및 수사 매뉴얼」(‘23.10月) 등
- 현장 경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위험성 판단기준 개선·보완
 - ‘20.9月 신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도입으로 현장 경찰관 대상 긴급임시 조치 및 사건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제시
 - ‘23.8月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개정으로 기존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보완 및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판단조사표’로 명칭 변경
 - ※ 긴급임시조치 실시 활성화를 위해 △ 결정문항(이혼요구 또는 외도의심) 추가 △ 서식 명칭 변경
 - ‘23.8月 ‘사실혼 판단 체크리스트’ 개선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보호 범위 확대, 적극적 개입 유도
 - ※ △ ‘3년 이상 동거기간’ 등 사실혼 본질과 무관한 항목 삭제 △ 최근 판례 등 반영
- 원활한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수행을 위해 △ 예산(업무추진비) △ 장비(업무용 휴대폰) △ 시스템(APO업무관리시스템) 개선 등 각종 인프라 구축

□ 2024년도 시행계획

- 「가정폭력 범죄 단계별 대응모델」 보완·재강조
 - 초동조치 - 수사 - 사후관리 각 단계별 대응지침을 기반으로, 「가정폭력처벌법」 및 개정 「범죄수사규칙」 등 최근 지침을 종합하여 현장 교육
- 피해자 보호 전문성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교육 체계화
 - (역량기반 교육체계) 가정폭력 인식 제고 및 역량 배양을 위해 기존 교육체계 정비, 단계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기반 교육과정 설계
 - (전문화 위탁교육) 위탁교육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하여 교육과정 개선, 근무 경력별 맞춤형 커리큘럼 마련

- ▶ <주요 교육내용> △가정폭력·학대 관련 법령 및 사건처리절차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해 △피해자 면담기법 △APO 역할 정립 및 피해자 보호·지원 △직무소진 예방프로그램 등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APO시스템 지속 고도화

- △KICS 시스템 연계에 따라 법원·검찰 협조로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 △지자체 시스템 연계에 따른 업무 자동화 및 양방향 정보공유 확대
- 신속·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APO시스템을 사회적 약자 범죄 종합대응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24년 ISP사업 추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24년 가정폭력 교육과정(교육센터·교육기관 등) 추진
2/4분기	APO 업무관리시스템 ISP사업 계약 및 착수 완료
3/4분기	「가정폭력 범죄 단계별 대응모델」 보완·강조
4/4분기	APO 경력경쟁채용 및 APO 전문 위탁교육 실시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가정폭력 사건대응률	41.8	44.6	50.6	55.7	55.9 (%)	112시스템, KICS 및 수기통계
○ 성과목표치 산식 : (현장대응 점수 + 사후조치 점수) ÷ 가정폭력 실신고건수						

□ 기대효과

- 가정폭력 대응체계 지속 고도화 및 내실있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구축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오윤지 경위	전화번호	02) 3150-0812
------	-------------	-----	--------	------	---------------

□ 과제개요

- 현장조치의 객관성·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세밀한 재범위험성조사표 (조사항목, 후속 조치기준 등) 개발·활용
- 가정폭력 반복신고 사건 적극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마련·시행

□ 그간의 추진실적

- '23.7月 '가정폭력 재발위험 평가척도' 정식 시행 및 재발우려가정 관리체계 개선 등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 내실화
 - 기존 정책연구용역으로 개발된 평가척도*에 대한 현장 적합성·타당성 검증 ('22.11~'23.6月) 결과, 위험성 변별력 등 고려하여 문항 수정·보완
 - * △과거 사례 △관계성 △가·피해자 특성 등 고려하여 재발 위험성 평가하기 위한 판단 도구
 - △시범운영 누적데이터 전수분석(약 6,600건) △현장의견 수렴 △해외모델 검토 등을 거쳐 개선된 '가정폭력 재발위험 평가척도' 정식 시행
- 내실있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APO시스템 지속 고도화
 - '가정폭력 재발위험 평가척도' 기능을 시스템에 탑재하여 재발 위험성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 총 14개 위험요인 항목별 3점척도로 평가하여 고위험군 구별 및 재발우려가정 지정·관리
- 전국 지역별 구축된 민·官·警 다기관 협업체계* 지속 확대 및 협력 강화

< * 지역별 가정폭력 협업체계 유형 >

- ① 지자체 내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마련, 사회복지공무원·경찰(APO)·상담원이 상시 합동근무하는 협업체계
- ② 경찰-전문기관(1366·가정폭력상담소 등) 간 MOU를 통해 재발우려가정 사후 모니터링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복지지원은 지자체에 연계하는 협업체계
- ③ 재발우려가정 사후 모니터링 시 경찰·지자체·전문기관 합동방문

□ 2024년도 시행계획

○ 가정폭력 대응 역량 강화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

-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피해자 보호 확대 △현장조사권 강화 △효과적인 가해자 교정·치료를 위해 가정폭력처벌법·방지법 개정 추진

▶(가정폭력처벌법) △피해자 보호조치 결정구조(警-檢-法) 개선 △긴급입시조치 불이행죄 신설
△가해자 상담위탁 제도 경찰 신청권 추가 등

▶(가정폭력방지법) △현장조사 거부·기피죄 신설 △기관간 정보공유 근거 마련 등

- 가정폭력 신고출동 및 예방활동 등에 있어 현장경찰관 업무처리 관련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발굴하여 수시 정비

○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 및 관리를 위한 '가정폭력 재발위험 평가척도' 작성 재강조

- 체계적인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선정·관리가 가능하도록 개발 및 APO시스템에 탑재된 '가정폭력 재발위험 평가척도' 관련 현장 교육 및 활용 가이드라인 제공하여 작성 재강조

▶ △과거 사례 △관계성 △가·피해자 특성 등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 재발 위험성을 수치화하여 평가하고자 개발된 판단도구로, 작성기준에 해당할 경우 사후콜백 시 평가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APO시스템 지속 고도화

- △시·도경찰청 자체시책을 반영한 시스템 메뉴 구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관련 내부시스템과의 연계 확대 등 공백 없는 보호·지원 업무를 위해 '24년 APO시스템 고도화 ISP사업 추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가정폭력 관련 매뉴얼·지침 보완 및 개선 필요사항 발굴·정비
2/4분기	APO 업무관리시스템 ISP사업 계약 및 착수 완료
3/4분기	'가정폭력 재발위험 평가척도' 관련 현황 파악 및 작성 재강조
4/4분기	관계부처 협업, 가정폭력처벌·방지법 개정안 관련 국회 대응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가정폭력 사건대응률	41.8	44.6	50.6	55.7	55.9 (%)	112시스템, KICS 및 수기통계
○ 성과목표치 산식 : (현장대응 점수 + 사후조치 점수) ÷ 가정폭력 실신고건수						

□ 기대효과

○ 가정폭력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호·지원 체계 지속 고도화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김지수 경위	전화번호	02) 3150-0812
------	-------------	-----	--------	------	---------------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 과제개요

-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톱킹 및 교제폭력 근절을 위해 피의자 엄정처벌·피해자 보호 강화로 국민 불안해소 및 경찰 신뢰도 제고
- 「교제폭력 현장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계획」, 「반복신고 대응 강화 및 신속·집중수사」 내실화·고도화로 교제폭력 엄정 대응

□ 그간의 추진실적

-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대응체계 구축
 - (스토킹 대응 매뉴얼·지침 등 수립) 법 제정(21. 10. 21.) 前 TF를 구성, ‘초동조치-수사-피해자 보호·지원’ 등 쉰 과정을 담은 「스토킹 대응 매뉴얼」 및 현장 경찰관을 위한 포켓용 가이드북·요약본을 마련·배포
 - (警↔檢 스톱킹범죄 대응 협력 강화) 스톱킹범죄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警-檢 스톱킹범죄 대응 협의회 구축하고, 쉰 18개 시도청-지검·지청도 후속 실무협의회 실시(258개署-지검·지청 신속연락체계 구축)
 - (개정 스톱킹처벌법 시행 대비)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톱킹 처벌 등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23. 7. 11.) 대비, 전국 수사관 화상교육 실시하고 법 개정 세부사항이 반영되도록 지침 변경 및 범죄수사규칙 개정
 - (스토킹 정보 연계) 스톱킹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신청부터 결정까지 쉰 과정을 「경찰-검찰-법원」 間 시스템(KICS)을 통해 연계
- 교제폭력 현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엄정 대응) 1회 범죄시에도 범행동기·신고이력·전과·피해정도 등 분석하여 보복범죄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구속영장 적극 신청
 - (피해자 보호) 피해자 보호 제도가 미비한 ‘교제폭력’ 사건은 관계·범죄사실 등 면밀히 확인 후 임시조치·잠정조치 적용 가능성 검토

□ 2024년도 시행계획

- ‘스토킹 행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신규 업무(‘24. 1. 12. 시행) 안착
 - ‘경찰-보호관찰소 간 업무 협업절차’ 등 현장대응 지침 마련
- 스토킹·교제폭력 범죄 정기 현장점검 및 사례공유 회의
 -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 온라인 스토킹 처벌 ▲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현장에서 잘 운용되도록 지속 현장점검
 - 쉰 시도경찰청·경찰서 대상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우수·미흡사례를 공유하는 화상회의를 정기 개최
- 현장 경찰관의 실효적·적극적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입법 논의 참여
 -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 별도 법률 제정안 국회 계류 중, 법리 검토 참여 등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연중	스토킹 현장대응 지침 마련 및 점검 교제폭력 입법 논의 참여 정기 현장점검 및 사례공유 화상회의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1년)	(2022년)	(2023년)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신청	1,059건	7,441건	8,733건 (10월까지)	10,000건	수기통계

※ 「스토킹처벌법」 '21. 10. 21. 시행

□ 기대효과

-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및 두터운 피해자 보호로 국민 불안감 해소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담당자	김재영 경감	전화번호	02) 3150-2878
------	-------------------	-----	--------	------	---------------

대검찰청 형사4과,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 과제개요

<대검찰청>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9. 12. 25.) 및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 개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검찰청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시, 이러한 고소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게 되어 피해 진술을 어렵게 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문제를 발생 시킴
- 이에 피해자가 2차 피해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

<경찰청>

- 2차 피해 예방 교육 활성화를 통한 현장 경찰관 성인지 감수성 제고
- 형사절차 상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피해자 권리 보장

□ 그간의 추진실적

<대검찰청>

- '20. 2., 9. 여성·아동 등 전담검사 지정 및 운영 현황 파악
 -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전담검사 지정 및 지정에 따른 사건처리지침 송부
- '20. 6., 10. 여성·아동분야 저년차 검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성폭력사건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교육 등 역량 강화 도모
- '20. 11. 성폭력·아동학대 관련 사건 고소인(고발인) 통지시스템 개선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 관련시스템 개선

- '20. 연중. 가명조서 작성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보장 및 지원 강화
 - 가명조서 작성 피해자 통지 및 지원절차를 개선하는 KICS 수사결정시스템 등 구축 중
- '20. 11.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 안내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시행(제17282호, 2020. 11. 20. 시행)으로 인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 실시
- '20. 11. 2020년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 12. 25.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21. 2., 7. 여성·아동 등 전담검사 지정 및 운영 현황 파악
 -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전담검사 지정 및 지정에 따른 사건처리지침 송부
- '21. 3., 10. 여성·아동분야 저년차 검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성폭력사건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교육 등 역량 강화 도모
- '21. 7~.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 구성·운영
 -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아동 범죄 대응 TF' 구성·운영
- '21. 8. 디지털성범죄 관련 우수 피해자보호 사례 전파 및 피해자보호조치 적극 활용 요청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우수 사례 전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검찰 핫라인 구축 및 적극 활용 지시
- '21. 10.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포함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대응 TF 구성·운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대응 TF'
구성·운영

○ '21. 1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개정 보고

- 성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 등 서식 개정, 성폭력 피해자 조사 중 유의 사항 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 제도 추가

○ '21. 12. 2021년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 12. 25.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21. 12. 「헌법재판소의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 일부 위헌결정」에 따른 조치사항 시달

- 헌법재판소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 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부분에 대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 이에 따라 일선 청에 위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달

○ '21. 12.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 및 책자 배포

-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일선 청 송부
※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용 포함

○ '22. 1.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관련 사경 협력 강화, 신속·엄정 대응 피해자 보호 철저 지시

-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의 보복·회유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건 송치 전 범죄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소통·협력 하여 신속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신변 등 사건 수사에 있어 관련

매뉴얼 및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며, 관련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

○ '22. 1.~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TF」 구성 및 운영

- 장애인,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전담검사·수사관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례집 제작을 위한 TF 구성

○ '22. 2., 7. 여성·아동 등 전담검사 지정 및 운영 현황 파악

-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전담검사 지정 및 지정에 따른 사건처리지침 송부

○ '22. 2. 스토킹·성폭력 등 강력범죄 관련 영장 검토 시 피해자 보호 철저 지시

- 사경신청 구속영장 등 사법통제를 함에 있어, 사건송치 전이라도 경찰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고, 피해자 진술청취 등을 통해 재범 및 위해우려 등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 특히 피해자가 추가 피해 우려를 호소할 경우, 영장 검토 시 가해자 접근 차단(신병처리, 안전가옥 제공, 대상자 유치 등)을 비롯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 '22. 4. 피해자지원 매뉴얼 책자 배포 및 원스톱 피해자 보호·지원 활성화 지시

- 검찰실무에 적합한 피해자지원 매뉴얼 제정·배포
-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성폭력·학대·보복 범죄 등 강력사건에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일상으로 회복 시까지 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 신변보호, 심리상담·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 지원

○ '22. 4. 성착취물 소지범 처분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협조 요청

-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수요 범죄인 성착취물 소지·시청에 대한 엄단 및 성착취물 등 불법 동영상 삭제·유포 차단,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상담 등 피해자지원 적극 실시 지시

- '22. 8. 「검찰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핫라인 협조 사항」 배포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검찰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신속한 피해자 연계 및 피해촬영물 제공 방법의 보안 강화를 위해 「검찰청-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핫라인 협조 요청 사항」을 제작, 일선 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 업무에 적극 참고
- '22. 9. 검찰총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방문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중 불법영상물 삭제 업무 등 피해자들에게 실효적으로 필요한 보호·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방문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피해자 보호·지원 연계 등 다각적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
- '22. 11. 2022년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 12. 25.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22. 12. 디지털성범죄 전담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검사 지정
 - 전국 18개 지검,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23명 지정
- '22. 12.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발간]디지털성범죄 수사 관련 충실한 사법 통제 및 피해자 보호 방안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발간
- '22. 12. 검찰의 피해자지원제도 안내 자료 배포 및 적극 활용 요청
 -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아동학대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리플릿과 홍보동영상 제작·배포 및 적극 활용 요청
- '22. 12. 「범죄피해자지원 Q&A 및 우수사례」 제작·배포 알림
- '23. 1. 대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간담회 개최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보호·지원 현황 공유, 국내외 사이트에 업로드된 불법

영상물 삭제 현황 및 애로사항 확인, 불법영상물 삭제·차단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등 논의

○ '23. 5.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 일시 : 2023. 5. 12.(금) 14:00 ~ 17:50
- 장소 : 대검찰청 NDFC 6층 대강의실
- 참석 대상 : 전국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등
- 교육내용 : 디지털성범죄 관련 외부 전문가 강연, 주요 디지털성범죄 우수 수사사례 및 수사기법 등 전파 등

○ '23. 11. 2023년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 12. 25.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21. 1.~'24. 3. 여성아동 전용 조사실 추가 설치 및 시설 개선 리모델링 공사 완료 ('24. 3.말 기준, 43개 검찰청 공사 완료)

- 여성·아동 피해자 전용 조사실 추가 설치 및 리모델링을 통해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경찰청>

○ 경찰청 「성폭력 상담 챗봇」 및 행안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챗봇」 운영으로 성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강화

※ '마약류 이용 성범죄 예방' 콘텐츠 신규 탑재('23. 10월) 및 법률 개정 내용 반영

○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성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에 '성폭력처벌법' 개정 내용 반영하고, KICS 등재 완료('23. 10. 24.)

-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화(19세 미만, 신체적·정신적 장애) △신뢰관계인 동석·진술조력인 지원 범위 확대 등 피해자 보호 확대 내용 등 안내·교육

-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2차 피해 예방 안내서' 제작·현장 배부('23. 2월), 경찰관서 2차 피해 예방 교육에 적극 활용
 - ※ △2차 피해 정의 △주요유형 △2차 피해 사례 △성폭력 사건 유의사항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성폭력 피해자 표준조사모델 등

□ 2024년도 시행계획

<대검찰청>

-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등 제도 활용(연중)
 -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법정 동행 등을 통한 2차 피해 방지, 피해자에 대한 경제·의료·법률 지원, 예술심리치료 등 적극 실시
- 피해자 조사 전용조사실 추가 설치 및 리모델링 추진(연중)
 - 일선 검찰청의 시설 노후화 정도,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전용 조사실 추가 설치 및 리모델링 진행
 -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연중)
 - 신변보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변보호 대상범죄 확대 방안 지속 추진
 -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재판진행상황, 재판결과 및 출소사실 등을 통지하는 정보제공 제도 지속 및 확대 실시
 - 성폭력 등 강력사건에 있어서 가명조서 및 신원관리카드 작성 실태 지속 점검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명)	성폭력 : 22,849	성폭력: 25,648	성폭력: 26,340	성폭력: 23,987	성폭력: 24,945	전국청 수기취합
○ 성과목표치 산식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인원						

<경찰청>

- 신학기·하계기간·장애인 시설점검 등 시기·대상별 성폭력 범죄 예방활동 전개 시
유관기관 협업 강화로 선제적 피해발견 및 피해자 보호 추진
- 「성폭력 상담 챗봇」 및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안내서」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
성폭력 피해자 권리 보호에 관한 정보 내실있게 제공
-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위한 신규 콘텐츠 제작·개설(사이버 직장교육), 성폭력
사건 현장 대응 및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 유의사항 등 강조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23년)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진술분석전문가, 속기사 참여 실적(%) ※ 발생건수 대비	취합 중(33.4%) ※ 10월 10,748명	32.1%	'22년* 31.6% 대비 0.5% 증가 (*발생 40,515 / 참여 12,795)

※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23.10.12)으로 19세 미만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화에 따라 성과목표
변경

□ 기대효과

-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등 형사절차 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담당부서	대검찰청 형사4과	담당자	고성민 수사관	전화번호	02) 3480-2527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송진영 경감		02) 3150-0832

□ 과제개요

○ 사업 목적

- 피해사실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진술조력 및 법률조력을 제공함으로써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참여권 및 진술권을 보장하고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여 2차 피해 방지 도모

○ 추진 체계

- 피해자 국선변호사 : 법무부 (예산편성·배정, 업무지침 시달, 국선변호사 교육)
 - 각급 검찰청 (비전담변호사 수당 예산 집행, 국선변호사 지정·보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선전담변호사 운영, 예산 집행, 국선변호사 교육)
- 진술조력인 : 법무부 (진술조력인 양성, 자격·명부 관리, 진술조력인 교육)
 - 경찰, 검찰, 법원 각 기관 (진술조력인 선정 및 활용)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상근 진술조력인 운영, 예산 집행)

○ 주요 내용

-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위하여 국선전담변호사를 채용 및 배치하고, 전문화 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해 국선변호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정기적인 국선변호사 평가 및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의 책임성·신뢰성 확보
- 진술조력인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피해자가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피83해자 지원기관(전국 권역별 해바라기센터 10개소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4개소)에 상근 진술조력인을 배치, 운영하여 피해자 지원을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활성화

- ('20.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법률지원 조치
- ('20. 4.) 국선전담변호사 2명 확대, 배치(전국 21명 → 23명)
- ('20. 11.) 지원대상 확대(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
- ('21. 3.)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하여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화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시행
- ('21. 6.) 지원대상 확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장애인 지원)
 - * 「장애인복지법」개정, 시행
- ('21. 7. ~ 11.)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제도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 ('21. 10.)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 개정, 시행
- ('21. 8. ~ 11.)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교육 강화, 실시
- ('22. 2.)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 보완 개정, 시행
- ('22. 4. ~ 9.)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총 12명 증원) 확대, 배치
- ('22. 5.)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개정, 시행
- ('22. 5. ~ 9.)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매뉴얼 개편
- ('22. 8. ~ 10.)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교육 실시
 - * 기본·심화과정 구분, '디지털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심리 이해' 등 전문강의 신설
- ('23. 1.) 지원대상 확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지원)
 -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
- ('23. 4. ~ 12.)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총 8명 증원) 확대, 배치
 - * 7명 배치 완료, 1명 채용 진행 중
- ('23. 10.)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등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화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시행

- ('23. 11.)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10주년 학술대회 개최

○ 진술조력인 지원 활성화

- ('20. 3) 상근 진술조력인 전국 배치 확대 (경기해바라기센터)
- ('20.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 안내
- ('20. 6. ~ 11.) 진술조력인 신규양성 선발 및 교육 실시(14명)
- ('20. 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행에 따라 지원대상 확대
 - * 아동학대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참고인, 증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도 지원
- ('21. 3.) 상근 진술조력인 지역별 추가 배치(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 ('21. 6. ~ 11.) 진술조력인 신규양성 선발 및 교육 실시(15명)
- ('22. 1.) 지원대상 확대(장애인 진술조력 지원대상 확대)
 - * 「장애인복지법」개정, 시행 (기존 성폭력·아동학대→ 모든 장애인 대상 범죄)
- ('22. 2.) 수도권 상근 진술조력인 1인 추가 배치(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 ('22. 5.) 수도권 상근 진술조력인 1인 추가 배치(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 ('22. 6. ~ 11.) 진술조력인 신규양성 선발 및 교육 실시(14명)
- ('22. 9.) 수도권 상근 진술조력인 1인 추가 배치 (서울경찰청 희망센터)
- ('22. 11.)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실시 (1, 2차)
 - * 장애인 범죄 지원대상 확대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이해' 등 신설
- ('22. 11. ~ 12.) 진술조력인 사후 평가 및 분석 방안 관련 연구용역 실시
- ('23. 1.) 지원대상 확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진술조력인 지원)
 -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
- (23. 2.) 상근 진술조력인 1인 추가 배치(대구해바라기센터)
- ('23. 6. ~ 11.) 진술조력인 신규양성 선발 및 교육 실시(15명)

- ('23. 10.) 지원대상 확대(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등 진술조력인 지원)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시행
- ('23. 11.)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10주년 학술대회 개최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및 상근진술조력인 추가 배치
-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확대 검토
-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전문성 강화 및 제도 정비

○ 추진 내용

- 국선변호 및 진술조력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국선전담변호사 및 상근진술조력인 추가 배치
-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을 실시하고,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검토
- 지원 대상 확대 등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 과정 편성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 내에서 피해자 조력 전문가로서 전문성 향상 도모

○ 추진 방법

- 사건 수, 국선전담변호사 및 상근진술조력인 지역별 배치 현황 등 고려하여 추가 배치
-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특정강력범죄법」 개정 추진
-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 및 보수교육 교육과정 정비, 업무매뉴얼 개편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국선전담변호사 채용 공고 및 서류·면접절차 진행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실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입법예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및 실태조사 실시 상근 진술조력인 채용 및 배치 배치지역 현장점검
2/4분기	신규 채용 국선전담변호사 배치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진술조력인 신규모집 공고 및 교육대상자 선발 진술조력인 권역별 사례관리회의
3/4분기	신규 국선전담변호사 배치지역 현장점검 실시 진술조력인 신규양성 교육 실시(기본, 기본실무, 심층실무)
4/4분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실시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진술조력인 권역별 사례관리회의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자 자격 부여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9,707	집행중	11,475	1,768	18.2
국비	9,707	집행중	11,475	1,768	18.2
·기금(범죄피해자보호기금)	9,707	집행중	11,475	1,768	18.2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360	집행중	1,460	100	7.4
국비	1,360	집행중	1,460	100	7.4
·기금(범죄피해자보호기금)	1,360	집행중	1,460	100	7.4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 건)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월-		
○ 성과지표명: 성폭력 피해자 법률(진술)조력 지원수(건)						최근 3개년 평균 지원건수 26,523건 대비 연평균 증가율 7.5%에서 상향 설정하여 증가율 9.5% 반영, 산출
○ 성과목표치 산식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건수 및 진술조력인 지원건수 합산	24,303	27,248	28,018	24,092	29,043	

□ 기대효과

- 형사사법절차 내 성폭력범죄 피해자 권익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 국선전담변호사, 상근진술조력인 확대 및 배치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조력 및 진술조력 제공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 실시

담당부서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담당자	김도연 사무관 강성우 사무관	전화번호	02) 2110-3648 02) 2110-4456
------	-------------	-----	--------------------	------	--------------------------------

2-2-1-③

2차 피해 방지 및 불법촬영 삭제·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과제개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유관기관(경찰청-여가부-방통위-방심위) 간 업무협약을 체결('19.11月)하고, 수사 및 삭제·차단 등 공동대응

□ 그간의 추진실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차단 등 지원)

구분	주요내용
경찰청 → 여가부(디성센터)	▶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피해영상물을 등록, 여가부(디성센터)에 삭제·차단 요청, 법률·심리상담 연계 등 피해자 종합지원
경찰청 → 방심위	▶ 방심위에 피해영상물 해시값 등을 제공하여 삭제·차단 요청하고, 방심위가 사업자에게 삭제·접속 차단 될 수 있도록 요구

-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다각화)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과 지자체(부산시)의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시스템' 연계 완료('23.10月)

□ 2024년도 시행계획

-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등 삭제·차단 지원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연중	·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한 피해영상물 등 삭제·차단 지원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	300	300	300		
국비	300	300	300	0	0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1년)	(2022년)	(2023년)		
방심위에 삭제·차단 심의요청한 피해게시물+ 피해영상물 건수	13,544건	31,669건	38,144건 (10월까지)	30,563건	'21~'23년 삭제·차단 심의요청 평균건수*110%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록 건수	7,500	41,761건	54,860건 (10월까지)	38,178건	시스템 통계 ('21~'23년 평균건수*110%)

□ 기대효과

-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 방지를 통해 피해지원 등 효율성 제고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신속한 삭제·차단 등 지원

담당부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담당자	김문영 경위	전화번호	02) 3150-0240
------	-----------------	-----	--------	------	---------------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권익정책과,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과제개요

<여성가족부>

-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력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고용노동부>

-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력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그간의 추진실적

<여성가족부>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개정·시행
 - 개정 「성폭력방지법」(‘21.1.12. 시행)에 따라 금지되는 피해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유형을 구체화하여 적시
- 여성폭력 2차피해방지지침 표준안 마련 및 배포(‘21.1.)

<고용노동부>

-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력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임기 만료 폐기)
 - * 김삼화의원 발의(‘18.6.29.)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계류중)
 - * 소병훈의원 발의(‘23.1.16.) → 법무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조력자를 포함할 경우, 조력자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우려를 나타내어 신중검토 필요(‘23.9.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2024년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24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시행
- 관련 발의법안에 대한 입법 지원
 - * 성희롱 사건 피해자·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신설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22.12월, 권인숙 의원 발의), 성폭력 피해자 외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 의무 관련 「성폭력방지법」 개정안('23.1월, 소병훈 의원 발의) 국회 계류 중
- 언론 대상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및 준수 권고 근거 마련

○ 추진 내용

-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의무를 규정한 '24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시행
- 언론 대상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여성폭력방지법」 개정 추진

○ 추진 방법

- 기 발의된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 관련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관련 법안 발의 시 부처의견 제시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 입법 지원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24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시행 - 관련 법률안 입법 지원
2/4분기~4/4분기	- '24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시행 - 관련 법률안 입법 지원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수립·시행	수립·시행	수립·시행	수립·시행	수립·시행	수립·시행	예방지침 표준안 수립·시행 여부

<고용노동부>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에 피해자신고자 이외에 조력자도 포함 입법 지원

○ 추진 내용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에 피해자신고자 이외에 조력자도 포함

○ 추진 방법

-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입법 추진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조력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 관련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 지원	-	-	-	-	법 개정 지원	법 개정 지원

□ 기대효과

<여성가족부>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조사 및 처리가 공정하면서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담당자	최형운 사무관	전화번호	02) 2100-6392
			김다영 주무관		02) 2100-6429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양현순 서기관		02) 2100-6306
		유동길 주무관	02) 2100-6307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송미나 서기관		044) 202-7446
			임동훈 주무관		044) 202-7472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 과제개요

-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 마련·보완
- 여성폭력 사건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 수사팀·학대예방 경찰관(APO) 인력 확충 및 직무교육 강화
 - ※ 국정과제 69-2.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 가정폭력 가·피해자 사후관리를 위해 경찰-지자체-전문기관 각 전문성에 기반하여 전국 시·도별 다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지속 추진

<전국 시·도별 가정폭력 다기관 협업체계 유형>

- ① 경찰(APO)·지자체(사회복지공무원)·전문기관(상담원) 통합 사례관리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지자체 내 상시 합동근무 센터 마련 → 서울(25개 구 자치구), 경기남부(5개 구)
- ② 경찰-전문기관(1366·가정폭력상담소 등) 간 MOU를 통해 재발우려가정 사후 모니터링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복지지원은 지자체에 연계하는 협업체계
- ③ 재발우려가정 사후 모니터링 시 경찰·지자체·전문기관 합동방문

- 가정폭력 대응 3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지원 정보제공 체계 구축 완료

- ▶ (신고출동) 모든 가정폭력 신고 출동 시 '피해자보호명령'·'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 보호·지원 제도를 담은 「권리고지서」를 피해자에게 배부(문자 전송)
- ▶ (수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조사 전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내서'를 KICS상 자동 연계·출력하여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배부·안내 중
- ▶ (사건관리) APO가 전일 접수된 모든 가정폭력 신고사건에 대해 콜백을 실시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재차 안내

- 범죄피해자 권리 지원 안내서(공통·유형별)* 양식을 통일, 다국어 버전을 포함하여 표준양식을 토대로 용어 현행화 및 내용 수정하여 제작 및 배포

- * △(공통)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상 모든 피해자에게 KICS 안내서 교부 원칙
- △(유형별)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추가 정보 제공

□ 2024년도 시행계획

- 「가정폭력 범죄 단계별 대응모델」 보완·재강조
 - 초동조치 - 수사 - 사후관리 각 단계별 대응지침을 기반으로, 「가정폭력처벌법」 및 개정 「범죄수사규칙」 등 최근 지침을 종합하여 현장 교육
- 가정폭력 쏠 단계에서의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 교육
 - 상·하반기 현장방문 실시로 현장 애로사항 청취,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보완사항 적극 발굴하여 수시 정비
 - 내실있는 보호·지원을 위해 분기별 우수사례 선정하여 전국 공유·확산
- 내실있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지자체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 확대
 - 전국 시·도별 기 구축된 다기관 협업체계 지속 확대 추진
 - 지역 지자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치안 전문가 등과 협업, 통합솔루션 등 사례 회의를 통한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연계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APO시스템 지속 고도화
 - 시스템 기반으로 경찰과 지자체 간 피해자 보호·지원정보 공유 확대, 선제적 대상자 발굴로 치안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적극 지원 확대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가정폭력 관련 매뉴얼·지침 보완 및 개선 필요사항 발굴·정비
2/4분기	APO 업무관리시스템 ISP사업 계약 및 착수 완료
3/4분기	「가정폭력 범죄 단계별 대응모델」 보완·강조
4/4분기	상·하반기 현장방문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우수사례 발굴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가정폭력 사건대응률	41.8	44.6	50.6	55.7	55.9 (%)	112시스템, KICS 및 수기통계
○ 성과목표치 산식 : (현장대응 점수 + 사후조치 점수) ÷ 가정폭력 실신고건수						

□ 기대효과

- 가정폭력 대응체계 지속 고도화 및 내실있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구축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김지수 경위	전화번호	02) 3150-0812
------	-------------	-----	--------	------	---------------

□ 과제개요

- 성매매 단속·수사 과정에서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식별·보호하도록 업무 담당 경찰관 대상 교육 등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성매매 피해자 표준식별모델」 개발 및 전국 경찰관서 배부
- “풍속업무 교육과정” 내 성매매 피해자 관련 교과목 신설
- 사이버교육 콘텐츠 “성매매 피해자 식별하기” 신규 제작, 배포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성매매 단속·수사 담당자 대상 성매매 피해 식별에 대한 인식 제고
- 추진 내용
 - “풍속업무 교육과정” 내 성매매 피해자 관련 교과목 지속 운영
 - 사이버교육 콘텐츠 “성매매 피해자 식별하기” 수강 독려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성매매 피해자 식별 교육 이수	-	-	9.1%	28.8%	30.2% (전년 대비 5% 증가)	교육 이수율 점검
○ 성과목표치 산식 : 성매매 피해자 식별 관련 교육 이수인원 / 풍속기능 경찰관 수						

□ 기대효과

- 성매매 단속·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성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원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전중현 경감	전화번호	02) 3150-0827
------	----------------	-----	--------	------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법무부 체류관리과

□ 과제개요

<여성가족부>

-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숙식 제공 및 구조, 출국, 국내 체류 등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담 및 통역 지원

<법무부>

- (사업목적)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이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체류자격 부여 및 체류기간 연장허용

□ 그간의 추진실적

<여성가족부>

- 외국인 피해자에게 법률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귀국까지 안전하게 보호
 - 외국인 지원시설 및 기타 지원시설 등에서 피해여성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으로 피해자 구조, 법원 동행 등 법률 지원

〈외국인지원시설 법률지원 현황〉

(단위 : 명/건, '23.6.30.기준)

구분	인 원 (명)	합계 (건)	현장 긴급 구조	수사 의뢰	수사지원			수사 동행	소송 지원	소년보 호재판	법률 지원 상담	기 타
					소계	기소	피소					
2023	19	67	4	·	·	·	4	·	3	2	·	15
2022	13	88	2	2	27	6	21	9	6	-	14	28
2021	33	116	1	-	18	18	-	9	29	-	1	36
2020	33	211	5	19	50	50	-	16	29	-	5	87

* 기타 : 출입국 체류지원(출입국 비자 및 등록증 관련 업무), 신용회복신청, 수사기록 열람 증명 등

<법무부>

- ('04. 5. 7.) 성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에 대한 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기타 (G-1) 체류자격 부여(불체에 따른 통고처분 면제)
- ('07. 5. 7.) 성매매 피해 외국여성에 대하여 특정활동(E-7)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함
- ('13. 4. 19.) 기타(G-1) 체류자격 대상을 종합하여 별도 지침을 마련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명문화함*
 - * 체류외국인 중 성매매 강요, 상습폭행·학대, 심각한 범죄 피해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해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밟고 있는 자로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협의회”에 의해 구제대상자로 결정된 자
- ('14. 12. 30.)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3(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칙) 신설*
 - * 제25조의3(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특칙)
 - ① 법무부장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18. 1. 17.)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보다 신속하게 기타(G-1)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의 결정 절차 삭제*

* 체류외국인 중 성폭력범죄*, 성매매 강요, 상습폭행·학대, 심각한 범죄 피해 등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19. 4. 15.) 폭력피해 이주여성은 단순노무 업종까지 취업이 가능하도록 기타 (G-1) 지침 개정

○ (22. 12. 13.)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3을 삭제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칙을 제25조의2로 개정*

* 제25조의2(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판 등의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2024년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외국인 피해여성에게 무료법률지원 등 제공하여 출국 및 국내체류 등 관련 문제 상담 및 지원

○ 추진 내용

- 통역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상담원(비상근 통역사) 배치(연중)

- 성매매업소로부터 구조, 출국 및 국내체류 등 관련 문제 상담 및 지원(연중)

○ 예산 현황 : 기포함

※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지원체계 구축(3-3-1-④)과제에 기포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양성평등기금)	18,156	18,114	18,510	354	1.9

○ 성과지표 : 기포함

※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지원체계 구축(3-3-1-④)과제에 기포함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매매피해자 지원실적(건)	148,427	154,888	145,380	145,521	146,000	• 성매매피해자의 상담, 의료·법률, 직업·진학교육 지원건수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이용자 만족도(점)	90.8	92.1	92.4	93.4		지원시설·상담소 등의 이용자 만족도 점수
○ 성매매 피해자 취업 및 진학 실적 (수)					690	성매매 피해자 중 취업 및 진학한 인원수

* 보조사업 연장평가(성과지표 개선 필요)에 따라 지표 변경(만족도→취업·진학실적지표)

<법무부>

○ 추진 내용

- 현행 법령과 지침 유지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 해당사항 없음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여성가족부>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등에게 무료 법률지원, 귀국 지원 등 지속 지원

<법무부>

-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해 관련치료나 소송 등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체류를 보장함으로써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국가이미지 제고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담당자	박효련 사무관	전화번호	02) 2100-6448
	법무부 체류관리과		유수열 사무관		02) 2110-4100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 과제개요

<여성가족부>

- 다누리콜센터-경찰 학대예방경찰관(APO) 간 핫라인 운영으로 폭력피해 이주 여성의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다누리콜센터 상담원의 폭력피해 지원 함양 교육 운영으로 이주여성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청>

- 이주 여성 성·가정폭력 등 피해자는 불법체류 신분·국적 취득 문제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한국 여성 피해자보다 더 큰 범죄피해에 노출
- 수사과정상 언어·문화 등 차이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주여성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여성 경찰관 전담 지정 △피해자 친화 조사환경 구축 등 다양한 방안 적극 추진

□ 그간의 추진실적

<여성가족부>

- (2020년) 다누리콜센터-전국 학대예방경찰관(APO) 연락망 공유
- (2020년~) 다누리콜센터-학대예방경찰관(APO) 핫라인 운영
 - * 이주여성 폭력피해 발생 시 신속한 조사 착수, 통역 지원, 피해자 모니터링 등 상호 연계 운영
- (2020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경찰청>

- (여성경찰관 확대 배치) 성·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 등 여성청소년범죄 수사 부서 내 여성경찰관을 확대하여 피해자 중심 수사활동 강화
 - ※ 여성청소년범죄수사 부서 내 여성수사관 비율: ('21년 27.8% → '23년 29.5% / 1.7%p ↑),
- (조사환경 개선) △가·피해자 동선 분리 △여성 경찰관 호출 시스템 설치 △사무·조사 공간 분리 △통합지원공간 마련 등 피해자 중심 환경 구축
 - ※ 2018 ~ 2023년 총 178개 경찰관서에서 '인권친화형 조사환경' 개선 사업 실시

□ 2024년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

○ 추진 내용 및 방법

- 다누리콜센터-학대예방경찰관(APO) 핫라인 운영
- 이주여성 폭력피해자 대응력 강화를 위한 상담원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다누리콜센터-학대예방경찰관(APO) 핫라인 운영(연중) -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원 교육계획 수립
2/4분기	- 다누리콜센터-학대예방경찰관(APO) 핫라인 운영(연중) -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 실시
3/4분기	- 다누리콜센터-학대예방경찰관(APO) 핫라인 운영(연중) -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 실시
4/4분기	- 다누리콜센터-학대예방경찰관(APO) 핫라인 운영(연중)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콜센터 종사자 교육률						
○ 성과목표치 산식 : 콜센터 근무인원 대비 종사자 교육 참여율 산출	100%	99%	98%	97%	90%	수기통계

※ 종사자들의 24시간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24년은 90%로 확정

<경찰청>

- (여성경찰관 전담조사체제 강화) 여성경찰관을 지속 확대해 성·가정폭력 등 소관 범죄수사 전담수사관으로 운용, 피해자 심리적 안정 도모

※ 폭행·명예훼손 등 여청수사 소관 외 범죄수사는 부 수사관으로 적극 조사 참여,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수사매뉴얼 개선)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수사 과정에서 2차피해 방지 유의 사항이 상세히 담기도록 「가정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연중	가정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 여성경찰관 확대 추진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1년)	(2022년)	(2023년)		
여청수사 기능 내 여경비율 (여성경찰관 인원/ 여청수사 인원)x100	27.8%	29.4%	29.5%	30.0%	수기 통계

□ 기대효과

<여성가족부>

- 이주여성 폭력피해 발생 시 다누리콜센터-경찰 간 연계 체계 운영으로 피해자 지원 강화
- 폭력피해 지원, 수사절차 등 실무교육으로 상담원 지원 역량 강화

<경찰청>

- 성폭력·스토킹 등 이주 여성 대상 범죄 엄정 대응 및 성인지 등 인권 감수성 높은 수사활동을 통한 2차 피해 방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담당자	김수정 사무관	전화번호	02) 2100-6400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김재영 경감		02) 3150-2878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교정기획과, 대검찰청 형사4과,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여성고용정책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해양경찰청 감찰팀

□ 과제개요

<법무부>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12.25. 시행)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의무화

* 수사기관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보호관찰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국립법무병원)

<대검찰청>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12.25. 시행)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 이에 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방지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폭력 2차 피해예방 교육 시행 관련 방안 마련

<국방부>

○ 사업목적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19. 12. 25.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 의무화

○ 주요내용

-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2차 피해 방지 교육
 - * 관련 근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제2항(2차 피해 방지)
- 2차 피해 방지 교육 교재 / 자료 개발

<고용노동부>

-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방지 교육 의무 실시
- 수사기관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재, 자료 지원

<국토교통부>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2차 피해 방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실시 의무화
 - 여성폭력 사건 담당 철도수사관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사건처리 유의사항 및 수사단계별 피해자 중심 대응 교육 실시

<경찰청>

-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사건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 인식과 업무 프로세스 정착

<해양경찰청>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 과제에 해양경찰청 포함

<여성폭력 2차 피해 정의>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것을 말함

- 수사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여성폭력 2차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보호를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교육 신설

□ 그간의 추진실적

<법무부>

○ 교육대상

- 교도소, 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남자전용 교도소 제외)의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사람
- 그 기관에 대한 순회점검 감독권을 가지는 각 지방교정청에서 근무하는 4급에서 9급의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사람
- * 2021년까지는 여성폭력 사건담당자(100명)를 지정하여 교육 실시했으나, 2022년 부터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사람 전원 교육 이수 완료

○ 교육개요

- 교 육 명 : 공공기관 여성폭력 2차피해 예방 교육(업무담당·일반·심화)
- 교육기간 : 연중
- 교육방법 :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온라인 교육)
- 실시인원 : 교육대상자 전원 교육 수료 완료

<대검찰청>

○ '18. 11. 전국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전담 검사, 수사관 워크숍

- 성폭력범죄 2차 피해 방지 방안, 불법촬영 및 성폭력 사건 실태분석 및 논의, 카메라촬영·유포 사건처리기준 전파 등 워크숍 실시

○ '19. 3., '19. 10. 여성·아동분야 타겟형 교육 실시

- 2차 피해 방지 교육, 성폭력 사건처리기준 철저 준수 및 성폭력·아동학대 수사시 유의사항 등 전국 여성·아동 전담검사 대상으로 타겟형 교육 실시

○ '20. 6., 10. 여성·아동분야 저년차 검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성폭력사건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교육 등 역량 강화 도모

- '20. 11. 성폭력·아동학대 관련 사건 고소인(고발인) 통지시스템 개선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 관련시스템 개선
- '20. 11. 2020년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 12. 25.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21. 3., 10. 여성·아동분야 저년차 검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성폭력사건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교육 등 역량 강화 도모
- '21. 11. 2021년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 12. 25.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21. 11. 여성가족부 주최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 온라인 강의 이수
 -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 온라인 강의 이수(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 68명 교육 이수)
- '22. 6., 9. 여성·아동분야 저년차 검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성폭력사건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교육 등 역량 강화 도모
- '22. 11. 여성가족부 주최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 온라인 강의 이수
 -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 온라인 강의 이수(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 58명 교육 이수)
- '22. 11. 2022년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 12. 25.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23. 3. 여성·아동분야 저년차 검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성폭력사건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교육 등 역량 강화 도모
- '23. 5.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 일시 : 2023. 5. 12.(금) 14:00 ~ 17:50
 - 장소 : 대검찰청 NDFC 6층 대강의실
 - 참석 대상 : 전국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등
 - 교육내용 : 디지털성범죄 관련 외부 전문가 강연, 주요 디지털성범죄 우수 수사사례 및 수사기법 등 전과 등
- '23. 11. 2023년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 12. 25.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국방부>

- 부대관리훈령 개정('23. 12. 22.) : '2차 피해'정의 개선
 - * '2차 피해'를 성별과 무관하게 적용됨을 정의
- 사건처리관계관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강화 교육 추진
 - * 대외위탁 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총 6개 과정
(14회 교육, 계획 420명 / 수료 509명, 수료율 121%)
⇒ 그중 수사관 202명, 군 법무관 56명 수료

<고용노동부>

-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20.7.)
 - * 근로감독관 성인지 감수성 제고, 조사과정에서 주의할 점, 2차 피해 예방 등 포함
- 근로감독관 대상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2차피해 방지 교육과정 운영('20~)
 - 근로감독관 대상 직무교육 과정에 교과목을 편성하여 교육 실시
 - 전국 근로감독관 대상 권역별 순회 교육 실시

○ 교육 실시 현황('20~'23년)

연도	과정명	교과목	운영시간, 회수	이수인원
2020년	신규근로감독관 과정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2차 피해 예방	1~2h, 6회	277명
	근로감독 기본과정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2차 피해 예방	1h, 7회	191명
	고용평등 전담 감독관 대상 교육	성희롱 사건 처리 실무 시범 교육	5h, 1회	13명
	실시간 온라인 교육	수사기관 2차 피해 방지 교육	1h, 1회	48명
2021년	신규근로감독관 과정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2차 피해 예방	2h, 5회	369명
	근로감독 기본과정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2차 피해 예방	1h, 11회	352명
	실시간 온라인 교육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2차 피해 예방	8h, 2회	82명
2022년	근로감독 기본과정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2차 피해 예방	2h, 6회	128명
	권역별 집체 교육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2차 피해 예방	2h, 7회	125명
2023년	신규 근로감독관 과정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2차 피해 예방	2h, 1회	46명
	근로감독기본과정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2차 피해 예방	2.5h, 3회	124명
	실시간 온라인 교육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2차 피해 예방	2h, 3회	86명

<국토교통부>

- '20. 8. - 여성가족부 제공 2차 피해 방지 동영상 활용한 자체 교육 실시
- '20. 11. -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 온라인 강의 이수
- '21. 6.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지침」 제정
- '21. 11. -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 온라인 강의 이수
- '21. 12. - 전문강사 초청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 교육 실시
- '22. 2. -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 실시
- '22. 11. -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무자 간담회 참석
- '22. 11. -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 온라인 교육 이수

- '23. 8. - 「2023년 4대폭력 및 2차 피해 방지대책」 수립
- '23. 9. - 전문강사 초청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23. 9. - 「여성가족부 2차 피해 방지 교육 지원사업」 참여

<경찰청>

- **(소 직원 교육)** 폭력예방 교육 기본계획 수립하여 경찰 관서별 직장훈련·사이버 교육을 통해 2차 피해 예방 교육 이수
- **(직무교육 편성)** 경찰교육기관 내, 젠더폭력 관련 직무 전문화 과정 운영 및 주요 교육과정에「2차 피해 예방·성인지 감수성」등 교과 편성
 - ※ △2차 피해 예방 직무 기초과정 △풍속업무 심화과정 △지역경찰관서장 기초 과정
- **(교육콘텐츠 보완)** 기존 「2차 피해 예방」 교육콘텐츠에 개정법률, 최신판례·사례 반영한 「2차 피해 안내서」 제작·배포('23.2월) 및 신규 사이버 교육 콘텐츠* 제작
 - ※ △ 2차 피해 유형·최신사례 △ 여성폭력범죄 조사시 유의사항 △ 2차 피해 예방법 등

<해양경찰청>

- 우리청 소속 수사전담 경찰관 대상 2차 피해 방지교육 의무화(2020~)
-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시민단체)와 업무협약 체결(2020.11.)
 - 여성인권 보호와 경제적 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 주관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온라인교육(2020~2021)
- 「인권과 수사」과정 개설로 수사경찰관 대상 인권 교육(2020~2021)
- 동해지방청 교육센터에서 여청수사실무 교육과정 운영(2021~2022)
- 성폭력 범죄수사 실무 교육과정 운영(2022년~)
- 여성가족부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방지교육」 지원 사업 참여(2022년)

□ 2024년도 추진계획

<법무부>

○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교육대상)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총 70개 기관 사법경찰관 625명*
* 인사이동 등 사유로 사법경찰관 현원 변동 가능
- (교육시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2차 피해 방지교육 이수
- (교육내용)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개념, 2차 피해 사례 등
- (교육방법)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 및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교육 콘텐츠 및 2차 피해방지 전문강사 파견 교육 이수 등
- (교육실적) 매년 2월 초까지 교육 실시 결과를 본부 주무과로 제출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교육 이수 독려 및 교육 콘텐츠 제공 등 교육과정 관리
2/4분기	교육 이수 독려 및 교육 콘텐츠 제공 등 교육과정 관리(상반기 사전 점검)
3/4분기	교육 이수 독려 및 교육 콘텐츠 제공 등 교육과정 관리
4/4분기	교육 이수 독려 및 교육 콘텐츠 제공 등 교육과정 관리(하반기 최종 점검)

○ 예산 현황 : 해당없음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 목표 및 실적

성과목표 (단위)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교육이수율(%)	90	교육이수자/교육대상자 × 100

추진실적	2021년	2022년	2023년
교육 실적 / 대상	84명 / 87명	602명 / 610명	621명 / 625명
이수율(%)	97	97	99

<대검찰청>

○ 2024년도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하반기)

- 전국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사이버, 시청각 등) 실시

○ 기관별 협력체계 강화(연중)

- 검찰청 특성에 맞는 자체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교육 자료 지원 및 공유

<국방부>

○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2차 피해 방지 위탁교육

- 군 수사기관(군사경찰·군검찰) 수사담당자 대상 교육 시행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군 수사기관 2차 피해 방지교육 대외 위탁교육 실시 인원	59명	77명	106명	258명	180명	'23년 교육인원의 80%적용 (계획대비 121%교육 수료)
○ 성과목표치 산식 : '23년도 인원대비*0.8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전국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교육 이수 현황(%)	90.5	94.2	92.8	92.9	90	전국청 수기취합
○ 성과목표치 산식 : 교육 이수자 /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관련자						

<고용노동부>

- '성희롱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해설서' <가칭> 배포
 - 성희롱 신고사건 처리 전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지켜야 할 사항, 상담 및 조사과정에서의 질문기법 등을 담은 매뉴얼 마련하여 2차 피해 예방 도모
-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신규 근로감독관 과정, 근로감독관 기본과정)에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교육 실시
- 성희롱 사건 전담 근로감독관 대상 권역별 순회 교육(7~9월) 추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근로감독관 기본과정 및 신규근로감독관 교육 실시
2/4분기	· 근로감독관 기본과정 및 신규근로감독관 교육 실시 · 성희롱 사건 전담 근로감독관 대상 권역별 순회 교육
3/4분기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해설서 배포 · 근로감독관 기본과정 및 신규근로감독관 교육 실시 · 성희롱 사건 전담 근로감독관 대상 권역별 순회 교육
4/4분기	· 근로감독관 기본과정 및 신규근로감독관 교육 실시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근로감독관 교육자료 개발	완료	-	-	-	-	
○ 근로감독관 5일 이상 교육과정에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 편성 운영	교육 운영	교육 운영	교육 운영	교육 운영	교육 운영	고용노동부 인재개발 교육계획
○ 현장 방문형 교육 실시	교육 운영					

<국토교통부>

- 여성가족부 「'24년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방지 교육 지원사업」을 통한 전문강사 초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대면 교육 실시
- 신규임용자 의무교육 실시 및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교육 이수 독려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심화교육 타당성 검토를 위한 외부기관 자문
2/4분기	여성가족부 「'24년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방지 교육 지원사업」수요조사 제출
3/4분기	소속별 전문강사 초청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방지 교육 실시
4/4분기	신규임용자 2차 피해방지 의무교육 및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교육 이수 독려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확대	83% (390/468) ×100	88% (416/469) ×100	89% (433/487) ×100	87% (424/488) ×100	90%	교육 이수자 서명부

<경찰청>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연중)

- 2차 피해 예방 전문강사 인증제 도입 추진, 교육 전문성 제고 및 품질 향상
- 경찰교육기관 내 2차 피해 예방 교과 편성 확대 등 전문교육 강화
- 교육기관 여성폭력 대응 관련 교육과정 모니터링 및 교육콘텐츠 지속 보완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관서별 2차 피해 예방 교육 실시	273회	275회	275회	276회	276회 (시도청+署)	관서별 교육 실적

<해양경찰청>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관련 교육 과정 확대 및 사이버 교육 실시

○ 추진내용

-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관련 교육「성폭력 범죄 수사실무」과정 확대(1 → 3회)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사이버 과정* 운영
- * 교육과정에 성폭력 및 2차 피해방지 교육 포함

○ 추진방법

- 성폭력 범죄 수사실무 과정은 성폭력범죄 전담수사관 우선 선발
- 수사경찰관 대상 1인 1사이버 교육 수료 추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전문교육 신설 관련 기능협의 및 교육훈련계획 반영
2/4분기	성폭력 범죄 수사실무 등 관련 교육 진행(사이버 포함)
3/4분기	성폭력 범죄 수사실무 등 관련 교육 진행(사이버 포함)
4/4분기	성폭력 범죄 수사실무 등 관련 교육 진행 및 결과확인(사이버 포함)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 지표

성과목표	실적(B)			목표치(A)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 수료명 : 수사경찰관 1인1교육	100%	100%	100%	100% 목표	B/A(100%)

기대효과

○ 여성폭력사건 담당자 등 업무관련자에 의한 여성폭력 2차 피해 적극 예방

담당부서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담당자	주무관 이효	전화번호	02) 2110-4461
	법무부 교정기획과		주무관 이재영		02) 2110-3364
	대검찰청 형사4과		고성민 수사관		02) 3480-2527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이은영 주무관		02) 748-5107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고용정책과		인진희 사무관 송미나 서기관		044) 202-7719 044) 202-7446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이도훈 수사관		042) 615-5855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경감 송진영		02) 3150-0938
	해양경찰청 감찰팀		경사 박재현		032) 835-2945

법무부 전자감독과,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 과제개요

<법무부>

○ 사업목적

-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 전자감독대상자 등 주요 대상자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등록정보 현행화 및 제도 실효성 제고
-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를 통한 성범죄자 관리 강화

<경찰청>

-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규·변경 접수 신상정보 및 실거주지 등 정보 확인, 대상자 의무 위반 시 신속 수사연계를 통해 재범 억제
 - * 「성폭력처벌법」상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10·15·20·30년) 및 점검주기(3·6월, 1년) 차등 규정

□ 그간의 추진실적

<법무부>

○ 신상정보 공개·고지자, 소재불명자 등에 대한 일제점검 강화

- 공개·고지자 전원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관리하여 주민등록 주소지·실거주지 등 등록정보 변경사항에 대해 점검
 - * 2021년 총 7회, 2022년 총 12회, 2023년 총 12회에 걸쳐 49,970건에 대해 점검 및 불일치자 1,765명에 대한 주민등록지, 거주지, 출입국정보, 수용정보 등 현행화 실시
- 소재불명자, 미등록자 등 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점검하고 현행화하여 그 결과를 경찰과 공유, 진위여부 확인을 통해 소재불명 상태 최소화
 - * 제출의무위반자에 대해 경찰에 통보(2021년 3,420건, 2022년 3,636건, 2023년 3,467건)

- 전자감독대상자의 주거지 정보 직권정정을 통한 공개정보 관리 강화
 - 신상공개 전자감독대상자의 주거지 정보가 오(誤)정보로 판단될 경우, 법무부 직권으로 정정하여 신속하게 반영
 - * 정정 내용은 여가부와 경찰에 통보, 관할경찰서에서 '진위 및 변경여부' 확인 후 결과 공유('21. 9. 여성가족부 및 경찰청과 협의 완료)
 - * '21. 10. 부터 218회에 걸쳐 실시하여 '23. 12. 까지 총 1004건에 대해 직권정정 실시
-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를 통한 성범죄자 관리 강화
 -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소재불명, 공개·고지 등 특정 대상자의 통합적 관리 방안 마련 및 현안 공유 등 협업 강화

 - ▶ 협의체 운영주기 : 연 3회, 각 부처 순회하여 주관
 - ▶ 기타 : 긴급한 현안 발생시 수시협의회 개최

 - * '21년~'23년 유관기관 실무협의체 회의 8회 실시(정기 8, 수시 3회)
- 신상정보 등록·관리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최신의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여 등록정보에 반영
 - * 수용자조회, 출·입국조회, 주민등록조회, 차량등록증조회, 보호관찰 상황조회
- 여가부 고지 집행 전 고지정보 변동사항 검토 실시
 - * 여가부에서 '21년~'23년 반기고지 대상자 20,837건 점검 요청에 대한 검토 회신

<경찰청>

- 일제점검 및 소재불명자 집중 검거 기간 운영
 - 주기별 점검 외 年 2회 일제점검으로 등록정보 정확성 제고, 미흡사례 시정조치 및 소재불명자는 통신·금융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여 추적·검거
 - * 집중 검거 기간 中 소재불명자 40명(상반기)·42명(하반기) 검거
- 대상자 관리 강화, 현장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 개선('22.11월)
 - * △대면점검 향상을 위한 세부점검 방법 제시 △유형별 등록대상자에 대한 업무절차 및 처리 기준 기재 △고위험군 점검 등 중간관리자 임무 부여

○ **신상등록대상자 관리 전담팀 도입('23.2월~)**

- 기존 여청수사팀에서 수사 및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병행하는 체계를 개선, 각 관서 실정에 따라 전담팀 운영('23.10월 기준, 28개署)

* '23년 上 시범운영 결과, △의무위반 입건 증가 △대면접검율 향상 등 효과성 확인

□ **2024년도 시행계획**

<법무부>

○ **추진 내용**

- 신상정보 공개·고지자, 소재불명자 등 등록정보 일제점검 강화
 - * 공개·고지자 등 특별관리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 주소지·실제 거주지 등 등록정보 변경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일제점검 실시
 - * 주거부정·제출의무 불이행 등 소재불명자에 대한 집중 점검 및 경찰을 통한 진위확인 조치
 - * 소재불명자, 미등록자 등 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현행화 실시
- 전자감독대상자의 주거지 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직권정정 지속 실시
 - * 신상공개 전자감독대상자의 잘못된 주거지 정보는 법무부 직권으로 정정하여 신속하게 공개정보에 반영
 - * 정정 내용은 여가부와 경찰에 즉시 통보, 관할경찰서에서 '진위 및 변경여부' 확인 후 결과 공유
-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를 통한 성범죄자 관리 강화
 - *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소재불명, 공개·고지 등 특정 대상자의 통합적 관리 방안 마련 및 현안 공유 등 협업 강화

- ▶ 협의체 운영주기 : 연 3회, 각 부처 순회하여 주관
- ▶ 기타 : 긴급한 현안 발생시 긴급협의회 개최 및 핫라인을 통한 정보공유 활성화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 일제점검(매월) 및 직권정정(수시)
2/4분기	-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 일제점검(매월) 및 직권정정(수시) -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협의회(4월) - 여성가족부 고지 집행 전 고지사항 검토 및 회신(6월)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3/4분기	-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 일제점검(매월) 및 직권정정(수시) -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협의회(8월)
4/4분기	-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 일제점검(매월) 및 직권정정(수시) -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협의회(11월) - 여성가족부 고지 집행 전 고지사향 검토 및 회신(12월)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신속입력률(%)	92.5	92.7	96.4	99.8	98.1 (최근 2년 실적 평균)	신상정보 시스템 입력 건수
○ 성과목표치 산식 : 6일 이내 등록건수/신규*등록건수×100 * 직권등록사건 제외						

<경찰청>

○ 성폭력 예방 및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통합 업무체계 구축

- 성폭력 일반예방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업무를 통합한 전문예방 체계 도입, 고위험군 중심 집중관리·특별예방 강화

* (前) 여청수사팀에서 수사와 등록대상자 관리업무 병행 수행 → (後) 여청계에 등록대상자 관리 전문 인력 251명 배치, 재범 억지를 위한 등록정보 정확성 제고 등 관리 내실화
.....
공개·고지·전자장치피부착자 등 성범죄 고위험군 정보관리와 함께 범죄통계·Pre-CAS 등 객관적 데이터 및 인적·물적 취약요소 접목·활용, 예방활동 실효성 제고
.....

○ 직접 대면 점검을 향상 등 등록대상자 관리 강화

- 주기별 점검을 원칙적 대면방식으로 전환, 관서별 실정을 고려하여 △ 공개·고지대상자 △ 소재불명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중간관리자의 점검·역할 강화

○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 등 유관부처간 정보 공유 자동화**

- 법무부 협업 형사사법정보시스템 內 성범죄자 관리 카드 개선 추진(차세대 KICS 반영), 공문 작성·우편 송달 등 제반업무 절감 및 업무 효율화
- * 신규·변경접수시 시스템상 정보 자동 전송 및 개명·인적사항 변경 등 유형별 관리카드 개선을 통해 오류 방지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성폭력 예방 및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통합 업무체계 구축
2/4분기	상반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일제점검
3/4분기	하반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일제점검
4/4분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카드 개선(차세대 KICS 반영)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관리요원 전문교육비	38	38	38	0	100
국비	38	38	38	0	100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대면점검율				52.7	54.28	수기 통계
○ 성과목표치 산식 : 대면 점검 건수/ 전체점검 건수	-	-	-	(9월 기준)	("23년 실적 대비 3% 증가)	

※ 대면점검율은 '22. 10월부터 관리, '23년 이전 통계 산출 불가

□ 기대효과

<법무부>

- 신속하고 정확한 신상등록정보 관리를 통한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국민 불안 해소

<경찰청>

- 성범죄 전력자 등이 출소 후 재범·강력범죄로 이어지거나, 관리 소홀 등이 이슈화 될 경우 국민 불안감 심화, 형사사법당국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 고위험군 관리 및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정보 진위 확인 등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범 억제를 위한 안전망 구축

담당부서	법무부 전자감독과	담당자	박상욱 주무관	전화번호	02) 2110-4257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경위 김지윤		02) 3150-0823

□ 과제개요

○ 사업 목적

- 성범죄 유죄 판결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 법원 선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등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
-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또는 취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전 차단 도모

○ 주요 내용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통해 대국민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보호가구·기관 대상 신상정보 별도 고지
-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취업 제한, 연 1회 이상 취업여부 점검·확인 및 적발자 해임·기관폐쇄 등 조치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홍보

□ 그간의 추진 실적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현황

(단위 : 명, '24. 4월 기준)

등록 (법무부)	인터넷 공개			우편 고지		
	계	지역별 (시·도)	수용자 및 해외출국자 등1)	계	지역별 (시·도)	수용자 및 해외출국자 등2)
129,181	3,675	3,099	576	3,525	2,968	557

주 1) 수용자(500명), 해외출국자(44명), 주거불명(6명), 주거부정(26명)

2) 수용자(486명), 해외출국자(39명), 주거불명(6명), 주거부정(26명)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실적

(단위 : 개소, 명)

구분	점검대상		적발인원	조치 사항
	기관	인원		
'23년	548,600	3,755,360	120	기관폐쇄 등 45 종사자 해임 75
'22년	549,038	3,418,865	81	종사자 해임 43, 운영자 변경 16, 기관 폐쇄 22
'21년	533,315	3,382,478	67	종사자 해임 39, 운영자 변경 9, 기관 폐쇄 19
'20년	543,398	3,271,506	79	종사자 해임 51, 운영자 변경 11, 기관 폐쇄 17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취업제한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검토·추진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교육지원청)의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전수 대상 일제 점검·확인하여(4월~), 성범죄 경력자 퇴출 추진
-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기관 교육 및 취업제한제도 홍보 강화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 수립 안내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집행(연중) ·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기관 교육 및 취업제한제도 홍보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서 배포
2/4분기	·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기관 교육 및 취업제한제도 교육 사업 모니터링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4월~)
3/4분기	· 각 기관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실시 및 결과 확인 ·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기관 교육 및 취업제한제도 홍보
4/4분기	· 각 기관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실시 및 결과 확인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매뉴얼, 리플렛 등 제작·배포 ·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기관 교육 및 취업제한제도 홍보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23.12월말 기준)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 지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6,116 (4,716)	5,769 (4,442)	5,403 (4,198)	△713 (△518)	△11.7 (△11)
• (국비) 일반회계	6,116 (4,716)	5,769 (4,442)	5,403 (4,198)	△713 (△518)	△11.7 (△11)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성범죄자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만족도	신규	81	82	84.2	84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교육대상자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척도 조사 후 환산)
○ 성과목표치 산식 : 교육인원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고						

□ 기대효과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상정보 공개를 통하여 지역사회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성
- 아동·청소년 성보호 홍보 활동을 통한 사회적 성범죄 인식 재고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담당자	전은미 주무관 오미영 주무관	전화번호	02) 2100-6404 02) 2100-6409
------	--------------------	-----	--------------------	------	--------------------------------

법무부 심리치료과,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과제개요

<법무부>

○ 근거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 (사업 목적)

-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도모

○ (대상) 모든 성폭력 수형자

○ (과정 운영) 재범위험성 및 이수명령 시간에 따라 과정 구분 후 운영

- 기본과정 : 전 교정기관에서 60시간 운영
- 집중과정 : 17개 전담기관에서 100시간 운영
- 심화과정 : 5개 심리치료센터에서 300시간 운영
- 특별과정 : 1개 전담 심리치료센터에서 150시간 운영
- 유지과정 : 전 교정기관에서 20시간 운영

○ (주요 내용) 왜곡된 성의식 수정, 피해자 공감, 디지털 성범죄 이해 등

○ (강사) 교정공무원(내부 강사), 외부 전문 강사

○ 추진 체계

- 사업시행 주체 : 각 지방교정청 및 전 교정기관
- 사업시행 절차 : 계획 수립 → 운영 → 결과 보고

<여성가족부>

○ 사업목적

- 성폭력 가해아동·청소년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왜곡된 성인식 교정 및 재범방지 도모

○ 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사업
- 사업시행주체 : 민간단체

○ 주요내용

- 성폭력가해아동·청소년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가해아동·청소년 부모 교육 ※ 법원에서 의뢰한 수강명령 청소년, 소년원 재소자, 학교폭력위원회 위탁 청소년 등
- 교육 매뉴얼 보완, 교육 강사 양성

□ 그간의 추진실적

<법무부>

○ (주요 성과)

- 성폭력 수형자 재범방지 심리치료 프로그램 : 2,213명('21. 12.)
- 성폭력 수형자 재범방지 심리치료 프로그램 : 2,783명('22. 12.)
- 성폭력 수형자 재범방지 심리치료 프로그램 : 미집계*('23. 12.)
* '23. 10. 기준 2,400명('23. 12. 기준 목표치 2,300명)

<여성가족부>

○ 재범방지교육 지속 실시

<재범방지 교육인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가해 아동·청소년	931명	924명	1,113명	1,382명
○가해아동 청소년부모	173가족	222가족	221가족	225가족

- 가해아동청소년 부모 교육 매뉴얼 보완('20)
-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인간존중프로그램 매뉴얼 제작('21)

□ 2024년도 시행계획

<법무부>

○ 사업 개요

- 사업 대상 : 모든 성폭력 수형자
- 사업 내용 : 성폭력 수형자 재범방지 심리치료 프로그램
- 추진 일정
 - 기본과정 : 전 교정기관에서 연 2~6회 운영
 - 집중과정 : 16개 전담기관에서 연 2~3회 운영
 - 심화과정 : 5개 전담 심리치료센터에서 연 2회 운영
 - 특별과정* : 1개 전담 심리치료센터 운영
 - * 가학적·변태적 성폭력사범 등 특정 성폭력사범에 대해 출소 전 실시하는 150시간의 추가 심리치료 과정
 - 유지과정* : 전 교정기관에서 연 1회 이상 운영
 - * 심화과정(필요시 기본·집중과정) 수료자 중 출소 전 심리치료 효과 유지가 필요한 자에 대해 실시하는 20시간 과정
- 추진 체계
 - 사업시행 주체 : 각 교정기관
 - 사업시행 절차 : 계획 수립 → 운영 → 결과 보고

<여성가족부>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부모교육 지속 실시
-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 매뉴얼 업데이트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성폭력 가해아동청소년교육 계획수립, 실시
2/4분기	· 성폭력 가해아동청소년교육 실시
3/4분기	· 성폭력 가해아동청소년교육 실시
4/4분기	· 성폭력 가해아동청소년교육 실시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23.12월말 기준)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 지원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6,116 (524)	6,116 (524)	-	-	-
• 일반회계	524	524	-		
○ 가정폭력성폭력재발방지** (성폭력가해아동청소년교육)	1,316 (443)	1,316 (443)	(443)	전년동	전년동
• 기금(양성평등기금)	443	443	443	443	443

* 수강명령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로 추진체계 일원화('24. 예산삭감)

** 세부사업 폐지로 내역사업 이관('24. 양성기금→일반회계)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가해아동청소년 성충동성 증감율(%)						
○ 성과목표치 산식 : 사전 대비 사후평가 점수 변화 (‘사후평균 - ‘사전평균)/ ‘사전평균	-	-	△35%	△32%	△35%	사전-사후 성충동성 변화율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 성과목표치 산식 :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료 인원 산정(명)*	2,213	2,783	3,040	2,400**(명)	○ 최근 3년 실적 평균 (2,267명) 및 상승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4년 목표치 대폭 상향

* 프로그램의 과정별 구분없이 모든 과정의 총수료 인원을 합산하여 목표치 산출

** 24년 목표치는 최근 3년 실적 평균 및 상승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

□ 기대효과

<법무부>

- 성폭력 수형자 범죄 성향 개선을 통한 출소 후 재범방지

<여성가족부>

- 성폭력 가해아동·청소년 교육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안전한 사회구현
- 성폭력 가해아동·청소년 가족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

담당부서	법무부 심리치료과	담당자	이승룡 사무관 송남옥 주무관	전화번호	02) 2110-3898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김영진 사무관 오미영 주무관		02) 2100-6416 02) 2100-6409

□ 과제개요

○ 사업 목적

-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강화하여 성매매 수요 차단
-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운영 내실화로 존스쿨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주요 내용

- 교육 효과성 분석을 통한 교육 운영 내실화
- 엄정한 교육 집행으로 불량자 제재조치

□ 그간의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소감문 작성 등 자료 관리
 - *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평가 등을 실시, 반영하여 교육 운영의 내실화 추진
- 내실 있고, 엄정한 교육 실시
 - * 2023년 10월 기준으로 존스쿨 미이수자 86명 검찰청 미이수 통보

○ 주요 실적

- 전문프로그램 매뉴얼 적용 및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효과성 분석 등 내실 있는 교육 운영으로 성구매 남성의 왜곡된 성의식 개선
 - * 2021년 1,061명, 2022년 1,991명, 2023년 10월 1,876명 교육 이수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내실있고 엄정한 교육 운영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추진 내용 및 방법

- 미이수자에 대한 검찰 통보 등 엄정한 교육 운영
 - * 교육시간 엄수, 출결상황 및 이수처리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집행 엄정성 및 제도 실효성 제고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 강사에 대한 주기적 평가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지속 확보 및 확보된 전문 강사의 공유 확대

○ 추진 일정

- 연중 상시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 최근 3년 평균 실적 대비 ※ 2021년 1,061명 2022년 1,991명 2023년 1,876명
○ 성과목표치 산식 : 존스쿨 프로그램 이수인원(명)	899	1,061	1,991	1,876	1,650	

□ 기대효과

- 내실 있는 교육 운영으로 성 구매 남성의 왜곡된 성 의식 개선

담당부서	법무부 보호관찰과	담당자	이상기 사무관	전화번호	02) 2110-3585
------	--------------	-----	---------	------	---------------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교원양성연수과,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과제개요

<교육부>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친화적 환경 조성 및 확산
- 교장·교감 자격연수 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 강화교육 포함

<여성가족부>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친화적 환경 조성 및 확산
-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강화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 콘텐츠 및 교육 실시 지원 등

□ 그간의 추진실적

<교육부>

-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관련 지표 반영('19.4~)
- 교원양성과정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방안 연구*(~'20.3.말)
 - * (내용)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가이드라인·표준교육안 등
- 미래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교원양성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고 사항을 교원양성기관에 안내('20.4)
 - ※ 양성평등, 인권,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내용을 관련 교과 등에 포함하여 이수 권고
- 교원양성기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제공('21.9)
- 교원양성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원 자격검정령 개정 완료('21.2)
 - * 교원양성과정에서 성인지 교육 4회 이상(3년 초과 양성과정 기준) 필수 이수

- 교원양성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성인지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 실시 및 운영점검('22.12)
 - * 성인지 교육과정 운영 점검('22.8.~11.): 가야, 강릉원주, 목포, 부산, 안동, 한남, 한양, 호원대(8교)
-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대학 정보공시 항목으로 반영('19.10~)
- 초·고등교육기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적극 실시 및 이수 독려(계속)
- 교장·교감 자격연수과정에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 강화 내용의 교과목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교육연수원에 안내
 - ※ '2023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 수립 및 안내('22.12)
- 교원양성기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성인지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실시 안내(수시)

<여성가족부>

- 대학생 맞춤형 사이버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2019년~)
- 대학생 일정 기준(70%) 교육 참여 시 가점(5점) 부여 기준 신설(2020년)
- 종사자(70%) 및 대학생 참여율(50%) 기준 신설(2021년~)
 - ※ 대학생의 경우, '21년에 전년 대비 학생참여율이 5%p 이상 상승한 경우는 부진기관 제외
- 대학 내 성평등 인식 확산 및 건전한 캠퍼스 문화 정착을 위해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집중 지원*
 - * '22년 : 58개 대학 174회, '23년 : 72개 대학 214회(10월말 기준)
- '22년도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 차관회의 보고('23.10.12)
 - * 전년대비 참여율 2%p 향상 ('21년:52.7% → '22년:54.7%)
- 대학생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상시학습 지원을 위한 교육용 홈페이지 구축(~'23.11월)
 - * 성희롱·성폭력 예방, 가정폭력 예방,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 예방, 성매매예방 등 4종 (16차시)

□ 2024년도 시행계획

<교육부>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대학 구성원들의 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공시 항목으로 반영 및 관리 지속
- 대학 구성원들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폭력예방교육 적극 실시 안내 및 교육 이수율 제고 독려
- 교원양성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성인지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점검

○ 추진 내용 및 방법

- 대학 정보공시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등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점검
- 교장·교감 자격연수과정에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 강화 내용의 교과목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교육연수원에 안내
 - ※ ‘2024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 수립 및 안내(~’23.12.예정)
- 교원양성기관 대상 성인지 교육 운영점검 및 적극 실시 안내(수시)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 적극 실시 안내(‘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 (여성가족부)지침 배포) -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성인지 교육 내용 포함) 안내
2/4분기	- 교원양성기관 운영점검
3/4분기	-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 적극 실시 안내 및 이수 독려
4/4분기	-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 실적 정보공시 반영 사항 점검 - 교원 연수 중점 추진방향 수립 및 안내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회)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유도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1건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1건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2건	2	2	고등교육기관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강화 안내 공문

<여성가족부>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23년 제작한 대학생 맞춤형 콘텐츠*의 확산을 통해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향상 및 건전한 대학문화 조성

*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교제 폭력 예방 교육 사이버 콘텐츠 4종 (16차시)

○ 추진내용

- 대학 인권센터 등과 협업하여 요청한 대학에 한해 대학별 자체 사이버 교육 시스템에 탑재할 수 있도록 콘텐츠 보급
- 대학 인권센터 등 담당자와의 소통 채널 확보를 통해 정기·상시 현장의 의견 수렴 및 품질관리에 환류

○ 추진방법

-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통해 콘텐츠 보급 홍보 효과 극대화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디지털 콘텐츠 활용 추진계획 수립
2/4분기	·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디지털 콘텐츠 활용 지원
3/4분기	·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계속) ·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디지털 콘텐츠 활용 지원(계속)
4/4분기	·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계속) ·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디지털 콘텐츠 활용 지원(계속)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400	400	0	△400	△100.0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4,147 (808)	4,147 (808)	0 (0)	△4,147 (△808)	△100.0 (△100.0)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 기반 구축**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784 (0)	784 (0)	3,415 (816)	2,631 (816)	29.8 (100.0)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 예산의 일부를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집행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디지털 콘텐츠 제작·활용	-	-	-	4종 제작	46개 대학 보급·활용	전국 460개* 대학의 10% *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 (2023)

□ 기대효과

<교육부>

- 대학 내 전 구성원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양성평등 인식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 확산
- 교장·교감 등 관리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 강화
- 예비교원의 양성평등 인식 향상을 통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역량 제고

<여성가족부>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교육 이수 환경 조성 및 확산
- 대학생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대학문화 조성

담당부서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	이인숙 사무관 선보영 사무관 김선아 연구사	전화번호	044) 203-7115 044) 203-6508 044) 203-6502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임재훈 사무관		02) 2100-6442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과제개요

<교육부>

- 초·중등학교 양성평등 교육 강화 및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성희롱·성폭력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대학 내 외국인 교원·학생 맞춤형 예방 교육 자료 보급

<여성가족부>

- 교육 분야 인식개선 추진
 - 성희롱·성폭력 인식 개선을 위한 외국인 교원용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 개발 보급

□ 그간의 추진실적

<교육부>

- 초·중등 양성평등교육 목표·성취기준 개발 및 양성평등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운영가이드, 초·중등 예방교육·양성평등 수업사례집 개발 및 보급(~'20.12)
- 대학 내 인식개선을 위한 맞춤형 예방교육자료 개발('19년~)
 -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교원 및 학생 대상 예방교육 자료 개발
 - ※ '21년 : 일본어, 베트남어, '22년 : 영어, 중국어, '23년 : 몽골어, 러시아어
 - 초·중등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예방교육자료 개발 및 전공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개발('20년~)
 - ※ 초·중등 예비교원 대상 예방교육자료 개발('20년), 스포츠계열 예방교육자료 개발('21년), 의료보건계열 예방교육자료 개발('22년), 공학계열 예방교육자료 개발('23년)

- 학교 양성평등교육 담당 교원 대상 역량 강화 직무연수 실시('20년~)
- 「교육기본법」개정('21.9.24.)·시행('22.3.25.)으로 학교 교육에서 체계적인 양성평등교육 실시 기반 마련
- 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소규모·비도심 학교 대상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지원('21년~)
- 단위학교의 교사들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양성평등교육 콘텐츠 취합·탑재·보급('22년~)

<여성가족부>

-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보급, 수요자 중심의 효과성 있는 교육교재 활용 지원
 - 공공기관 종사자 및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 사이버 콘텐츠*에 외국어 자막(영어, 중국어)을 통해 외국인 교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 공공기관 이러닝시스템 활용 온라인 상시학습 서비스 지원(직원용 4종, 고위직용 1종)
 - 중·고등학생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3종 6개 국어* 자막 지원
 - *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지원(영어, 불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중국어)
 - 취약계층 폭력예방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콘텐츠 배리어프리 및 외국어 자막 지원
 - * 다국어 자막, 음성해설, 수어 통역 등 서비스 지원
- 분야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자체 제작 콘텐츠 및 타부처·민간 기관이 개발한 콘텐츠를 추천콘텐츠로 선정·보급

< 추천콘텐츠 제공 현황 >

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통합교육
141종	61	25	6	13	36

* 폭력예방 추천콘텐츠 총 141종 ('23년 12월 기준)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시스템 등을 통해 보급

□ 2024년도 시행계획

<교육부>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 시 필요한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통해 교육 현장의 활용성 증진
 - ※ 초·중·고등학생의 관심, 흥미, 눈높이에 적합한 양성평등 교육이 교과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급별, 교과목별 교수·학습자료 개발
- 우수한 양성평등교육 자료 및 콘텐츠 지속 발굴·보급을 통한 교사들의 교수 활동 지원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에 대한 기관 및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외국인 교원 및 학생 대상 예방교육 자료 배포·확산
 - ※ 다양한 언어의 예방교육 자료 보급 확산을 통한 효과성 향상 도모

○ 추진 내용 및 방법

- 학교급별, 교과별 양성평등교육 요소를 반영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단위학교 활용 확산 추진
- 국내·외, 각 기관에서 개발·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양성평등 관련 교육콘텐츠 확보·탑재 및 관리
 - ※ 교원 대상 양성평등교육 콘텐츠 제공 채널인 교원전용 디지털콘텐츠플랫폼(ITDA) 운영
-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을 담당할 교원들의 양성평등 의식 함양 및 전문성 향상 지원을 위한 교원 연수
- 대학별 예방교육 자료 배포*를 통해 외국인 교원 및 학생들에게 대학 내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안내
 - * 대학별 인권센터, 외국인 교원 및 학생 관리 부서 등을 통해 확산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외국인 교원 및 학생 대상 대학 내 성범죄 예방 자료 개발 계획 수립 - 시·도교육청별 양성평등교육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교부계획 수립
2/4분기	- 외국인 교원 및 학생 대상 대학 내 성범죄 예방 자료 수정·보완 개발 - 학교 양성평등교육 콘텐츠 확보 및 현장 적합성 검토 - 학교급별·교과별 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및 교사용 학습지도안 등 개발
3/4분기	- 학교 양성평등교육 콘텐츠 플랫폼 탑재 및 관리 - 학교 양성평등교육 담당 교원 대상 연수 지원
4/4분기	- 외국인 교원 및 학생 대상 대학 내 성범죄 예방 자료 배포·확산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양성평등	200	200	200	-	-
특별교부금	200	200	200	-	-
○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491	451	245	△246	△50.1
국비	491	451	245	△246	△50.1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학교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보급	2종	2종	2종	2종	2종	교육 프로그램 자료
○ 성과목표치 산식: 보급된 교육 프로그램 수(종)						
○ 성과지표명: 외국어 예방 교육자료 개발·번역	2종	2종	2종	2종	1종	교육자료 발간물
○ 성과목표치 산식: 개발(번역)된 외국어 예방교육자료 수(종)						

<여성가족부>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성인지적 관점이 강화된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하고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콘텐츠 배리어프리 지원

○ 추진 내용

- 수요자 요구, 현안 등을 고려한 접근성이 강화된 배리어프리 지원 버전 제작 지원

* 콘텐츠 내 화면해설, 수화, 외국어자막 등의 삽입을 통한 교육의 편의성 제공

○ 추진 방법

- 조달청 공모를 통한 콘텐츠 개발 기관 선정, 기술능력 평가 등을 통해 교육 콘텐츠 개발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 (배리어프리 제작 전문업체 활용)

* 2023년 제작 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24년 접근성 향상 대상 콘텐츠 선정 계획 수립
2/4분기	· '24년 접근성 향상 대상 콘텐츠 선정 및 배리어 프리 지원
3/4분기	· '24년 접근성 향상 대상 콘텐츠 배리어 프리 지원(계속)
4/4분기	· '24년 접근성 향상 대상 콘텐츠 예방교육통합관리 탑재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4,147 (329)	4,147 (293)	0 (0)	△4,147 (△329)	△100.0 (△100.0)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 기반 구축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784 (0)	784 (0)	3,415 (229)	2,631 (229)	29.8 (100.0)
국비	329	293	229	△100	△30.4

* '23년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에서 '24년 여성폭력방지정책추진기반구축사업으로 내역이관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	6종	3종	3종	2종	예산감액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
○ 성과목표치 산식 : 외국어 자막 지원(수)						

□ 기대효과

<교육부>

-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학교 양성평등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 단위 학교별 현장 교원들의 양성평등 의식 함양 및 전문성 향상 지원을 통한 교원들의 양성평등 교수 역량 제고
- 대학의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내국인 교원 및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교원 및 학생 등 학내 전 구성원들에게 안내하여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 도모

<여성가족부>

- 외국인 교원용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 보급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인식 개선
-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활용의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담당부서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이인숙 사무관 이보배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3-7115 044) 203-7111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정은선 사무관		02) 2100-6562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과제개요

-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그간의 추진실적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구축·운영 계획 수립 및 교육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18.3.9.~)
 - 컨설팅 신청 학교 및 중대 사안 발생 학교, 교육대학 등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와 합동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실시('19.5.~'21.6.)
 - 신고센터 전담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사안 대응 및 처리 전문성 강화('21년)
 - 신고센터 사안처리 절차 체계화를 위한 신고센터 업무매뉴얼 개발('21.12.)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내실화
- 추진 내용 및 방법
 - 신고센터 업무매뉴얼 활용을 통한 사안처리 절차 체계화 및 사안 대응 강화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온라인) 운영
2/4분기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온라인) 운영
3/4분기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온라인) 운영
4/4분기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온라인) 운영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답변완료율	-	-	-	-	80%	온라인 신고센터 답변완료율

기대효과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 등 교육기관 내 발생한 성사안에 대한 대응과 지원을 도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반 마련

담당부서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이보배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3-7111
------	------------------	-----	---------	------	---------------

□ 과제개요

- 교육청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및 사안처리지원단 구성·운영 지원

□ 그간의 추진실적

-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및 사안처리지원단** 구성·운영 지원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사안대응 체계 강화

* '23.12.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이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구성·운영

** (전체 교육청(17개) 사안처리 지원단 구성·운영) 내부 및 외부위원(변호사, 상담사 등)으로 구성, 학교 내 중대·심각한 성 사안 발생 시 조사 및 사안처리를 통합적으로 지원

- 교육청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설치 유도를 위해 전담조직 구성·운영 여부를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21~22년 평가)
- 시도교육청 전담조직 운영을 위한 지방공무원 국가정책수요 인력 지원('21년 8명 → '22년 12명 → '23년 18명)
- 교육청 및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사안처리 자문·컨설팅 지원('21년, 8건/'22년 5건)
- 학교에서 사안처리 시 주요 애로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사례 형태로 엮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집' 개발·보급('21.1.)
- 학교현장의 특성과 교육관계 법령을 반영한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가이드북' 개발·보급('22.12., '23.7.)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디지털 성폭력 등 사안 대응 및 학교 일상회복 지원' 사업 추진
 - ※ 부내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시도교육청 예산확보 지원
 - ※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교부금 교부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

○ 추진 내용 및 방법

- 교육(지원)청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및 사안처리지원단 운영을 위한 예산 (특별교부금) 지원 계속
- 교육부-시도교육청 전담조직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근절대책 추진 상황 점검 및 우수사례 공유, 역량 강화 워크숍 등 실시
-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및 학교 업무 담당자 직무연수 운영 및 콘텐츠 개발·보급
 - * 시도교육청에 교부금 교부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며, 직무연수 및 콘텐츠 개발 등 공통 적용 사업은 관련 전문기관 위탁
- 시도교육청별 학교장·책임교사 대응 역량 강화 및 단위학교 사안처리 지원(연중)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성희롱·성폭력 근절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교육청별) ▪ 시도교육청별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운영(연중) ▪ 위탁기관 협약 체결 및 특별교부금 교부 ▪ 학교·교육청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기본계획 수립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 상반기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협의체 회의 개최 ▪ 학교·교육청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자료 개발 ▪ '24년 사업 중간보고 및 우수사례 공유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상반기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워크숍 개최 ▪ 학교·교육청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운영(방학 중)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하반기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협의체 회의 개최 ▪ '24년 시도교육청 사안처리 담당자 워크숍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디지털 성폭력 등 사안 대응 및 학교 일상회복 지원	450	450	450	-	-
특별교부금	450	450	450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성희롱·성폭력 교육(지원)청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만족도(%)	87	88	92	94	94	역량 강화 교육 이수자 만족도 설문조사 (종합 만족도 기준)

기대효과

○ 시도교육청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반 강화

담당부서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이보배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3-7111
------	------------------	-----	---------	------	---------------

□ 과제개요

-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전국 학교 내 불법촬영 예방·근절체계 구축
 - 디지털 성범죄 증가 추세 일선학교·학부모의 '안전한 학교' 조성 요구 증가에 따른, 국회 및 행정부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시급

□ 그간의 추진실적

- 전국 학교 내 화장실, 탈의실 등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정례화('21~)
 - 초·중등 및 대학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상시점검* 체계 구축
 - * 최소 연 2회 이상, 불시 점검(지역 공공기관 협조, 전문기관 위탁 등) 추진,
 - ※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23.2.22.)」, 경기 광덕초 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 현장방문('23.3.16., 행안부·교육부·경기교육청)」
- '학교 불법촬영 예방 현장지원단' 구성 및 점검·예방 활동 실시('23~)
 - 3개팀(3인)을 구성하여 3개 권역(경기, 충남, 대전·세종) 107개 학교 점검 및 예방 활동 실시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학교 내 구성원이 참여하는 '예방 중심'의 학교 맞춤형 대책 마련
 - 첨단기술을 활용한 점검체계 고도화 추진 및 전국 불법촬영 예방 현장지원단 운영 등으로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실현
- 추진 내용 및 방법
 - 학교 불법촬영 예방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한 인식개선 활동 및 예방 캠페인 실시, 홍보 영상 제작·상영 등 추진
 - * 학교 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교내 구성원 인식조사, 학교 자치 예방활동 컨설팅 등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신학기(3월, 9월) 학교별 자율적 예방활동 추진
2/4분기	- 학교 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추진
3/4분기	- 신학기(3월, 9월) 학교별 자율적 예방활동 추진
4/4분기	- 학교 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추진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 예방 환경 조성사업	900	640	1,000	100	11.1
특별교부금	900	640	1,000	100	11.1

○ 성과지표 : 해당 없음

□ 기대효과

○ 불법촬영 예방 현장지원단 운영 및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학교 내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 해소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의식·문화 조성

담당부서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이보배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3-7111
------	------------------	-----	---------	------	---------------

□ 과제개요

-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사업 추진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법제화를 위한 법령 개정
- 대학 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대학 정보공시 등에 공개 의무화

□ 그간의 추진실적

-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 선정* 및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체계 구축’ 사업 추진 계속(‘23년, 448백만원)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현황 실태조사, 외국어 교육자료 제작(러시아, 몽골), 판례집 발간(1종), 직무연수 실시(9개과정)
 - * (‘19~‘20)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21~‘2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완료
 - 고등교육법 개정(‘21.3.23.개정, ‘22.3.24.시행)으로 인권센터 설치 법제화에 따라 인권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완료(‘22.3.22.)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현황을 대학 정보공시 신규 항목으로 반영
 - ‘22년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설치여부, 전담인력 지정 여부, 인원 및 규정 여부 등의 현황 조사 및 대국민 공시(‘22.10월)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사업(구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 중앙센터 사업) 지속 추진('24년, 245백만원)

○ 추진 내용 및 방법

- 대학 전담기구 권역별 사안처리 슈퍼비전 및 담당자 모의훈련 실시, 대학 사안 처리 현황조사 및 전담기구 운영실태조사 실시 등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사업 기본계획(안) 마련 -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사업 용역 계약 체결
2/4분기	-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 등 조사·연구 실시
3/4분기	-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 등 조사·연구 실시
4/4분기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사업 성과검토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491	451	245	△246	△50.1
국비	491	451	245	△246	△50.1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담당자 교육 만족도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담당자 교육 만족도 80%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담당자 교육 만족도 90%	고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 1건 완료	-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담당자 교육 만족도 90%	슈퍼비전 및 모의훈련 참가자 종합만족도 조사결과

□ 기대효과

- 대학의 사안처리 역량 및 책무성 강화

담당부서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이보배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3-7111
------	------------------	-----	---------	------	---------------

□ 과제개요

- 정직 이하 처분을 받은 성희롱·성폭력 가해교원이 교단 복귀 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폭력예방 교육 및 상담 실시 의무화
-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로 징계가 확정된 교원 및 연구자에 대해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참여 제한 조치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시도교육청 2019년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 포함하도록 권고('19.1월)
 -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성비위 교원 재발방지 교육 자체 계획 수립·추진(19.4월/서울 30시간, 광주 20시간, 부산 15시간 등)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개발 완료, 시도교육청 및 학교 배포('19.2.28)
 - 전문가와 교육청, 학교 현장 등 의견수렴을 통해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개정 및 보급('20.9.)
 - 학교 현장의 특수성 및 교육관계 법령 등을 반영한 '학교 성희롱·성폭력 대응 가이드북' 개발·보급('22.12.)
-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시 성 비위 등으로 징계가 확정된 교원에 대한 과제 중단 및 학술연구 지원 제한('20~)
 - ※ 2023 인문사회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2023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대학 내 예방교육 및 재발방지 교육 내실화
- 성비위 징계 교원의 인문·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 제한
- 교단에 복귀하는 성희롱·성폭력 가해교원의 재발방지교육 강화

○ 추진 내용 및 방법

-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모의훈련 및 사안처리 사례 관리 권역별 슈퍼비전(재발방지 대책 및 조치 포함) 실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에 따라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과제 중단 및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후속조치
- 시·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협의회 등을 통한 가해교원 대상 재발방지 교육·상담 이행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추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사업 기본계획(안) 마련 -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사업 용역 계약 체결
2/4분기	-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 등 조사·연구 실시
3/4분기	-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 등 조사·연구 실시
4/4분기	-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사업 성과보고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491	451	245	△246	△50.1
국비	491	451	245	△246	△50.1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성과지표명 :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담당자 대상 예방교육 및 재발방지교육 교수법 직무연수(회)	2	23	11	4	6	슈퍼비전 및 모의훈련 실시결과

□ 기대효과

- 대학 내 전담기구 담당자 대상 모의훈련 등을 통한 예방교육 및 재발방지교육 내실화
- 성비위 징계 교원의 학술연구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 가해교원 대상 재발방지 교육·상담 이행을 통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담당부서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학술연구정책과	담당자	이보배 사무관 조성원 사무관 김성희 서기관 조현미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3-7111 044) 203-6873 044) 203-6867 044) 203-6871
------	-----------------------------	-----	--	------	--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과제개요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체계 확립
 - 문화예술 분야의 정부지원·공모사업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전문 강사 양성 및 양성평등 인식 제고 교육 과정 운영
 - 문화·예술 분야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성폭력 예방콘텐츠 개발·보급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문화·예술인 맞춤형 교육 지원

□ 그간의 추진실적

- **(예방교육)** ▲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예방교육 의무화('20.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 예술, 영화, 대중문화, 출판 분야의 정부지원·공모사업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18년~, 계속), ▲ 민간보조사업 수행 시 사업참여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점검('21~'23년 11월)
- **(문화분야 특화교육)** 문화예술계 특수성을 반영한 현장 맞춤형 예방교육
 - 문화예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위촉('18~'20 총 51명) 및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교육 과정 지속 운영
- **(실태조사 실시)** 문화체육관광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 공동조사표 활용, ▲'21년 문화예술분야·문화관광해설사, ▲'22년 게임·음악산업, ▲'23년 광고·만화·애니메이션·웹툰 분야 조사 실시

- **(실천규약 개발)** 문화분야 종사자 교육용 콘텐츠 및 실천규약 개발(28종)
 - 예비예술인 및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대상 교육용 콘텐츠 개발('20~'21 14종), 현장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규약 개발('20~'23 15종)
- **(찾아가는 교육)** 현업 예술인, 예술대학 등 예비예술인 대상 교육현장 연계
 - 문화 분야(예술, 콘텐츠) 및 영화계 전문강사를 활용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20~'23.10월 총 1,087회 58,949명)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민간보조사업 수행 시 사업참여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점검
- 체육분야 개발된 실천규약으로 자발적 참여 독려, 콘텐츠 확산
- 문화예술계 찾아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온라인 교육 등 지속 실시(계속)

○ 추진 내용 및 방법

-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사업참여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이행 점검·관리(주요 공공기관 등 대상, 연 1회)
- 체육분야 기 개발된 실천규약(대상별, 상황별)을 가이드라인으로, 종목별 체육단체 등의 맞춤형 실천규약 제작 및 콘텐츠 확산 자발적 참여 추진
- 콘텐츠분야(방송, 출판,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실태조사 추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예방교육 의무 이행 점검 결과 도출 - 실천규약 개발 사업 계획 수립, 수행단체 공모 - 콘텐츠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계획 수립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천규약 개발 추진 - 실태조사 수행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조사 추진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추진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3/4분기	- 사업 지속 추진 및 모니터링
4/4분기	- 실천규약 개발 완료 - 실태조사 결과 도출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추진 - '24년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예방교육 의무 이행 점검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270	219	260	△10	△3.7
국비	270	219	260	△10	△3.7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적(명)	예비 예술인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	예방 교육 실적 (16,045명)	예방 교육 실적 (17,441명)	예방 교육 실적 (24,937명) * '23.10월 기준	예방교육 실적 14,196명	'24년에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다시 교육 전환될 것을 감안하여 과다하게 높게 잡지 않고 '23년 대비 목표치 30% 상향
○ 성과목표치 산식 - 전년도목표치×130%						

□ 기대효과

- 문화예술분야 특성을 반영하고 현장과 연결을 통한 내실있는 예방교육 추진
-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체계 확립으로 종사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한 문화예술 환경 구축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김미진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3-2366
------	----------------------	-----	---------	------	---------------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과제개요

-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예방 및 문제 발생 시 계약 해지 등 명문화 추진, 표준계약서 활용 시 정부지원 우대 적용

□ 그간의 추진실적

- **(표준계약서 반영)** 문화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계약해지권, 분쟁해결 절차 명시 등 관련 조항 반영
 - * ▲성범죄 발생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피해구제조치
 - **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문 반영 표준계약서 현황('23.11월) : 11개 분야 57종(대중문화 4, 만화 6, 방송 6, 출판 9, 예술 4, 미술 9, 애니메이션 4, 이스포츠 3, 직장운동경기부 2, 프로스포츠 5, 공예 5)
- 표준계약서 사용 시 정부지원·공모사업 우대('20년 584억) 및 장르별 의무화 추진('20년~)
 - * '20년 영화(115억), 만화(14.6억), 방송(148억), 출판(15억), 공연예술(254억), 미술(37억)
- **(민간보조사업 관리)**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수행 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배제 등을 위한 보조금 지침 개정 및 안내서 마련·확산('21.4월, '22.5월),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점검 정례화('21·'22·'23년 12월)
 - * 보조사업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시 가해자 배제,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보조금 교부 취소 등
- **(권리보장법 하위법령)** 예술 활동 중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조사 및 제재를 위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22.9월)
 - *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 절차, ▲신고사실의 조사, ▲가해자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배제 기준 등
- 「예술인권리보장법」상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심사지침 마련('23.4월) 및 심의·의결기구인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제정('23.6월)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표준계약서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계약해지권, 분쟁해결 절차(문체부 신고, 인권위 진정) 명시(계속)
- 민간보조사업 수행단체 대상 보조사업시 가해자 배제 여부 등 점검(계속)
- 「예술인권리보장법」시행에 따른 가해자 제재 관련 세부 시행체계 구축

○ 추진 내용 및 방법

-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의 계약해지권 및 분쟁 해결절차 명시 확대
 - *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계약해지 또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피해구제
-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배제 등 이행현황 점검(계속)
- 「예술인권리보장법」제16조(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 제34조(시정명령), 제35조(재정지원의 중단) 관련 심사지침 및 세부 운영규정 개정
-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심사기준 등 근거 마련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23년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점검 결과 도출
2/4분기	- 시행계획 추진과정에 대한 자체 점검 시행 - 표준계약서 8종 개정 추진(대중문화 2종, 만화 6종)
3/4분기	-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심사기준 등 근거 마련 - 예술인권리보장법 가해자 제재 관련 세부 운영규정 마련
4/4분기	- 표준계약서에 피해구제 관련 조문 명시 지속 추진 - 시행계획 추진과정에 대한 자체 점검 시행 - '24년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이행 점검 - 예술인권리보장법 성희롱·성폭력 심사지침 개정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가해자 제재 근거 마련 ○ 성과목표치 산식 : 권리보장법 관련 성희롱·성폭력 심사지침(1건), 가해자 제재 관련 세부 운영규정(1건)	성폭력 방지 조문 명문화 (7개분야)	성희롱 피해구제 조치 명문화 (5개분야)	성희롱 피해구제 조치 명문화 (8종)	성희롱 심사지침 및 심의기구 관련 규정 마련 (2종)	2차 피해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1종)	예술인권리 보장법 위반 관련 심사 지침 등에 반영

□ 기대효과

-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조문 지속 확대, 가해자 제재의
실효성 강화 등으로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 및 공정한 보상체계 강화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김미진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3-2366
------	----------------------	-----	---------	------	---------------

□ 과제개요

- 산재되어 있는 관련 분야 상담센터의 연계를 강화하고,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

□ 그간의 추진실적

- (심층연구)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방안 및 실태조사 방법 연구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성평등센터 개선방안 연구 등 추진
 - 분야별 상담센터 사례 분석 등을 통한 피해지원 방안 도출('20년)
 - 콘텐츠산업 양성평등 실태 분석을 통한 지원방안 개선 및 교육 개발 연구를 통해 콘진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보라) 기능 재편('22년)
- (접근성 제고) 「예술인권리보장법」상 상담-신고-조사-피해구제 등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전용 신고상담센터 역할 강화* 및 전용 홈페이지 개설**('22.9월)
 - * 법상 '예술인신문고'로 기능 강화 : (접수, 피해지원) 복지재단, (조사) 문체부, (심의) 위원회
 - ** 익명 신고 기능 신설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예술인권리보장법」시행('22.9월)에 따라 심의·의결기구인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에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 설치·운영('23.1월~, 8회)
- (피해지원 및 연계) 센터 간 정례회의를 통한 연계체계 강화
 - 예술인 성폭력 피해지원센터, 콘텐츠성평등센터(보라), 영화성평등센터(든든)을 통해 심리상담·의료·법률 지원
 - * ('20~'23.10월) 심리상담 76건, 법률지원 265건, 의료지원 9건

- 분야별 상담센터 정례회의('20~'23년 총 9회) 등을 통해 센터별 업무계획 공유, 애로사항 등 운영관리 개선방안 논의, 통일적 지원기준 마련
- * ('20년) 예술계 상담지원센터 접수사건의 불공정행위신고센터로 이관·연계방안 등 ('21년) △(상) 상담-신고센터 연계 및 피해 지원 기준, △(하)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현황 및 공유 방안 논의, ('22년) △(상) 상담신고 운영현황 및 계획 공유, 애로사항 수렴, △(하) 우수사례 및 운영실적 ('23년) △(상) 상담신고 운영현황 및 계획 공유, 애로사항 수렴, △(하) 우수사례 및 운영실적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신고센터(조사·시정조치)와 상담센터(피해지원기능) 간 사례 공유 및 정책 개선 등 연계 강화(계속)

○ 추진 내용

- (정례협의체 운영) 신고센터와 분야별 상담센터 간 연계 강화 및 정책 개선 등을 위한 정례협의체 운영(계속)
- (피해구제 분과위 운영) 「예술인권리보장법」상 심의의결 기구인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 운영(계속)
- (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권리보장센터 개소(운영)를 통한 예술인 권리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 피해 지원 전담 역할 강화 및 운영 안정화
 - * 예술 활동 관련 예술인 권리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상담-신고-조사-위원회 심의-구제조치 등 피해구제 절차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23.12월 개소)
- (콘텐츠진흥원 보라) 신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교육프로그램 업데이트
- (영화진흥위원회 든든) 영상산업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법률 및 의료지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영화분야 피해지원 및 사건처리 절차 매뉴얼 재정비
2/4분기	- 상담신고센터 정례협의회 운영 -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 운영 - 시행계획 추진과정에 대한 자체 점검 시행
3/4분기	-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 운영
4/4분기	- 상담신고센터 정례협의회 운영 -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 운영 - 시행계획 추진과정에 대한 자체 점검 시행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22.10월 기준)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계	2,199	2,151	2,099	△100	△4.5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예술인 성폭력 피해지원센터)	1,623	1,623	1,623	0	0
○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콘텐츠 성평등센터 보라)	126	81	126	0	0
○ 영화정책지원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450	447	350	△100	△22.2
국비(일반회계)	1,749	1,704	1,749	0	0
국비(영화발전기금)	450	447	350	△100	△22.2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신고 상담센터 활성화	모바일 상담 시스템 확대 (3개소)	정례 협의회 운영 2회	- 정례 협의회 운영 2회 - 분과 위원회 설치를 위한 사전조사	예술인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 제 분과 위원회 설치	정례협의회 운영 2회	신고상담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례협의체 회의 개최 (상·하반기 각 1회)

□ 기대효과

- 상담센터 연계 강화를 통해 분야별(문화예술, 콘텐츠, 영화분야)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체계 구축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김미진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3-2366
------	----------------------	-----	---------	------	---------------

□ 과제개요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20.8.5) 운영을 통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체육계 인권침해·스포츠비리 조사, 피해자 지원, 체계적인 스포츠 인권교육 및 실태조사 등 추진

□ 그간의 추진실적

- (상담·신고 처리 강화) 개소 이후('20.9.2.~'23.10.31.현재) 상담 4,086건, 신고 1,457건 접수, 신고사건 처리 1,135건(77.9%)
 - (평균 처리건수) 전년 대비, 신고사건 월평균 처리건수 15.8건 증가(33.1건 → 48.9건, +47.7%)
 - (평균 심의건수) 전년 대비, 심의위원회 회당 평균 심의건수 10.4건 증가(14.6건 → 25건, +71.2%)
- (신고여건 강화) 본원 이전('23.5.), 지역사무소 개소 등을 통한 신고 접근성 강화, 집중 신고기간 운영('23.9.)
 - (지역사무소 확대) '21년 3개소(경기·대전·경남)→'22년 5개소(광주, 원주 추가)

< 지역사무소 개소에 따른 신고 및 처리 현황 >

구분	'21년(A)	'22년	'23년(추정)(B)	개소 전후 비교 (A 대비 B 증감)	
지역사무소	-	3개소	5개소	+5	
신고 건수	208	269 (+29%)	377 (+40%)	169	(+81.3%)
직접방문 및 통화 상담 건수 (지역별 평균)	53	126 (+138%)	208 (+65%)	155	(+192%)

○ (피해자 지원)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지속 실시

구분	의료	법률	정서심리	임시주거	체육활동	계
2021년	18	14	27	2	미시행	61
2022년	11	16	34	-	5	66
2023년 (10월말 기준)	14	24	22	-	2	62
계	43	54	83	2	7	189

○ (비리근절 예방 활동 실시) ▲인권보호 교육, ▲인권 실태조사, ▲윤리센터 인지도 제고 등 예방활동 실시

- (인권보호 교육) 법정 의무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및 재교육) 및 스포츠인권 교육, 인식개선 교육* 등 총 27만여명 실시**

* 전 체육인 대상 예방교육, '23년 3월 신규 개설

** '20년 702명 → '21년 51,507명 → '22년 71,660명 → '23년 144,030 / 총 267,899명

- (실태조사)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예방을 위한 인권실태조사 실시*

* ('21년) 초·중·고학생선수 및 프로·실업팀 선수 대상, ('22년) 장애인체육인 대상, ('23년) 학생선수(초등~대학), 프로·실업선수 및 학부모(초/중/고) 대상

- (윤리센터 홍보) 홍보채널, 주요 체육행사 현장홍보 등을 통한 스포츠윤리센터 및 주요 사업 홍보

* 홍보채널(유튜브, 네이버블로그·TV, 인스타그램, 페이스북페이지 약 3,900여명 구독), 현장홍보(전국체전·장애인체전, 전국소년체전·장애인학생체전 등)

○ (윤리센터 여건 개선) 지속적인 인력 및 예산 확충을 통한 여건 개선

- (인력 보강) '20년 개소 대비 73%(+19명) 증가

* ('20년) 26명 → ('21년) 40명 → ('22년) 45명 → ('23년) 45명

- (예산 증액) '22년 대비 17.6%(+10.9억) 증액

* ('20년) 31.9억 → ('21년) 53.1억 → ('22년) 61.8억 → ('23년) 72.7억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윤리센터 기능 강화 및 스포츠 인권보호 문화 조성

○ 추진 내용

- (윤리센터 기능 강화)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절차적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제도개선 추진사항

- (조사) 윤리센터 조사불응, 조사방해 및 은폐 시 과태료 부과
- (재심) 윤리센터 각하·기각 결정에 신고인 등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
- (징계요구) 문체부 징계요구에 대한 처리시한(90일)을 명기하고 미 징계시 사유제출 의무화

- (스포츠 인권보호 문화 조성) ▲선수·지도자 간 인권 상생을 위해 현장 실효성이 높은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가칭)* 마련,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 사업 고도화 추진 및 현장 활동 권한 마련

* 신체접촉 종목(레슬링 등) 훈련방식, 지도자와 선수 간의 상호 예절 등 포함

○ 추진 방법

- (윤리센터 기능강화) 사건처리 기한 명시, 센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마련 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
- (스포츠 인권보호 문화 조성)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가칭) 배포 및 자율 확산 지원(체육단체와의 협업 등), 인권감시관 활동 권한 및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검토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윤리센터 기능 강화 및 제도개선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 (문체부-윤리센터-체육단체)
2/4분기	○인권감시관 활동 권한 및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마련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가칭) 확산 관련 사업계획 수립
3/4분기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가칭) 확산 관련 사업 시행
4/4분기	○윤리센터 기능 강화 등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국회통과)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7,868	7,868	7,613	△255	△3.2
국비	7,868	7,868	7,613	△255	△3.2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신고사건 처리율*						최근 2년간 (‘22~’2310.) 당해 처리율 (49.1% → 43.8%)을 고려, 50%로 설정
○ 성과목표치 산식 : 총처리건수/총접수건수 ×100 → (2024년 이후) (당해년도 신고 접수 건 중 처리건수/당해년도 신고 접수 건수)×100	* 스포츠 윤리센터 개소 (‘20.8.5)	예방 교육 실시 (10,000명)	신고사건 처리율 (69.8%)	신고사건 처리율 (77.9%) * 2023년	신고사건 처리율 (50%)	

* 신고 사건 처리 : 스포츠윤리센터 접수된 사건에 대한 징계요청, 수사의뢰, 감사의뢰, 기관경고, 기각, 각하, 권고, 직권조사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

□ 기대효과

- 체육계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근절 등 체육계 공정성 제고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인재양성과	담당자	조은호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3-3146
------	--------------------	-----	---------	------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과제개요

- 선수촌, 학교, 관련 협회·단체 등 소속 운동선수 대상 전문강사 파견을 통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및 상담 연계 지원

□ 그간의 추진실적

-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및 상담 연계 지원
 - 훈련, 합숙, 대회 등 일정 수행이 중심이 되는 특수성으로 폭력예방교육 참여 기회가 부족한 체육인*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
 - * 학교·선수촌·협회·연맹·단체 소속 운동선수, 지도자, 대회 지원인력 등
 - ** 교육 후 피해 등 상담 요청이 있을 경우 상담 연계 지원

<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추진 현황 >

(단위: 회)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10월 말
교육횟수	32	410	398	269	89

※ ('19년) 중앙 특화교육 추진 → ('20년~) 17개 시·도(18개 권역) 교육으로 확대

- 수요자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지원
 - '체육인 대상 맞춤형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지원 ('19년~현재)
 - * ('19년 2종 제작) 선수 대상 교육계획안, 지도자 대상 교육계획안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성폭력, 성희롱 등에 대한 체육계 내 민감성 제고 및 예방 인식 확산을 위한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

○ 추진 내용

- 교육 참여 기회 부족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 운동선수, 지도자, 대회인력 등 교육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확대

※ 시·도 교육청, 대한체육회, 체육 관련 협회·연맹·단체 등 협업을 통한 교육대상 발굴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2/4분기	·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3/4분기	·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계속)
4/4분기	·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계속) · 사업평가 및 사업 결과보고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증 감	
	예산	집행		증감액	증감률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4,147 (808)	4,147 (808)	0 (0)	△4,147 (△808)	△100.0 (△100.0)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 기반 구축**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784 (0)	784 (0)	3,415 (816)	2,631 (816)	29.8 (100.0)
국비	808	808	816	8	1.0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예산의 일부를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에 집행

** ('24년~) 기존 세부사업 폐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 기반 구축’으로 내역사업 이관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참여자 인식개선도(점)	83.6	84.1	88.8	90.0 (6월 말기준)	89.4	사업결과 보고서
○ 성과목표치 산식 : 폭력예방 이해증진, 인식변화, 실천의지 등 5개 항목 조사 결과의 평균값						

※ 최근 2년(2022년, 2023.6월 말 기준) 실적 평균치를 목표로 설정

□ 기대효과

-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 실시로 성폭력, 성희롱 등 폭력에 대한 체육계 내 민감성 제고 및 예방 인식 확산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담당자	임재훈 사무관 이세민 주무관	전화번호	02) 2100-6442 02) 2100-6434
------	------------------	-----	--------------------	------	--------------------------------

□ 과제개요

-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 고용, 교육, 재화·용역 등 영역별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실질적 구제를 위한 시정명령 및 제재 규정 등 마련

□ 그간의 추진실적

- 20대 국회 법률안 4건 의원발의 * 임기만료 폐기 3건, 철회 1건
- 21대 국회 법률안 1건 의원발의
 - 성희롱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미이행 기관에 대한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명령권 도입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유정주의원 대표발의)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관련 발의법안에 대한 입법 지원
- 추진 내용 및 방법
 - 기 발의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유정주의원 대표발의) 관련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관련 법안 발의 시 부처의견 제시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 입법 지원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4/4분기	- 관련 법률안 입법 지원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양성평등기본법」 내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명령권 근거 마련	-	-	관련 의원입법안 발의 및 국회 입법 논의 지원	관련 법 개정안 국회 입법 논의 지원 등	관련 법 개정안 국회 입법논의 지원 등	

기대효과

○ 성희롱 행위에 대한 시정을 이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도입함으로써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기대됨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담당자	최형운 사무관 김다영 주무관	전화번호	02) 2100-6392 02) 2100-6429
------	-----------------	-----	--------------------	------	--------------------------------

□ 과제개요

- 취업규칙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조치사항 반영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관련 조치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추진

□ 그간의 추진실적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조치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토록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 20대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안*(18.3월 의원발의) 임기만료 폐기
 - * 권미혁의원 발의안('18.3월), 8.28. 환노위 전체회의 상정
- 법인 대표이사가 직장 내 성희롱의 직접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포함 검토
 - 20대 국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임기만료 폐기
 - * 임이자의원 발의안('18.5월)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가능 여부 연구용역 실시 ('18.12월)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관련 조치의무 미이행 시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법률」 개정 완료 ('21.5월)
- 법인 대표이사가 직장 내 성희롱의 직접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제출('23.10월)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상향 조정
(’23.11월 법사위 계류중)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제13조제4항이 사실상 취업규칙 기재의무와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는 만큼,

①사업장 감독 시 동 의무의 이행 여부 집중 점검·지도 및 ②신고사건 조사 시 예방지침 마련 여부 확인 → 행정지도하고 미이행시 차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점검 실시

* 근로기준법 개정 여부는 동 조항의 효과성 분석 등을 전제로 신중히 검토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관련 조치의무 미이행 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안착 지원
-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지속 추진

* ’23년내 법 개정완료 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안내 등 시행 준비

○ 추진 내용

- 사업장 감독 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작성 및 게시여부 집중 점검·지도, 표준 지침(안) 배포 등 사업장 지원
- 고용상 성차별 등 노동위원회 시정제도(22.5월 시행)의 현장 안착
-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 추진 방법

- 업무매뉴얼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점검 관련 사항 반영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홍보 강화(리플릿, 포스터 배포 등)
- 남녀고용평등법 의원안 중심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현장 안착 지원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심의 지원(법 개정시 현장안착 지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관련 사업장 점검·지도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현장 안착 지원(계속)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심의 지원(법 개정시 현장안착 지원)(계속)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관련 사업장 점검·지도(계속)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심의 지원(법 개정시 현장안착 지원)(계속)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관련 사업장 점검·지도(계속)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심의 지원(법 개정시 현장안착 지원)(계속)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관련 사업장 점검·지도(계속)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제출	-	-	-	개정안 국회 제출	법 개정	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작성 및 게시 여부 점검·지도	-	-	996		990개소	지방 고용노동관서 사업장 점검 결과 (계획 1,000개소 * 점검 99% = 990)

□ 기대효과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이 사실상 취업규칙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유도
-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에 대한 제재 정비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송미나 서기관 임동훈 주무관	전화번호	044) 202-7446 044) 202-7472
------	------------------	-----	--------------------	------	--------------------------------

□ 과제개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건전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고용평등 근로감독 강화
- 성희롱사건 해결 이후 2차 피해 등에 대한 사후 행정지도 추진
- 성희롱 사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조직문화 개선 전문가 컨설팅 활성화
- 남녀고용평등 전담근로감독관 전문성 강화 추진
-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전문 상담기능 보강 등 피해자 권리구제 기능 강화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범위를 사외 전문가까지 확대 추진 검토하고 여성위원 위촉 비율 제고 지도

□ 그간의 추진실적

- '18년부터 모든 근로감독* 유형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분야 점검
 - * '19년 25,415개소, '20년 5,740개소, '21년 11,192개소, '22년 27,175개소
 - ↳ '20년, '21년의 경우 코로나 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감독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개정 완료('19.9.1 시행)
 - *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근거 마련
- 건강·고용보험 연계 데이터를 활용한 고용평등(스마트) 근로감독 실시
 - * 감독건수(개소): '17년 555 → '18년 659 → '19년 700 → '20년 400 → '21년 868 → '22년 996
- 성희롱 사건 발생사업장에 조직문화 컨설팅을 활용토록 안내
- 전국 지방관서에 고용평등업무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18.9.1)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실시
 - * 2018년도(18회), 2019년도(7회), 2020년도(4회), 2021년도(2회), 2022년도(2회)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대상 확대 및 여성 위촉 비율 저조 사업장 대상 위촉 지도

* ('23년 8월 기준) 4,890개소 위촉<여성: 26.7%>

** '19년, '22년 '23년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워크숍 등을 통해 여성 비율 제고 지도 ('20년과 '21년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업무수첩을 배부하는 것으로 워크숍 대체)

○ 직장 내 성희롱 등 피해 상담수요에 적합한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및 심리치유 연계·지원('18~)으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 상담실적(건): ('18) 9,895 → ('19) 10,829 → ('20) 11,328 → ('21) 11,892 → ('22) 13,198 → ('23.10) 8,086

** 심리지원(명, 회수): ('18) 42 / 331 → ('19) 118 / 831 → ('20) 120 / 823 → ('21) 151 / 919 → ('22) 171 / 968 → ('23.10) 105 / 675

- 전담 인력 대상 교육('23.5), 간담회 개최(9회), 성과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 ('23.9) 등 상담실 운영의 내실 도모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직장문화개선 유도, 근로감독관 역량 및 성인지 감수성 강화

○ 추진 내용 및 추진방법

-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된 사업장의 경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인 조사 착수
-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하여 모성보호 제도 위반 신고사업장 등을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감독 대상풀(pool)에 포함하여 점검대상의 다각화를 통한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근로감독 강화
- 사업장 조직문화에 대한 진단도구를 사업장 감독 시 활용하여 직장 내 성희롱이 유발되는 조직문화 등에 대해 개선지도(※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에 한함)
-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업무 매뉴얼 보강

- 청·대표지청(8개소) 내 고용평등전담 통합 상담창구* 운영으로 상담에서 권리 구제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

* 방문·상담 대표전화·온라인 상담 시스템 구축·활용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여성 위촉 비율의 제고 등 개선 노력 지속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고용평등전담 통합 상담창구 운영(방문·대표전화·온라인 상담 등)
2/4분기	· 근로감독관 교육 실시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워크숍 실시 · 고용평등전담 통합 상담창구 운영(방문·대표전화·온라인 상담 등)
3/4분기	· 근로감독관 교육 실시(계속) · 고용평등전담 통합 상담창구 운영(방문·대표전화·온라인 상담 등)
4/4분기	· 근로감독관 교육 실시(계속) · 고용평등전담 통합 상담창구 운영(방문·대표전화·온라인 상담 등)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2,480	2,130	1,790	△690	△27.8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민간경상보조)	1,215	1,214	-	△1,215	△100.0
- 고용평등상담지원 (직접수행)	-	-	551	551	100.0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1년)	(2022년)	(2023년) 추정치		
○ 성과지표명 : 고용평등 상담실적(단위:건)	11,892	13,198	9,703	13,110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기관 제출 상담실적
○ 성과목표치 산식 : '20~'22년 평균 상담실적× (1+'20~'22년 상담실적 연평균 증가율)					

□ 기대효과

-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된 사업장에 대한 감독 기법, 감독관 역량 등의 강화로 해당 사건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 유도 효과도 기대
- 정부 직접 수행으로 상담에서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한 창구 단일화로 권리구제의 신속성·효율성 제고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장순남 사무관 송미나 서기관	전화번호	044) 202-7721 044) 202-7446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정종규 사무관 민세걸 사무관		044) 202-7476 044) 202-7471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폭력예방교육과

□ 과제개요

<고용노동부>

- 사업장이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표준 교육 동영상 제작('20년~)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양성 과정 기준 마련 추진

<여성가족부>

- 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 등 교육 지원(고용부, 여가부)
 - 소규모 사업장 등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실시 및 교육 콘텐츠 제공·전문강사 연계(여가부)

□ 그간의 추진실적

<고용노동부>

-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 동영상 제작('19.12월, 21.12월, '22.12월)
- 인사 담당자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 제작('21.11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양성과정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20.10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제작('22.12월)

<여성가족부>

- 교육 기회 및 접근성 취약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사회초년생(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인턴·신입사원 등) 등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추진 현황 >

(단위: 회)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10월 말
교육횟수	337	191	150	179	281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 수요자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및 활용 지원
 - '사회초년생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19년~현재)
 - * ('19년 7종 개발) 강의안(PPT) 3종, 강의지침서(교재) 3종, 동영상 1종
- 분야별 교육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 자체 제작 콘텐츠, 타 부처·민간기관 개발 콘텐츠를 추천콘텐츠로 선정·보급('14년~현재)

< 추천콘텐츠 제공 현황 >

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통합교육
141종	61	25	6	13	36

* 폭력예방 추천콘텐츠 총 141종 ('23년 11월 기준)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시스템 등을 통해 보급

□ 2024년도 시행계획

<고용노동부>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
 - * 사업장 내부의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고,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발생한 사건을 토대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 지원
- **추진 내용**
 -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배포
- **추진 방법**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자료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탑재 등 온라인 홍보

<여성가족부>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직장 내 성희롱 등 폭력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예방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

○ 추진 내용

- 교육 기회 및 접근성 취약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 관계부처,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연합회 등 협업을 통한 교육대상 지속 발굴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2/4분기	·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3/4분기	·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계속)
4/4분기	·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계속) · 사업평가 및 사업 결과보고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증 감	
	예산	집행		증감액	증감률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4,147 (808)	4,147 (808)	0 (0)	△4,147 (△808)	△100.0 (△100.0)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 기반 구축**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784 (0)	784 (0)	3,415 (816)	2,631 (816)	29.8 (100.0)
국비	808	808	816	8	1.0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예산의 일부를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에 집행

** ('24년~) 기존 세부사업 폐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 기반 구축'으로 내역사업 이관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참여자 인식개선도(점)	83.6	84.1	88.8	90.0 (6월 말기준)	89.4	사업결과 보고서
○ 성과목표치 산식 : 폭력예방 이해증진, 인식변화, 실천의지 등 5개 항목 조사 결과의 평균값						

※ 최근 2년(2022년, 2023.6월 말 기준) 실적 평균치를 목표로 설정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맞춤형 교육콘텐츠 배포
2/4분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맞춤형 교육콘텐츠 배포
3/4분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맞춤형 교육콘텐츠 배포
4/4분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맞춤형 교육콘텐츠 배포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10월 기준)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고용평등환경개선 지원	2,480	2,134	1,790	△690	△27.8
- 사업장 교육자료 제작 (국비)	79	50	-	△79	△100.0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제작	1	1	1	1	1	교육자료 제작 여부

□ 기대효과

<고용노동부>

-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통해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여성가족부>

- 소규모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실시 및 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직장 내 성희롱 등 폭력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예방 인식 제고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송미나 서기관	전화번호	044) 202-7446
			임동훈 주무관		044) 202-7472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임재훈 사무관		02) 2100-6442
			이세민 주무관		02) 2100-6434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 과제개요

<여성가족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 신고 및 3개월 내 여성가족부로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
- 성희롱 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추진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법적 근거 마련
-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 요청 시 조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제도화
- 성폭력 피해자의 해고 외 불이익 처분에 대한 규정 구체화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 민간위원에 성범죄 전문가 참여 등 성범죄 관련 심사 실효성 강화
 - 공무원 성범죄 관련 소청사건 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청사건에 대한 감경 결정의 엄정성 강화, 성 비위 소청심사의 실효성 강화 등 추진

□ 그간의 추진실적

<여성가족부>

-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 요청 시 조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성희롱 예방지침 표준안' 명시 및 각급 기관 통보·시행('20.1.)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유형을 구체화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 ('20.10.20.)

-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로 통보를 의무화하고, 3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제출 등 사건 대응 체계 마련
 -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정·보완 요구 등 법 개정*
 - * 「성폭력방지법」 '21.1.12 개정 / '21.7.13 시행, 「양성평등기본법」 '21.4.20 개정 / '21.10.21 시행
-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수사기관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법」 개정('21.7.13. 시행)
-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제출기간 단축(3개월 → 1개월), 사건 통보·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 제재조치 신설
 - * 「성폭력방지법」 '23.4.18. 개정 / '24.4.19. 시행

<인사혁신처>

- 비상임 민간위원에 성비위 관련 전문가 및 여성위원 임명
 - ※ 성비위 관련 전문가 임명('20. 5. 4./1명), 여성 민간위원 임명('21. 1. 4./1명, '22. 8. 4./3명)
- 성 비위 감경 제한 및 고려요소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 위원의 성별 균형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시각 반영
 - ※ 비상임위원 7명 중 3명을 여성위원(42.9%)으로 임명·운영
- 징계처분의 실효성 확보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중징계 소청사건에 대한 감경 시 의결정족수 강화(출석 1/2 → 출석 2/3 합의)
 - ※ 「국가공무원법」개정('21. 12. 9. 시행)
- 성 비위 사건 피해자의 2차 피해 및 명예훼손 방지 등을 위한 소청 결정 공개기준 마련('22. 9. 23)
- 성 비위 소청사건 피해자 진술권 보장 근거 마련
 - ※ 「소청절차규정」개정('23. 6. 7. 시행)
- 중징계·성비위 사건 부심위원 지정 의무화 및 피해자와 동일 성별의 위원을 주심 또는 부심 위원으로 지정 명문화
 - ※ 「소청업무처리지침」개정('23. 10. 18. 시행)

□ 2024년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강화를 위해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24.4.19.)
- 중대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시정·보완 요구

○ 추진 내용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등에 대해 필요 시 현장점검 실시 및 시정·보완 요구 등 조치
- '24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개정 및 배포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24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시행 - 주요 성희롱·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
2/4분기~4/4분기	- '24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시행 - 주요 성희롱·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20년 표준안 마련	'21년 표준안 마련	'22년 표준안 마련	'23년 표준안 마련	'24년 표준안 마련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여부

<인사혁신처>

- 성 비위* 소청사건(중징계)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주심 또는 부심위원으로 지정하여 객관적인 성별 시각 반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

- 성 비위 소청사건 피해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및 의견 청취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 추진

- 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 제기 사실 및 소청 결과를 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통보토록 하는 등 근거 마련 추진

* 「국가공무원법」개정 추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성비위 사건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주심(부심) 위원 심사(연중)
2/4분기	· 성비위 사건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주심(부심) 위원 심사(연중)
3/4분기	· 성비위 사건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주심(부심) 위원 심사(연중)
4/4분기	· 성비위 사건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주심(부심) 위원 심사(연중) · 「국가공무원법」개정 추진(성비위 소청사건 결과 등에 대한 피해자 통보 의무 근거 마련)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주심(부심) 위원 참여도						
○ 성과목표치 산식 :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 주심(부심) 사건 수 / 전체 성비위 사건(중징계) 심사건수	-	-	75%	81.8%	83%	'22년 실적 (81.8%)

□ 기대효과

<여성가족부>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조직 내 사건 은폐 방지 및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조치 시행 등 기대

<인사혁신처>

- 성 비위 소청사건에 객관적인 성별 시각 반영 및 피해자 진술권 보장으로 엄정하고 공정한 소청심사 가능
- 성 비위 소청사건의 제기 사실 및 결과를 피해자가 알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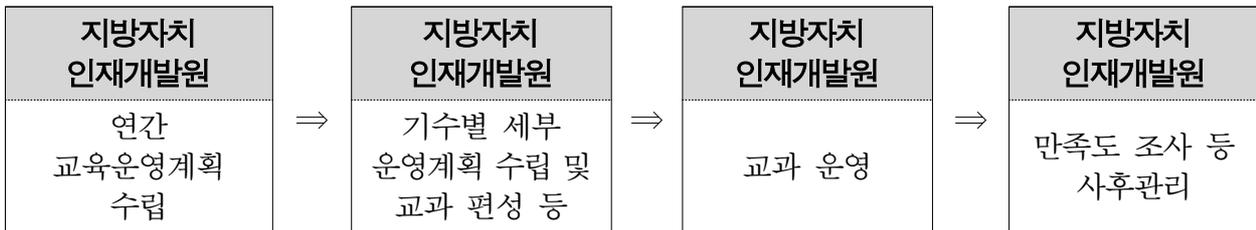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담당자	최형윤 사무관	전화번호	02) 2100-6392
			박용준 사무관		02) 2100-6164
			김민성 사무관		02) 2100-6168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강하나 사무관		044) 201-8665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

□ 과제개요

<행정안전부>

- (추진목적) 지자체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양성평등 의식의 내재화를 통해 건전한 공직 문화 조성
- (주요내용) 지방고위공무원(3·4급) 및 5급 승진자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운영 시 여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과목 편성·운영
- (추진체계)



<인사혁신처>

- 공공부문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문화 조성
 - 신규·승진 공무원 대상 성희롱 사건 대응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행정안전부>

- 지자체 5급 승진의결자 대상 『5급승진리더과정』 운영 시 양성평등 교육 편성 및 실시
 - 4대폭력 예방을 통해 만드는 건강한 조직문화(2H, 제5기 5급과정, 357명 교육)

- 지방고위공무원(3~4급) 대상 폭력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편성·실시
 - 4대 폭력 예방 I, II(고위·고급·중견 합동, 총 270여명 교육/2.21., 2.23.)
 - 양성평등과 공직사회(고위 38명 교육/5.4.)

<인사혁신처>

- 「성폭력예방법」 등에 따라 직장교육 등을 통해 초 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인권 및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양성평등·성인지 감수성 교육 모듈 개발 전파 (2018년 ~ 2019년)
 - 기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탈피하여 양성평등·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 개념을 확장한 수용성·효과성 높은 신규 교육과정 개발·운영
 - * 2018년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대상 시범교육 실시 → 2019년 각 부처 전파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직급별 신규·승진 공무원 대상 기본교육과정 에서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등 실시
 - * 고위정책과정, 신입관리자과정, 5급 승진관리자과정 및 6급 이하 신규자과정 등 대상 연간 2,000여명 이상

□ 2024년도 시행계획

<행정안전부>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지방 5급 승진의결자, 고위공무원(3~4급) 등 대상 여성폭력예방 교육 실시
- 추진 내용
 - 지방 중간관리자 또는 간부급 공무원 대상 폭력예방 교육 지속 운영 및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 교과 발굴·운영 등
- 추진 방법
 -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과 협업을 통한 교과발굴·우수강사 초빙 및 교육 실시

<인사혁신처>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공공부문 여성폭력 예방 문화 조성을 위해 성폭력·성희롱 예방 등 양성평등·성인지 관련 교육을 각급 교육단계별 실시

○ 추진 방법

-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에 관한 일반지침인 「2024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각 부처 및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교육 실시 안내('23. 11월)

○ 추진 내용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규·승진 공무원 대상 기본교육과정*에 양성평등·성인지 관련 교과목 편성·운영

* 5급 승진자 1,500여명, 5급 신입관리자 360여명, 6급 이하 신규자 1,000여명 등

- 각 부처 재직자 대상 직장교육 및 각급 교육훈련기관 신규·승진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에도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이 편성될 수 있도록 권장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2024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 주요내용 안내
2/4분기	각 부처·교육훈련기관별 교육 운영(연중)
3/4분기	각 부처·교육훈련기관별 교육 운영(연중)
4/4분기	각 부처·교육훈련기관별 교육 운영(연중)

○ 예산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국가인재원 신규·승진 공무원 대상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한 양성평등·성인지 교육 실시	1,471명	2,916명	2,133명	2,664명 (11월 말 기준)	2,500명	연간 예상 교육인원
○ 성과목표치 산식 : 신규·승진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별 교육 예상 인원의 합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지방공무원 대상 여성폭력방지교육
2/4분기	지방공무원 대상 여성폭력방지교육
3/4분기	지방공무원 대상 여성폭력방지교육
4/4분기	지방공무원 대상 여성폭력방지교육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여성폭력 예방 관련 교과목 만족도(점)	93.7	93.5	91.98	85.48	91.98	· '23년 만족도 점수가 다소 낮았으나, 교과목 개선 및 우수 강사 발굴 등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자 작년('22년) 실적치로 목표치 설정
○ 성과목표치 산식 : 교과목별 만족도 평균						

□ 기대효과

<행정안전부>

- 지방 공무원들의 여성폭력방지대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자체 양성 평등 공직 문화 확산

<인사혁신처>

- 공직사회 내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문화 조성에 기여
- 신규·승진 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대응능력, 양성평등 의식 및 성인지 감수성 함양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담당자	우수희 주무관	전화번호	063) 907-5156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		박한진 사무관		044) 201-8224

□ 과제개요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피해자, 제보자의 신고사건 접수 및 상담, 관계기관 이송, 접수사건 처리 및 처리결과 모니터링

□ 그간의 추진실적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신고센터」 설치·운영('18.3.~)
- '기관장 전담신고 창구' 개설·운영('20.12.~)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신고센터 추진실적>

(단위 : 건수, '18.3.8.~'23.9.30.기준)

연도	총계	공공 부문					민간 부문
		소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합계	808	495	112	137	177	121	313
'18	360	234	26	50	85	73	126
'19	150	99	20	32	29	18	51
'20	118	64	5	26	21	12	54
'21	128	71	7	19	35	10	57
'22	78	42	6	12	10	14	36
'23	60	41	10	14	10	7	19

□ 2024년도 시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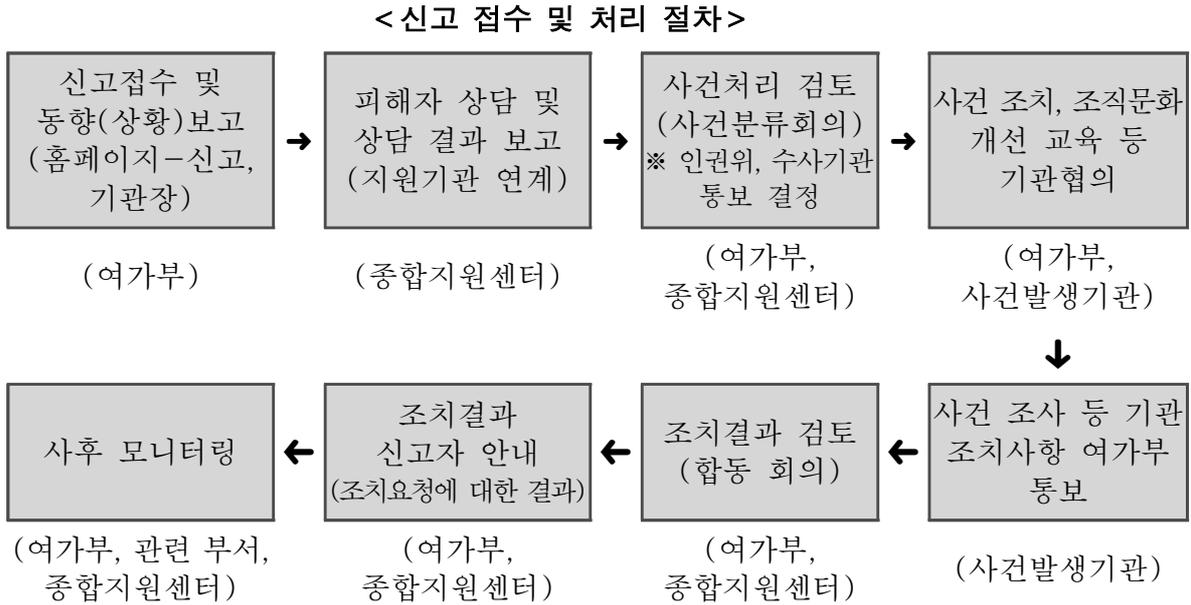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신고센터에 사건이 접수된 기관의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과 연계하여 운영

○ 추진 내용

- 신고센터에 사건이 접수된 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연계·운영

* 기관별 성희롱 방지 및 대응체계,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 성희롱 방지 인식 등 진단 및 개선 권고

○ 추진 방법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 해당 없음

□ 기대효과

- 기관 내 신고가 어려운 피해자가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사건 발생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연계하여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 도모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담당자	박용준 사무관	전화번호	02) 2100-6164
------	-----------------	-----	---------	------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 군내 성폭력 실태 진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대응계획 수립 및 맞춤형 교육 강화

○ 주요내용

-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 수립 및 추진
-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기능 확대 및 실효성 제고
- 전 장병 맞춤형 성인지 교육 강화
- 군 성폭력 실태조사

□ 그간의 추진실적

○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 수립 및 추진

- '23년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 수립·시달('23. 1월)
 - * 현장 중심의 성폭력 예방활동, 계급·직책별 맞춤형 성인지 교육 내실화 등
- 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 강조기간 운영(2회) : 하절기 및 연말연시
 - * 지휘관 주관 특별 정신교육 / 토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규 교육, 예방활동 '붐'조성, 시설물 취약요소 점검활동 (불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등 장병 이용 공용시설물 점검)
 - * 신분별 맞춤형 사례 토의 시행 (예시 : 음주회식, 불법촬영 사례 등)
- 성희롱·성폭력 예방 현장 컨설팅 시행
 - *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와 연계한 야전부대 현장 컨설팅 (총 22개 부대, '22년 대비 +6개 부대)
 - * 여가부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사업 협업 추진('23. 3월~12월 / 총11개 부대)

-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 부대관리훈령 개정('23.12.22.)
 -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개정 ('23.10. 6.)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 ('23. 7.17. 법사위 2소위 계류)
- 적시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군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작성 / 배포 ('23. 12월)
 - * 「부대관리훈령」개정에 따른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 및 성희롱 사건 조사간 사용할 수 있는 Q&A 및 가이드라인 추가
- 생활 속 실천을 통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의식 확산
 - * 성희롱·성폭력 없는 국방환경 조성 리플릿 제작 배포('23. 4월)
 - * 경각심 제고 및 예방효과 제고를 위한 군내 성희롱·성폭력 사례집 발간('23. 6월)
 - * 성희롱·성폭력 예방 콘텐츠 공모전 개최 ('23. 2월~7월)로 장병의 직접 참여를 통한 성인지 감수성 제고, 장병의 생활 속 예방과 행동 개선 기대
 - 분야 :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UCC, 포스터, 쇼츠, 영상부문 (총 508작 응모)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24시간 상담전화 운영('23. 10월)
 - * 국방헬프콜 1303내 성고충전문상담관 신규 배치 / 운영
 - ⇒ 상담공백 ZERO화 및 상담 접근성 제고로 언제 어디서나 피해자에 대한 적시적 지원 가능 (일과 후, 주말 휴일 등 공백없는 피해자 상담·신고 접수 시행)

□ 2024년도 시행계획

- 민관군 합동위원회 권고안(15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지속)
 - 사각지대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구성원의 인식 제고를 통해 성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군 맞춤형 참여형 조직 문화 개선 및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 수립 및 추진
 - '24년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 수립·시달
 - * 지휘관 중심의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 맞춤형 성인지교육 내실화 등

- 국방부 및 각 군 주관 예하부대 성폭력 예방활동 실태 점검
- 하절기 및 연말연시 성폭력 특별 강조기간 운영
- 전 장병 맞춤형 성인지교육 강화(지속)*
 - * 초임자, 지휘관, 사건조사 담당자, 피해자지원 담당자 등 직책 고려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맞춤형 콘텐츠 최신화
- 성폭력 실태조사(연구용역)
 - 연도별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군 성폭력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성폭력 관련 정책 수요와 법규·제도 개선 소요를 도출
- 성희롱·성폭력 예방활동 이행실태 야전부대 현장 컨설팅
 - *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동행, 정책 및 제도 이행실태 현장 확인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성인지 교육	1,524	1,524	1,669	145	9.5
○군 성폭력 실태조사	191	146	174	△17	△8.9
○야전부대 현장 컨설팅	-	-	-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성인지 교육 이수율	95%	95.2%	97.3%	96.7%	95%	교육 이수자 / 전 간부
○ 성과목표치 산식 : 이수자/교육대상자						
○ 성과지표명: 군 성폭력 실태조사	.	.	1건	1건	1건	연구용역 건수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목표치 산식 : 용역건수						
○ 성과지표명: 야전부대 현장 컨설팅					15개 부대	반기별 야전부대 현장 컨설팅 계획
○ 성과목표치 산식 : (계획) 반기별 5개, 총 10개 부대 (수시) 5개 부대	.	.	.	-		

□ 기대효과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대군 신뢰도 제고

담당부서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양성평등정책팀	담당자	중령 강정은 중령 황재근 안효진 사무관	전화번호	02) 748-5171 02) 748-5109 02) 748-5175
------	------------------------------	-----	-----------------------------	------	--

3-2-3-②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3-2-3-③

군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및 수사 역량 강화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 과제개요

○ 사업목적

- 효과적인 군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법규·제도·인력 등 지원
- 체계를 강화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함

○ 주요내용

- 피해자 지원 인력확대 및 역량 강화
- 수사기관 신고전 피해자 지원 지원지침에 의거 피해자 누구나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조성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시 외부전문가(제한 시 성고충전문상담관) 참여 의무화
 - * 민간인 성폭력 예방·피해자 지원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 그간의 추진실적

- 성고충전문상담관 상담인력 정원 확대에 따른 채용 진행(총 3회, 43명 채용)
 - * 정원 : '21년 50명(군단급) → '22년 103명(사단급) → '23년 150명(사단급)
-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성폭력대책 소위원회 개최(반기단위)
 - * 전반기 : '23. 4.19.(수) / 후반기 : '23.11.10.(금)
- 군내 성희롱·성폭력 24H 상담 전화 운영 개시('23.10월)
 - * 일과 이후·휴무 간 발생할 수 있는 상담 공백 문제 개선
 - * 국방 헬프콜 1303 내 성고충전문상담관 배치, 24H 상담 지원
-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 사건처리관계관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대외 위탁교육 시행
 -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총 6개 과정(14회, 총 계획 420명 / 수료 509명 (121%))

- 성고충전문상담관 직무역량 강화 및 심리소진방지 워크숍 (연1회, '23.12월)
 - * 초빙강연·동료 슈퍼비전·토론 / 상담관 심리소진방지 프로그램 등

□ 2024년도 시행계획

- 성고충전문상담관 채용 (지속) : 정원 확대 및 퇴직으로 인한 공석 직위 채용
- 성고충전문상담관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연중 1회)
- 사건지원 및 처리관계관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대외위탁교육 시행
 -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협조
-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성폭력대책 소위원회 개최(반기단위)
-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 구축('24. 7월 예정)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6,628	6,344	8,135	1,507	69.6
○ 양성평등위원회 성폭력대책 소위원회 개최	-	-	-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성고충전문상담관 인력 증원	48명	47명	101명	134명	142명	민간 상담인력 풀을 고려하여 정원(150명) 대비 95% 충원 목표
○ 성과목표치 산식 : 정원 대비 95% 충원 인원 수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성폭력대책 소위원회 개최	.	.	1회	2회	2회	반기단위
○ 성과목표치 산식 : 회의 개최 횟수						

□ 기대효과

- 성폭력 사건처리 및 상담지원 인력 확대 / 역량 강화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담당부서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담당자	소령 방종훈 곽태경 주무관	전화번호	02) 748-5174 02) 748-5177
------	-------------------	-----	-------------------	------	------------------------------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

□ 과제개요

○ 사업목적

-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 보장 및 징계처분 결과 통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참여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여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징계위원회 개최 전 위원회 일정 안내하여 참여권 보장
- 징계위원회 참석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 동석 가능
- 징계처분 결과 피해자 통지 제도 마련

□ 그간의 추진실적

○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 진술권 보장 ('19년)

-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 피해자에게 개최 일시 안내
-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신뢰관계인 동석 가능
 -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7조·제28조

○ 징계기준 징계처분 결과 피해자 통지 위한 법령 개정('23년 완료)

- * 군무원 성 관련 사건 징계시효(3년 → 10년) 개정: 군무원인사법('22.12.13.) 제41조 개정
- * 2차 피해 관련 징계기준, 개정된 성희롱 징계 양정, 강제추행과 추행 분리 등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3. 6.16.) 개정
 - * 피해자 요청 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완료)
- 군무원인사법(신설 '20.12.22.) 제40조 징계의 절차 ⑥항
- 군인사법(개정공포 '23.10.31.) 제59조 ⇒ '24.5.1.부 시행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개정완료	-	군무원 인사법 법사위 계류	군무원인 사법 개정 (“22.12.13.)	군인사법 개정 공포 (“22.10.31.)	-	‘23년 목표달성

담당부서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	담당자	소령 채선이	전화번호	02) 748-6818
------	-----------------	-----	--------	------	--------------

3-3-1-①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강화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성폭력방지과

□ 과제개요

<여성가족부-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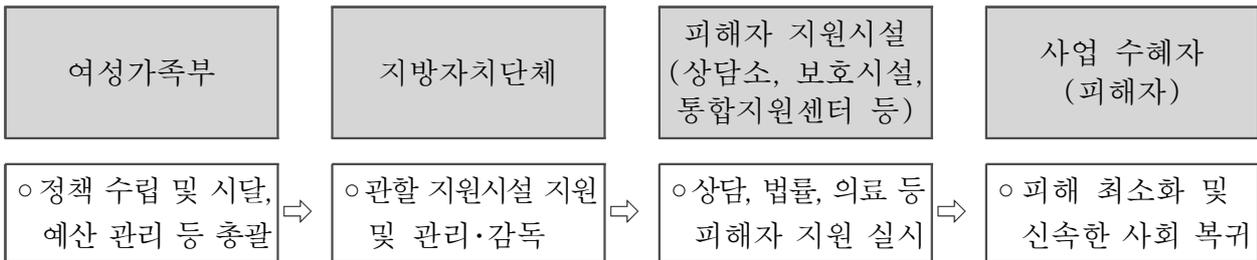
- (목적) 「국정과제: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이행을 위한 광역단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빈틈없는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제공

<여성가족부-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사업목적) 성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 대상 상담·의료·수사·법률·보호·숙식 제공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및 자립지원

○ (추진체계)

<지원 체계>



○ (주요내용)

<'23.11월 국비지원 기준, 단위: 개소>

구분		주요 기능	지원 개소수	
성폭력 상담소	일반	성폭력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 연계, 의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성폭력예방 및 홍보 등	102	80
	장애			2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일반	성폭력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 의료·법률지원, 학업·자립지원 등	35	17
	장애			8

구분		주요 기능	지원 개소수	
	특별 지원	19세 미만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 의료·법률 지원, 학업 및 자립 지원		4
	자립 지원	보호시설 퇴소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공동생활시설		6
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위기 지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및 그 가족 대상 상담, 의료, 수사·법률 서비스 제공(경찰 24시간 배치)	39	16
	아동	성폭력 피해 19세미만 아동 및 지적장애인 대상 상담, 의료, 수사·법률,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경찰 출장)		7
	통합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및 그 가족 대상 상담, 의료, 수사·법률,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경찰 24시간 배치)		16

□ 그간의 추진실적

<여성가족부-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강화>

- 「여성폭력 통합지원체계 구축」연구용역 실시('22.11.)
-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TF 회의 실시('22.11.~12.)
 - * 1차(11.14.) 통합지원체계 및 시범사업 운영안, 2차(12.1.) 유관기관 중앙 기능 검토, 3차(12.8.) 시범사업 계획(안)
-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서비스」시범사업* 실시('23.5.~12.)
 - * 경기·부산 2개소 운영

<여성가족부-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성폭력상담소 운영) 성폭력피해의 상담, 보호,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및 수사·재판 등 동행 지원 등

<상담소 운영 실적>

(단위 : 건)

연도	지원실적					
	합계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지원	기관 연계*	기 타**
'20년	153,221	75,797	30,387	9,904	6,874	30,259
'21년	175,748	87,157	30,556	14,111	8,809	35,115
'22년	175,651	86,326	31,707	13,698	8,222	35,698

* 기관 연계 : 보호시설,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 기타 : 정보제공, 장애인 등록, 국가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신청, 전학 지원 등

○ (성폭력 보호시설 운영)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피해자 의료·법률 지원 등

<보호시설 지원 실적>

(단위 : 건)

연도	총계	심리·정서 지원	수사·법률 지원	의료 지원	학교 문제 지원	자립 지원	기 타
	비율						
'20년	158,991	70,484	1,260	17,500	15,623	19,470	34,654
'21년	143,263	64,044	2,013	19,647	16,865	4,064	26,630
'22년	142,501	59,005	1,038	20,075	11,177	17,875	33,331

○ (해바라기센터 운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을 통합 제공

<서비스 지원 현황>

(단위 : 건)

연도	합계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법률 지원	심리지원	동행서비스	기타*
'20년	380,141	116,758	101,193	57,734	32,712	4,557	67,187
'21년	418,032	129,199	106,742	70,429	33,029	5,359	73,274
'22년	398,980	126,734	103,585	60,185	32,249	4,795	71,432

* 기타 : 정보제공, 사회적 지원(기관연계, 자조모임, 적응훈련), 가족개입 등

□ 2024년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강화>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 확대 실시(광역 5개소)

○ 추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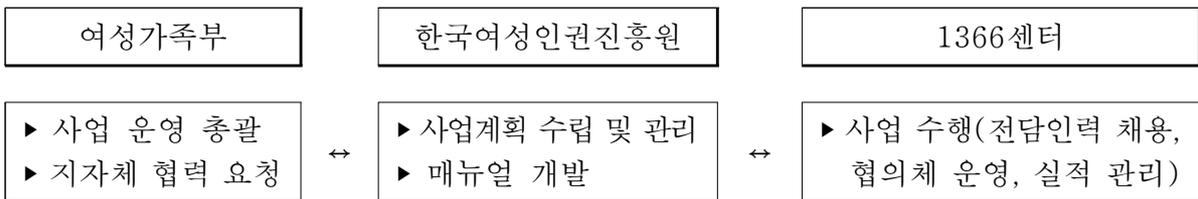
- (사업대상) 복합 여성폭력 피해자 등

- (내용) 공모를 통해 운영기관을 5개소로 확대하고 통합솔루션지원단의 기능에 여성폭력에 대한 광역 단위 총괄기능*을 추가하여 시범 운영

* △ 긴급한 중대범죄 대응 총괄, △ 현안 이슈 종사자 교육 △ 여성폭력지원시설 정례회의 운영 등

○ 추진 방법

- (추진체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운영기관 공모·선정(1월) 및 운영(~12월), 통합 업무지침 매뉴얼 개발·배포(2월)
4/4분기	사업결과 보고(12월)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중앙 총괄기능 수행)	14,233 (200)	14,233 (200)	14,692 (648)	459 (448)	3.2 (224)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시범사업 운영	-	-	-	2	5개소	시범사업 운영기관 개소 수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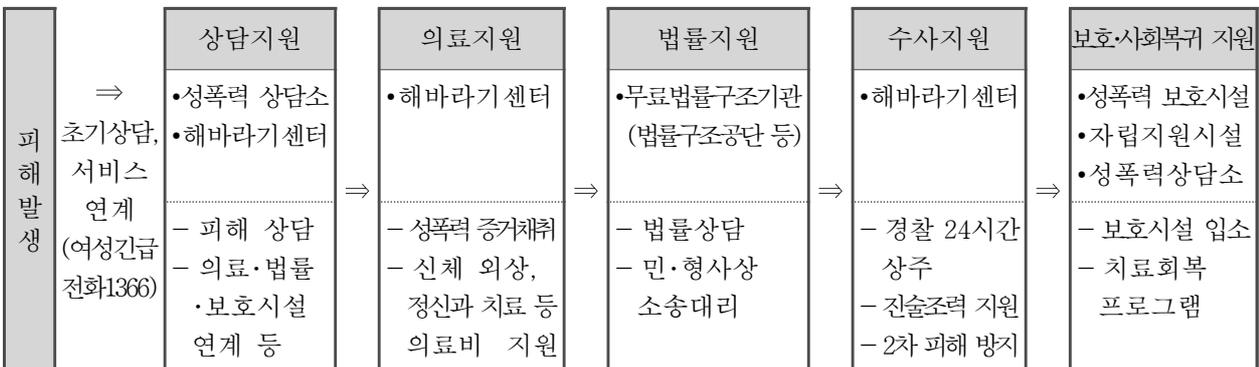
<여성가족부-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성폭력 피해 특성을 고려한 상담·의료·법률·수사·동행지원 등 피해자 중심의
종합형 서비스 지원

○ 추진 내용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한
상담, 의료, 법률 등의 필요한 서비스 지원



- 미성년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 배치 및 운영
*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 : '24년 13개소 각 1명 신규 배치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 19세에 도달한 1년 이상 입소 미성년자 → 6개월 이상 입소 미성년자('24~)

○ 추진 방법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예산 교부(매분기별)
- 성폭력 피해자 운영실적 관리(반기별)
- 미성년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운영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 교부(1/4분기)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리·운영 지원(계속)
2/4분기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 교부(2/4분기)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리·운영 지원(계속)
3/4분기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 교부(3/4분기)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리·운영 지원(계속)
4/4분기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 교부(4/4분기)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리·운영 지원(계속)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폭력 피해자 지원	37,537	36,689	37,354	△183	△0.5
국비	37,537	36,689	37,354	△183	△0.5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실적(천건)	322	345	341	집계중	346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의 성폭력 상담지원 건수의 총계
○ 성과목표치 산식 : 최근 3년간 평균값에 3년간 증감률 평균을 곱한 값						

□ 기대효과

<여성가족부-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강화>

- 광역단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빈틈없는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제공

<여성가족부-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운영을 통해 성폭력피해 특성을 고려한 촘촘한 지원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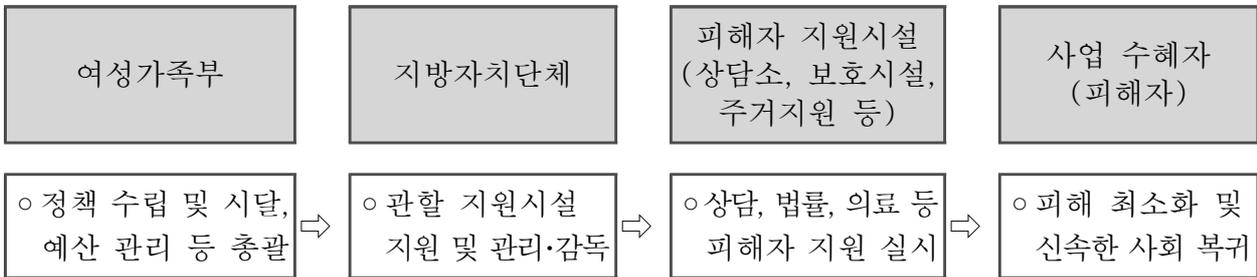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양현순 서기관	전화번호	02) 2100-6306
			유동길 주무관		02) 2100-6307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양재명 사무관		02) 2100-6396
			차경선 사무관		02) 2100-6395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와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의료·보호 등을 지원하고, 무료법률지원으로 스스로 방어·보호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권익보호
- (추진체계)

<지원 체계>



○ (주요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

(국비 지원, '23.1 기준 / 단위 : 개소)

구분		주요기능	지원 개소 수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365일 24시간 위기개입 상담(초기지원), 긴급피난처 운영(7일 이내 긴급 보호), 지역관련 기관 연계(쉼터, 법률, 의료 등)	18	
가정폭력 상담소	일반 (통합)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 연계, 의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예방 및 홍보 등	128	124 (27)
	장애 (통합)			4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일반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 법률지원, 자립지원, 취업정보 제공 등	65	42
	가족			23

구분		주요기능	지원 개소 수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일반	폭력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 제공(입주기간 : 2년(2년 연장가능))	28 (356호)

- 가정폭력피해자 등 지원서비스

구분	내용	지원 실적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임산부·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등	15,171건 (‘22.12월)
치료회복프로그램	집단상담, 미술심리치료, 심신회복캠프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지원	13,601건 (‘22.12월)
무료법률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민·가사 소송 등 법률구조 지원	8,503건 (‘22.12월)

□ 그간의 추진실적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18개소)를 통한 피해자 초기상담, 보호, 전문기관 연계 등 초기지원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국비지원 128개소)을 통한 피해자 상담지원 확대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65개소)을 통한 입소 피해자 숙식제공 등 보호,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지원사업 운영(4개소)
-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남성, 장애인)에 놓인 폭력피해자의 신속 보호·지원을 위한 보호시설 등 설치 또는 시설전환 추진
 -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 및 장애인 피해자 보호시설(일반→가족) 신규 설치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자녀 기준 확대(영유아 → 아동) 및 입소아동 일상생활 신규 지원(교통비 등 연 48만원 이내)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동행지원 등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보호 지원 서비스 제공
- 행안부·법원행정처와 협업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추진 내용

- 통합상담소 전달체계 개편 추진('24.1월~)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분기별)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점검 실시(6-9월)
-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안내 강화 및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기간 연장(1년→2년)(행안부, 법원행정처 협업)
- 무료법률지원사업 위탁 공고·계약 추진(1~3월) 및 사업 수행(4월~)

○ 추진 방법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예산 교부(분기별)
- 가정폭력 피해자 운영실적 관리(반기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등 운영 지원(연중)
2/4분기	-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등 운영 지원(연중) - 가정폭력 관련 지원 시설 현장점검(6-9월)
3/4분기	-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등 운영 지원(연중) - 가정폭력 관련 지원 시설 현장점검(6-9월)
4/4분기	-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등 운영 지원(연중)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양성평등기금, 국비)	39,199	37,907	39,615	416	1.1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실적(천건) ○성과목표치 산식 :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실적, 1366 연계(지원) 실적,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합산 실적	952천건	995천건	1,015천건	집계중	998천건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실적, 1366 연계(지원) 실적,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지원 합산

□ 기대효과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 특성을 고려한 촘촘한 지원서비스 제공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담당자	이현진 사무관 장수진 사무관	전화번호	02) 2100-6425 02) 2100-6424
------	---------------------	-----	--------------------	------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 과제개요

<여성가족부>

- 스톱킹·데이트폭력 없는 국민 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스톱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및 인식개선 추진
 - * (대통령 지시사항, '22.9.) 스톱킹 방지법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스톱킹 관련 피해자 보호 강화
 - * (국정과제 64-6) 5대 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톱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경찰청>

-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안정적 도입·운영으로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스톱킹의 강력범죄화 차단 등 빈틈없는 보호 시스템 구축
- 대응지침·교육체계 및 관련 법률·제도 정비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및 재범 방지

□ 그간의 추진실적

<여성가족부>

-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활용, 피해자에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21.4월~)
 - * 숙식과 상담, 심신안정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의료지원, 법률지원 연계 등
-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법률지원 수요 증가로 '22년 무료법률지원 사업 예산 증액
 - * 스톱킹 신고현황(출처 : 경찰청) : ('21) 14,509건 → ('22) 29,565건
 - ** 무료법률지원사업 예산 : ('21) 2,941백만원 → ('22) 3,195백만원 (증 254백만원)

- 일반국민 대상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실시
 - * ('20) 5,241회 → ('21) 5,208회 → ('22) 5,274회 → ('23.10월) 4,585회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23.1.17. 공포, '23.7.18 시행)
- 스토킹(교제폭력 포함) 피해자 맞춤형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주거지원 시범사업 운영('23년~)
 - * 긴급주거지원 6개소, 임대주택 주거지원 4개소, 치료회복 프로그램 16개소 운영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 안건 상정 및 관계부처 논의('23.6월)
 - * (안건1) 「스토킹방지법」 시행 계기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추진현황
 - (안건2)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강화 방안
-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 시범배포·운영('23.8월~) 및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개발·보급('23.11월)
 - * 스토킹 피해 여부 조기 진단 및 피해 수준에 따른 지원방향 결정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경영평가 대상 지방공기업 대상
-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제작 배포('23.11월)
 - * 교제폭력 정의, 사례, 지원정보, 관련 법 등 수록

<경찰청>

-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 적극 대응
 -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23.7.11.),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보완, 재발 방지 및 처벌 강화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제고
 - 「스토킹방지법」 제정('23.1.17.), △ 스토킹 예방교육 △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 현장조사권 강화 등 피해자 보호·지원 근거 마련
-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도입을 위한 선행 과제 이행
 - 경찰(현장 조치)-법무부(전자장치 부착·관제) 간 유기적 업무 연계 등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하위법령·지침 등 마련 추진 중
 - ※ △ 경찰-법무부 실무회의 개최(5회) △ 법무부는 우리청 의견 대부분을 반영, 하위법령 입법예고(10.6.)

○ 피해자 보호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강화

- (전문화 교육) 전년도 위탁 교육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선·실시, 가·피해자 면담기법 및 사례별 실습 등 전문성 제고

▶ <기간·장소> 6. 13. ~ 6. 30.(3주간) ▶ <대상> 스토킹담당경찰관 90명
▶ <주요 교육내용> △스토킹의 법적 이해 △스토킹 가·피해자의 심리 이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분반) △스토킹 사례 실습(분반) △현장경찰관 힐링프로그램

- (개정법 교육)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 前 교육자료 배포와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경찰이 활용하는 폴리폰(모바일앱)에 관련 개선 서식 반영('23.7월)

○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경찰-여가부 핫라인 구축

- 스토킹 112신고 중 단순 상담만을 원하는 경우 1366(여성긴급전화)으로 연계 ('23.7월),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지원내용 안내 등 초기 지원 강화

○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법률 부재로 인한 피해자 보호 공백 해소를 위해 「가정폭력처벌법」 상 보호조치를 교제 관계에도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사실혼 판단 체크리스트' 개선

▶ 교제폭력 신고 건에 대한 가정폭력 임시조치 인용 사례 등 참고, 기존 5단계 체크리스트를 판단 문항 중 최소 1개만 해당하더라도 사실혼 인정되도록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재구성, 요건 완화

□ 2024년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마련
-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
- 스토킹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근거 법령 개정 협의

○ 추진 내용

-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18개소)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초기 상담, 관계기관 연계 및 긴급피난처 임시보호 서비스 제공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주거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사업 실시
 - * 긴급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 전국 17개소 확대
- 주민등록법령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규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협업)

○ 추진 방법

-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 국고보조금 교부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교제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개정 추진 -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실시
2/4분기	- 교제폭력피해자 대상 의료비 지원 실시 -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실시
3/4분기	- 교제폭력피해자 대상 의료비 지원 실시 -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실시
4/4분기	- 교제폭력피해자 대상 의료비 지원 실시 -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실시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스토킹 피해자 지원)	39,199	37,907	39,615	416	1.1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366 상담 건수(건)	11,440	12,534	16,908	13,948 (23.9월)	14,306건	20~22년 3년치 평균 대비 3% 증가
○ 성과목표치 산식 : 1366 스톡킹·교제폭력 상담실적 통계						
○ 스톡킹방지법 및 하위법령 제정 추진	-	(신규)	정부안 국회 상정 및 대안 통과 (22.12.28.)	제정 (23.1.17) 및 시행 (23.7.18)	추진완료	제정 여부

<경찰청>

- 「**스톡킹 전자장치 부착 제도**」 시행으로 강력범죄 차단 등 피해자 보호 강화
 - 경찰-법무부 간 업무 소관이 이원화된 만큼, 법무부와 협력 △공동업무 지침 마련 △현장 대응 훈련 및 교육 추진 등 안정적 제도 시행 준비
 - 제도 시행 후 현장 사례 모니터링을 통해 미비점 개선·보완
- **교육체계 정비를 통한 수준별 전문성 향상**
 - 업무 경력·수준별로 교육과정을 차등화하고, 교육 기관·방식을 다양화하여 스톡킹담당경찰관의 수준별 전문성 향상 도모
- **스톡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재범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
 - △온라인스톡킹 피해 자료 삭제 지원 및 수사 초기 스톡킹 가해자 상담·교정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교제폭력 관련 법안 입법 추진

- ▶(스톡킹방지법)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온라인스톡킹 피해자료 삭제 등 지원 규정 신설
- ▶(스톡킹처벌법) 잠정조치로 스톡킹 행위자에 대한 상담위탁 등 조항 신설
- ▶(교제폭력 관련 법안) 현재 의원 입법 4건 발의 중으로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스토킹 전자장치부착 제도」 공동업무 지침 마련, 시행
2/4분기	「스토킹처벌법」·「스토킹방지법」 개정 입법 추진 위탁교육 진행
3/4분기	교제폭력 관련 입법 대응
4/4분기	「스토킹 전자장치부착 제도」 운영 실태 점검, 개선·보완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스토킹범죄 대응역량 강화	163	163	163(정부안반영)	-	-
국비	163	163	163(정부안반영)	-	-
지방비					
기타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스토킹대응지침 점검 및 교육 실시	-	교육 완료	교육 완료	교육 완료	全 관서 점검·교육	

□ 기대효과

<여성가족부>

- 스토킹 피해자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및 정책 추진 기반 강화
-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한 안전하고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
-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경찰청>

- 고위험군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으로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강력범죄를 차단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
- 교육체계 및 법·제도 정비를 통한 스토킹담당경찰관의 현장 대응 역량 및 피해자 보호 전문성을 강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담당자	신동진 서기관 박시영 사무관	전화번호	02) 2100-6427 02) 2100-6422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양희준 경위		02) 3150-0893

□ 과제개요

- (목적) 성매매피해자 등에게 구조·상담·보호·자활 등을 단계적·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 및 사회복귀 추진
- (근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추진체계)



□ 그간의 추진실적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등 운영(96개소)
 - 상담, 의료·법률·직업훈련(진학교육),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제공

<성매매피해자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시설별	상담소	일반·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대안교육 위탁기관
시설 수	31	39	1	11	13	2

<성매매피해자 지원 현황>

(단위 : 명)

연도	합계	상담소	일반·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 센터	대안교육 위탁기관
'23년	5,404	3,631	785	73	47	780	87
'22년	5,277	3,493	799	77	45	782	81

연도	합계	상담소	일반·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 센터	대안교육 위탁기관
'21년	5,529	3,692	803	62	57	832	83
'20년	5,972	3,973	885	63	63	922	66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등에서 상담, 의료·법률·직업훈련(진학교육),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제공하여 자립역량 향상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성매매피해자 자립·자활을 위한 종합적 지원서비스 제공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만족도 조사 실시
2/4분기	성매매피해자 자립·자활을 위한 종합적 지원서비스 제공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현장점검
3/4분기	성매매피해자 자립·자활을 위한 종합적 지원서비스 제공 사업 운영지침 개정을 위한 현장 의견조회
4/4분기	성매매피해자 자립·자활을 위한 종합적 지원서비스 제공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만족도 조사(2~10월) 및 결과 통보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양성평등기금)	18,156	18,114	18,510	354	1.9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매매피해자 지원실적(건)	148,427	154,888	145,380	145,521	146,000	• 성매매피해자의 상담,의료·법률, 직업·진학교육 지원건수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이용자 만족도(점)	90.8	92.1	92.4	93.4		• 지원시설·상담소 등의 이용자 만족도 점수
○ 성매매 피해자 취업 및 진학 실적 (수)					690	• 성매매 피해자 중 취업 및 진학한 인원수

* 보조사업 연장평가(성과지표 개선 필요)에 따라 지표 변경(만족도→취업·진학실적지표)

□ 기대효과

-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한 의료·법률, 직업훈련 제공하는 자활 지원 확대
확대로 자립역량 향상 및 사회진출 확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담당자	박효련 사무관	전화번호	02) 2100-6448
------	------------------	-----	---------	------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과제개요

- (목적) 성매매 등으로 유입된 아동·청소년의 긴급구조, 상담, 치료 등 체계적·통합적 지원으로 성착취 예방 및 건강한 성장 지원
- (수행기관) 중앙지원센터(1개소), 지역지원센터(17개소)
-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47조의2
- (추진체계)



□ 그간의 추진실적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법적 근거 마련
 -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청소년성보호법」 제47조의2 신설('20.11.20. 시행)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치료, 자활, 보호자 상담 등 전담 지원
 - * 전국 시·도별(16개소) 지원센터와 장애인 피해자 위한 특성화지원센터(1개소) 별도 운영
- 온라인 아웃리치를 통해 청소년 대상 성매매 접근 차단 등 피해예방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	18,156	18,114	17,910	354	1.9
	(1,217)	(1,200)	(1,239)	22	1.8

* '23년까지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아동·청소년성범죄 예방교육 및 치료재활) 내 편성·집행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지원 건수	12,520건	26,450건	26,498건	22,500건	'21~'23년 실적 평균 대비 3% 상향한 목표 수립
○ 성과목표치 산식 : 전국 17개 지역센터에서 지원한 건수 합계					

□ 기대효과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상담, 의료지원, 자립·자활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범죄로부터 보호 및 건전한 성장 등에 기여

□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그루밍 등 복합적인 범죄 피해 확산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확대 및 상담, 치료, 회복, 자립 등 서비스 질 향상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담당자	박효련 사무관	전화번호	02) 2100-6448
------	------------------	-----	---------	------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 과제개요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일지, 삭제이력 및 관련 통계의 체계적 관리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란 동영상 스트리밍 차단기술 개발 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기부와 협조체계 강화
- 유포 불안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성에 맞는 치유회복프로그램 개발('20년) 및 지원 실시('21년~)

□ 그간의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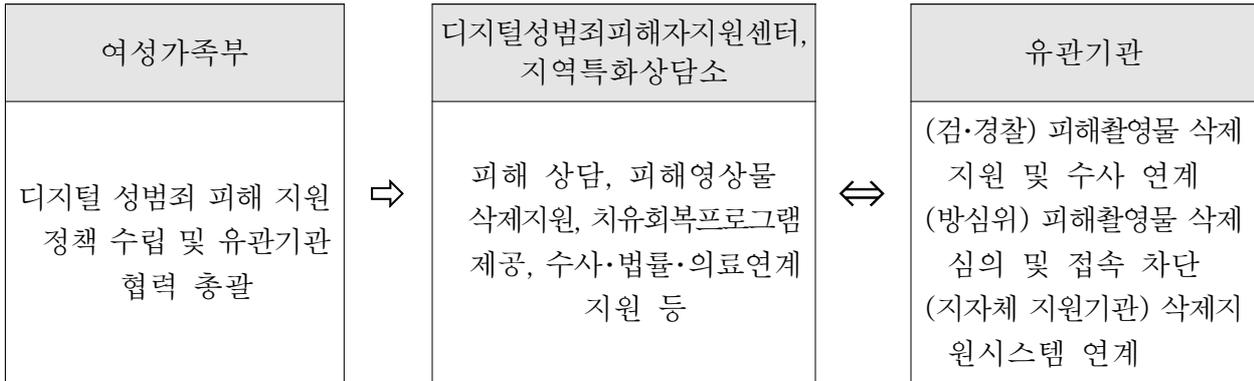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20~'22)
 - * 피해영상물 자동수집 기능(크롤링) 연계 사이트 확대, 서버 증축 등
- 디지털 성폭력 피해 치유회복 프로그램 개발('2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
-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운영 확대('21년 7개소 → '22년 10개소 → '23년 14개소)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운영 내실화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접근성 강화

○ 추진 내용 및 방법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자체 지원기관, 지역특화상담소) 및 관계기관(경찰청, 방통위 등) 간 협업 강화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계획 수립 -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2/4분기	-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간담회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삭제지원시스템 연계 -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3/4분기	-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4/4분기	-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간담회
연중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역특화상담소 운영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통합상담소 - 디지털 성범죄특화형 지원)	39,199 (595)	37,907 (548)	39,615 (613)	416 (18)	1.1 (3.0)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지표명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및 참여(회) * 산식 :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및 참여 횟수	4	4	4	4	4	분기별 협의체 운영 및 참여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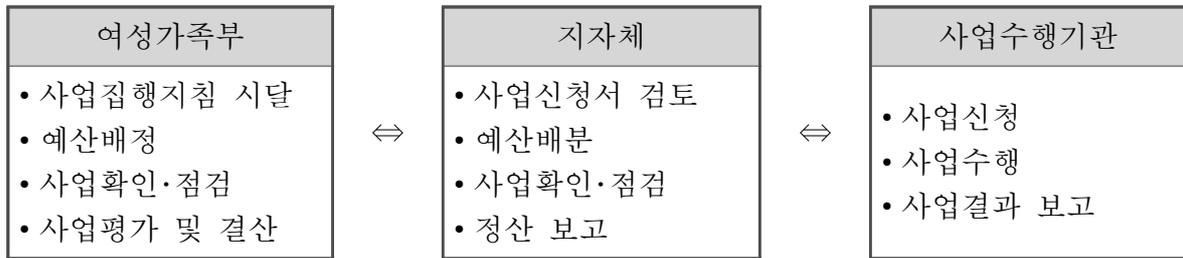
- 피해 지원기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역특화상담소, 지자체 지원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담당자	강동근 사무관 김영숙 사무관	전화번호	02) 2100-6162 02) 2100-6167
------	--------------------	-----	--------------------	------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와

□ 과제개요

- (사업목적) 가정구성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피해자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 지원
- (추진체계) 중앙-지자체-사업수행기관을 통한 지원 추진



- (주요내용)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및 임대주택 지원을 통한 주거지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지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립지원금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 자립역량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 자립지원금 사용용도 확대 및 지급절차 간소화 등 개선
 - (사용용도 확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시 지급되는 자립지원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신청서 서식 변경
 - (지급절차 간소화 및 이의신청제 도입) 시·군·구에서 자립지원금 지급 대상자 결정 후 퇴소자에게 직접 지급 및 보호시설장에게 지급내역을 통보하고 이의신청제 도입
 -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자립지원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구 심사위원회 심사항목 조정('21년 3개 분야 7개 항목 → 4개 항목)

- 가정폭력 피해자가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임대주택 입주가능한 국토부 「기존 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전과 ('22년 지침 반영)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1인당 5백만원)
- 자립역량강화 시범사업 운영('19년 3개소, '20년 2개소)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임대주택) 확대
 - * 임대주택 지원현황 : ('21) 354호 → ('23) 356호

□ 2024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주거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보호시설 입소 지원 및 퇴소 시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연중)
- (동반아동 자립지원금 지원) 보호시설 퇴소자 동반 아동에 대해서 자립지원금 (1인당 250만원) 추가 지원
 - * 주거마련(월세, 보증금), 학자금, 자격취득 및 취업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

○ 추진 방법

- 가정폭력 피해자 운영실적(주거지원, 자립지원금) 관리(연중)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및 퇴소자 자립지원금 등 운영 지원(연중)
2/4분기	-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및 퇴소자 자립지원금 등 운영 지원(연중)
3/4분기	-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및 퇴소자 자립지원금 등 운영 지원(연중)
4/4분기	-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및 퇴소자 자립지원금 등 운영 지원(연중)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 (양성평등기금, 국비)	39,199	37,907	39,615	416	1.1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주거지원 임대주택 운영기관 확대						
○성과목표치 산식 : 주거지원 임대주택 운영기관(개소 수)	+1	+1	+1	+1	+1	주거지원 임대주택 운영기관 수

□ 기대효과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및 주거지원(임대주택 지원), 자립지원금지원 사업 지속 운영을 통한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 도모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담당자	장수진 사무관 이경연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24 02-2100-6428
------	---------------------	-----	--------------------	------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과제개요

-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현장 접근성을 높인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 추진 및 집결지 정비 기반 마련

□ 그간의 추진실적

- 집결지 내 성매매피해여성 등의 인권유린 방지 및 탈성매매 지원 위해 상담 및 의료·법률·직업훈련 등 지원(12개소)
- 심층상담 및 집결지 특성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간이쉼터를 제공(열린터 운영, 9개소)

<성매매 집결지 지원 실적>

(단위 : 회, 건)

연도	운영 개소	아웃 리치(회)	개별 상담(건)	집단 상담(회)	의료 지원(건)	법률 지원(건)	직업 훈련(건)
'23년	12	532	20,014	13	1,218	1,133	1,215
'22년	12	563	19,849	8	942	1,145	2,341
'21년	12	497	22,974	32	1,728	1,600	1,919
'20년	10	465	24,495	42	1,710	1,479	1,441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성매매집결지 피해여성의 인권유린 방지 및 탈성매매 지원을 위해 상담, 의료·법률, 치료·회복 등을 통한 자립 역량 강화

○ 추진 내용

-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지원 사업 지속 추진
 - * 성매매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서비스 제공

- 성매매집결지 '열린터' 운영

* 심리·위기 상담, 긴급피난처 및 단기쉼터, 집결지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실시 등

○ 예산 현황 : 기포함

※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지원체계 구축(3-3-1-④)과제에 기포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양성평등기금)	18,156	18,114	18,510	354	1.9

○ 성과지표 : 기포함

※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지원체계 구축(3-3-1-④)과제에 기포함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매매피해자 지원실적(건)	148,427	154,888	145,380	145,521	146,000	• 성매매피해자의 상담, 의료·법률, 직업·진학교육 지원건수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이용자 만족도(점)	90.8	92.1	92.4	93.4		• 지원시설·상담소 등의 이용자 만족도 점수
○ 성매매 피해자 취업 및 진학 실적 (수)					690	• 성매매 피해자 중 취업 및 진학한 인원수

* 보조사업 연장평가(성과지표 개선 필요)에 따라 지표 변경(만족도→취업·진학실적지표)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매매 집결지 정비 및 피해 여성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관계부처 지속 협의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담당자	박효련 사무관	전화번호	02) 2100-6448
------	------------------	-----	---------	------	---------------

□ 과제개요

○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관련 법적근거의 일원화

- 양성평등기본법 등 각 개별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의 근거규정 마련 등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그간의 추진실적

○ 폭력예방교육 근거규정 마련(1999년~)

* 성희롱 예방교육(1999년, 구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성매매 예방교육(20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예방교육(2010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예방교육(2013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통합 폭력예방교육 근거규정 마련(2013년~)

-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실시

* 같은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4.7.2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4.9.28.)

○ 국회의원 발의(권인숙 의원, 2021.3.25.) 「성인지교육지원법」 제정안발의 및 상임위 계류 중

○ 「폭력예방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23.5. ~ '23.12.)

○ 교육계, 법률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폭력예방교육 제도개선 추진단 운영 ('23.7. ~ '23.12.)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법적근거의 일원화 관련 사항 검토

○ 추진 내용

- 교육의 효과성·수용성 제고를 위한 통합교육 활성화 등 '폭력예방교육 개편' 추진

○ 추진 방법

- 제도 개선 검토 및 국회 입법 진행 상황 모니터링 등 대응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 해당 없음

□ 기대효과

- 폭력예방교육 통합교육 활성화로 교육의 효과성·수용성 제고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담당자	임재훈 사무관	전화번호	02) 2100-6442
------	------------------	-----	---------	------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과제개요

-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 내실화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결과 모니터링 등을 통한 사후관리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공공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 (추진절차)
 - 여성가족부 : 예방교육 운영지침 수립, 예방교육 점검(서면, 현장점검), 강사 양성,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부진기관 특별교육·언론공표 등
 - 각 기관 : 폭력예방교육 실시, 예방교육 추진실적 제출

□ 그간의 추진실적

-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예방교육 실적 점검 체계화('14년~)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15년~)
 - 현장점검 결과에 기초한 기관 특성별 컨설팅 제공 및 맞춤형 개선책 제시
 - * ('20년) 480개 → ('21년) 496개 → ('22년) 550개 → ('23년) 560개
 -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 대상 업무 시기별 맞춤형 컨설팅 추진
 - * 업무 가이드북 제작·배포, 담당자 교육 실시, 뉴스레터 등 현업자료 제공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정량적(교육 실적)·정성적 요인(과급효과·영향력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맞춤형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 과년도 현장점검 대상 기관의 실적 개선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 체계 구축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통한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 내실화

○ 추진 내용

- 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신뢰성 확인 및 현장점검 결과에 기반한 향후 예방교육의 보완개선 방안 등 컨설팅 실시(400여 개 기관)
- 컨설팅 개선사항 반영 여부 등 대상기관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화

○ 추진 방법

- 폭력예방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컨설팅단을 구성 후 방문하여, 기관별 맞춤형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추진계획 수립
2/4분기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추진(계속)
3/4분기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추진(계속)
4/4분기	·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 사업평가 및 사업 결과보고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증 감	
	예산	집행		증감액	증감률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4,147 (329)	4,147 (293)	0 (0)	△4,147 (△329)	△100.0 (△100.0)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 기반 구축*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784 (0)	784 (0)	3,415 (279)	2,631 (279)	29.8 (100.0)
국비	329	293	279	△50	△15.2

* '23년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에서 '24년 여성폭력방지정책추진기반구축사업으로 내역이관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현장점검 대상 기관	480	496	550	560	400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
○ 성과목표치 산식 :						

□ 기대효과

-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 내실화로 여성폭력방지 기반 구축
- 공공기관 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이행점검 내실화 지속 추진
 - 제출실적에 대한 서면점검, 기관 방문을 통한 현장점검 및 기관별 맞춤형 개선책 제시, 사후관리 강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담당자	임재훈 사무관 이세민 주무관	전화번호	02) 2100-6442 02) 2100-6434
------	------------------	-----	--------------------	------	--------------------------------

□ 과제개요

- 중앙행정기관 소속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이행상황 점검, 현장점검 등) 소관부처 책무성 강화
 - *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 여성가족부 → 관할 중앙행정기관
 - * 각급학교(초중고 및 대학), 유치원 : 여성가족부 → 교육부(교육청)
 - * 어린이집 :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지자체)

□ 그간의 추진실적

-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 뿐만 아니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보고 대상 확대(2019년~)
 - * 2018년 12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개정(시행 '19.6.19)
-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 지침 상 기관 협조사항 반영(2020년~)
 -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폭력예방교육 등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의 적극적인 관심 및 관리 요청
 - *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는 성폭력 예방계획에 소속·산하기관 관리 사항 반영 등
 - 소속기관으로부터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등에 의한 교육실적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아 지침 이행 독려
 - * 상급기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소속기관 실적관리' 메뉴를 통해 소속기관 현황 조회 가능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시 명단 공표 근거 마련(양성평등기본법 개정, 2021.10.21. 시행)
- 매년 국무(차관)회의에서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 보고(2016년~) 및 부진 기관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및 개선계획서 제출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국가 및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폭력예방교육 의무기관에 대한 이행점검 강화

○ 추진 내용

- 각 기관에서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실적자료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허위실적 제출 방지 및 기관 맞춤형 컨설팅 제공으로 교육의 실효성 강화

○ 추진 방법

- 점검결과를 국무(차관)회의에 보고, 부진기관 명단은 언론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함으로써 기관 책무성 제고
- 부진기관 대상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및 개선계획서 제출 등 후속 조치

○ 예산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2022년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 국무·차관회의 상정	1	1	1	1	1	국무·차관 회의 상정 횟수
○ 성과목표치 산식 :						

□ 기대효과

- 소관부처 책무성 강화로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폭력예방교육 등 내실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담당자	임재훈 사무관 최수린 주무관	전화번호	02) 2100-6442 02) 2100-6445
------	------------------	-----	--------------------	------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과제개요

- 폭력예방교육 전문인력 확대 및 질 제고를 위한 전문강사 양성과정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그간의 추진실적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확대
 - 폭력예방교육의 전문적 수행이 가능한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 확대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활동 인원 >

(단위: 회)

구분	'17	'18	'19	'20	'21	'22	'23.10월 말
인원	78	166	416	715	824	890	965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24회 운영('23.10월 말)
 - ※ 학관(석·박사) 연계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2회) 포함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역량 강화 지원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보수과정* 25회 운영('23.10월 말)
 - * 대상 맞춤형 강의 수행을 위해 '교제폭력과 스토킹의 이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그루밍 피해', '피학대 여성의 인권과 정당방위' 등을 주제로 맞춤형 전문강사 보수과정 운영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170회 운영('23.10월 말)
 - * 역량강화교육 2회, 강의(현장·동료·영상) 모니터링 168회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DB(전문강사뱅크 사이트) 구축·운영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 확대 및 역량 강화 지원

○ 추진 내용

- 폭력예방교육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 확대('24년 980명 목표)
 -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연간 150시간 이수) 운영
- 전문강사 보수과정 등 운영을 통한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역량 강화 지원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DB(전문강사뱅크 사이트) 구축·운영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과정 추진계획 수립
2/4분기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실시 · 강의 모니터링, 전문강사 재위촉 보수과정 실시
3/4분기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실시(계속) · 강의 모니터링, 전문강사 재위촉 보수과정 실시(계속)
4/4분기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실시(계속) · 강의 모니터링, 전문강사 재위촉 보수과정 실시(계속) · 사업평가 및 사업 결과보고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자체예산으로 운영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 인원(명)	715	824	890	965 (10.31기준)	980명	사업결과 보고서
○ 성과목표치 산식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인원 수						

□ 기대효과

- 폭력예방교육 전문인력 확대 및 질 제고를 통한 여성폭력방지 기반 구축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담당자	임재훈 사무관 김민서 주무관	전화번호	02) 2100-6442 02) 2100-6434
------	------------------	-----	--------------------	------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과제개요

- 지역 현실과 이슈를 반영한 폭력예방교육의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강화 및 성평등 교육과 추진 체계 연계 필요성 검토

□ 그간의 추진실적

- 17개 시·도별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교육 소외계층과 집단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추진현황 >

(단위: 회)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10월 말
교육횟수	5,489	5,241	5,208	5,274	4,585

- 지역 강사 DB 구축* 및 관리체계** 운영을 통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 강화 및 강의 품질 제고

* ('23년) 17개 시·도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활동 강사 : 1,164명(전문강사 1,034명, 일반강사 130명)

** ('23.9월 말) 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156회(강사 워크숍, 소모임)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지역 기반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강화

○ 추진 내용

- 성범죄 취약계층, 폭력예방교육 필요 집단 등 지역별 교육대상 적극 발굴 및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를 통한 사각지대 최소화('24년 5,150회 목표)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역 수요·특성 반영 강화 및 성평등 교육과 추진 체계 연계 필요성 검토 등을 통한 교육 추진력 제고 방안 모색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2/4분기	· 마을안전 지킴이 등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3/4분기	· 마을안전 지킴이 등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계속)
4/4분기	· 마을안전 지킴이 등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계속) · 사업평가 및 사업 결과보고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증 감	
	예산	집행		증감액	증감률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4,147 (808)	4,147 (808)	0 (0)	△4,147 (△808)	△100.0 (△100.0)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 기반 구축**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784 (0)	784 (0)	3,415 (816)	2,631 (816)	29.8 (100.0)
국비	808	808	816	8	1.0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예산의 일부를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에 집행

** ('24년~) 기존 세부사업 폐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 기반 구축'으로 내역사업 이관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참여자 인식개선도(점)	83.6	84.1	88.8	90.0 (6월 말기준)	89.4	사업결과 보고서
○ 성과목표치 산식 : 폭력예방 이해증진, 인식변화, 실천의지 등 5개 항목 조사 결과의 평균값						

※ 최근 2년(2022년, 2023.6월 말 기준) 실적 평균치를 목표로 설정

□ 기대효과

- 지역 기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화 및 성평등 교육과 추진 체계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담당자	임재훈 사무관 이세민 주무관	전화번호	02) 2100-6442 02) 2100-6434
------	------------------	-----	--------------------	------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과제개요

- (사업목적)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체험 중심의 성교육으로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제공
- (주요내용) 체험관 및 이동형 교육장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시 * 청소년성문화센터 57개소
* (교육실적) ('21) 1,640천명 → ('22) 1,829천명 → ('23) 1,833천명
- 청소년성문화센터 노후 교재·교구 교체 지원
* '23년 10개소 대상

□ 2024년도 시행계획

-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시 (계속)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성문화센터 사업 1차 보조금 교부 및 아동·청소년 성교육 실시(연중)
2/4분기	성문화센터사업 2차 보조금 교부
3/4분기	성문화센터사업 3차 보조금 교부
4/4분기	성문화센터 현장점검 및 결과 조치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23.12월말 기준)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청소년육성기금)	6,056	6,035	4,879	1,177	△19.4
국비	4,839	4,836	4,879	40	0.8
• 기금(청소년육성기금)	4,839	4,836	4,879	40	0.8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아동·청소년 성교육 참여인원(천명)						
○ 성과목표치 산식 : 최근 5년간 센터교육 참여율*을 β분포 방식으로 계산한 표준치 * 참여율 :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자 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시스템(6세~19세 아동·청소년 수×100)	1,031천명	1,640천명	1,829천명	1,833천명	1,756천명	○ 최근 5년간 실적치의 베타분포방식 표준치

□ 기대효과

- 아동·청소년 성교육을 통한 건강한 성가치관 정립 및 성범죄 피해 예방
- 아동·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전문 성교육으로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제공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담당자	조준홍 사무관 송진영 주무관	전화번호	02) 2100-6405 02) 2100-6403
------	--------------------	-----	--------------------	------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과제개요

- 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맞춤형 콘텐츠 제공
 - 대상별 눈높이에 맞춰 기본·심화 등 단계별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디지털 성범죄, 미투 운동 등 최신 정보를 반영한 핵심 콘텐츠 제공
 -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 및 스토킹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원
 - *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 및 스토킹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등

□ 그간의 추진실적

- 성인지적 관점이 강화된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대상 맞춤형 교육자료 지원
 - *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등을 위한 성인지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20.8월), 폭력예방교육 표준 콘텐츠 및 일반국민 대상 폭력예방 감수성 체크리스트 등 개발('20.12월)
- 초·중·고·대학생 및 교사·양육자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21~'23)
 - * 연령별 맞춤형 상호작용형, 숏폼, 브이로그,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개발
- 고위직 대상 위계·위력에 의한 인식 차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소규모 토론중심의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21)
- 아동·청소년 전용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인 “디클(Dicle)”* 구축·운영 ('22.5~)

* 디클(Dicle) : ‘디지털 세상을 클린하게 줄임말’ / www.dicle.kigepe.or.kr
 - (콘텐츠 탑재) 95종 (초 16, 중 13, 고등 17, 양육자·교사 49)
 - (플랫폼 실적) 방문자수 147,490명, 콘텐츠 조회수 932,527회 ('23. 10.31.기준/누계)
- 분야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자체 제작 콘텐츠 및 타부처·민간 기관이 개발한 콘텐츠를 추천콘텐츠로 선정·보급

< 추천콘텐츠 제공 현황 >

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통합교육
141종	61	25	6	13	36

* 폭력예방 추천콘텐츠 총 141종 ('23년 12월 기준)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시스템 등을 통해 보급

○ 시의성 높은 콘텐츠 제공으로 교육대상의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

- 교육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의 특성고려, 교육 분야별 콘텐츠 활용가이드 및 주요 이슈, 사례중심의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 청소년(온라인 그루밍), 청년(성매매), 일반국민(2차 피해), 고위직 등 폭력예방교육 기관담당자 등 인식개선 및 특화교육과정 개발

-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신종 범죄(스토킹, 2차 피해)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리 역량 개선 및 관계자 교육

○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공모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한 우수추천콘텐츠 발굴·보급

- 일몰 대상 추천 콘텐츠 리뉴얼 3종, 추천콘텐츠 제도 운영 2회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활성화 및 교육 콘텐츠 수요 대응
-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시의성 제고 및 품질관리
-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공공·민간분야 우수 콘텐츠 발굴·보급

○ 추진 내용

- 공공기관 대상 폭력예방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7종)
 - * 폭력예방교육 및 고위직 특화교육 콘텐츠(6종),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콘텐츠(1종)
- 추천콘텐츠 접근성 강화(2종), 추천콘텐츠 제도운영(1회)
 - * 수요자 요구, 현안 등을 고려한 콘텐츠 선정 및 개발

○ 추진 방법

- 조달청 공모를 통한 콘텐츠 개발 기관 선정, 기술능력 평가 등을 통해 교육 콘텐츠 개발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

* 2023년 제작 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계획 수립
2/4분기	·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추진
3/4분기	·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추진(계속)
4/4분기	·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추진(계속) ·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사업 결과보고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4,147 (329)	4,147 (293)	0 (0)	△4,147 (△329)	△100.0 (△100.0)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 기반 구축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784 (0)	784 (0)	3,415 (229)	2,631 (229)	29.8 (100.0)
국비	329	293	229	100	△30.4

※ 세부사업 통합에 따른 이관(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9종	21종	20종	22종	5종	예산 및 콘텐츠 개발계획
○ 성과목표치 산식 : 콘텐츠 개발 종수						

□ 기대효과

-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으로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 생애주기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지속 개발 및 보급
- 교육대상에 대한 수요분석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시의성 있는 교육대상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지속 개발 및 보급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담당자	정은선 사무관	전화번호	02) 2100-6554 02) 2100-6562
------	------------------	-----	---------	------	--------------------------------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폭력예방교육과·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과제개요

○ 여성폭력 예방·홍보 강화(여가부)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19년~)
- 폭력 유형별 예방 홍보 영상 제작 및 방송사업자 등 송출 요청
-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 이주여성 인식개선 및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20년~)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홍보·캠페인 전개

□ 그간의 추진실적

○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추진("19년)
 - * 인식개선 홍보영상 공모전 및 시상식 개최, 성폭력 추방 주간 계기 이벤트 개최 등
- 성희롱·성폭력 근절 인식개선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20년~'23년)
 - * 성희롱·성폭력 근절 인식개선 동영상 제작,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콘텐츠 확산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정책 홍보 동영상 제작·송출(유튜브) 및 이주여성 폭력 예방 안내서 제작·배포(13개 국어)

- *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추진

-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 제작·배포("20.4.8)
-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영상(4편) 제작·송출("21.12)
 - * (주제) 온라인 그루밍,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합성물, 경찰 위장수사 등

-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도원결의(2편)' 제작·송출(문체부 협업, '21.9~ 11월)
 - * 경찰, 검찰, 판사가 불법 촬영물의 시청, 소지는 불법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홍보·캠페인 전개(상시)
- 스토킹 피해예방 및 지원 정책 홍보를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송출 (유튜브, 옥외 수도권 버스 내 영상)

스토킹·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추진

-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정책 홍보영상 제작·송출('23.11)
 - * 유튜브, 버스·지하철·엘리베이터 등 온·오프라인 매체 송출
- 피해자 지원 정책 홍보 웹툰 제작·배포('23.11)
 - * 스토킹방지법 제정 주요내용 소개 및 1366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례를 통한 피해자 지원체계 안내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 사항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추진
- 스토킹·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홍보 강화

○ 추진 내용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추진
- 이주여성 및 스토킹 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홍보 강화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홍보·캠페인 전개(상시)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희롱등 직장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	500		-	△500	△100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4,147 (808)	4,147 (808)	0 (0)	△4,147 (△808)	△100.0 (△100.0)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 기반 구축**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784 (0)	784 (0)	3,415 (816)	2,631 (816)	29.8 (100.0)
○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스토킹 예방·홍보)	39,199	37,907	39,615	416	1.1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예산의 일부를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에 집행

** ('24년~) 기존 세부사업 폐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 기반 구축'으로 내역사업 이관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참여자 인식개선도(점)	83.6	84.1	88.8	90.0 (6월 말기준)	89.4	사업결과 보고서
○ 성과목표치 산식 : 폭력예방 이해증진, 인식변화, 실천의지 등 5개 항목 조사 결과의 평균값						

□ 기대효과

○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홍보 등 대국민 인식개선을 통한 여성폭력 예방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담당자	박용준 사무관 김다해 주무관	전화번호	02) 2100-6164 02) 2100-6166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임재훈 사무관 이세민 주무관	02) 2100-6442 02) 2100-6434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신동진 서기관 김민재 주무관	02) 2100-6427 02) 2100-6430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및 대국민 인식개선
 - 여성폭력 피해자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1년 중 1주간 여성폭력 추방주간(11.25.~12.1.) 운영
 - * 2020년부터 기존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을 ‘여성폭력 추방주간’으로 통합하여 운영
 - * 근거 : 국정과제 64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20조(홍보)

□ 그간의 추진실적

- 여성폭력 추방주간 계기, 여성폭력 근절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여성폭력 방지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전개(2020~2023)
 - 여성폭력 추방주간 정부 기념식 개최(11.24.)
 - * 2023년 주제 : 함께 만드는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
 - 홍보 전용 누리집* 운영(10월~12월), 포스터 확산(지자체, 전국 대학, 한의원,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홍보,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 여성폭력 관련 정보 및 영상 자료, 국민참여 공모전, 걷기챌린지 등 캠페인 운영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여성폭력 추방주간(11.25.-12.1.) 계기, 여성폭력 범죄 경각심 제고 및 피해지원 정책 공감대 확산 집중 홍보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보 확산을 통한 피해자 접근성 제고에 기여
- 추진 내용
 -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 개최(11월)

- 여성폭력 추방주간 계기, 피해지원 공공서비스 성과 확산 등 국민 참여 행사 등 실시(10월~12월)

○ 추진 방법

-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 개최, 유공자 포상 등 집중 홍보를 통해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 공유, 모범사례 홍보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여성폭력 추방주간 홍보 사업 기획
2/4분기	여성폭력 추방주간 국민 참여 행사 등 기획
3/4분기	여성폭력 추방주간 사전 홍보 추진
4/4분기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 개최, 집중 홍보 실시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예산에 포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14,233	14,233	14,692	459	3.22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여성폭력 추방주간	1회	1회	1회	1회	1회	

□ 기대효과

- 여성폭력 추방주간 운영을 통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정책정보를 알리고 대국민 인식개선에 기여
 - 여성폭력 추방주간(11.25.-12.1.) 전후로 여성폭력 방지 캠페인을 매년 추진하여 피해자 접근성 제고에 기여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조명식 사무관	전화번호	02) 2100-6387
------	-------------	-----	---------	------	---------------

법무부 형사법제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과제개요

<법무부>

- 성폭력범죄의 행위 태양, 피·가해자 특성 등을 기준으로 각 법률(「형법」·「성폭력 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등)에 구분되어 있는 처벌 규정 통합 검토

<여성가족부>

- 성폭력 범죄의 행위 태양, 피·가해자 특성 등을 기준으로 각 법률(형법·성폭력 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등)에 구분되어 있는 처벌 규정 통합 검토

□ 그간의 추진실적

<법무부>

- '20. 5. 「형법」 및 성폭력 관련 특별법 처벌규정 재정비를 위해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대응 TF' 안건으로 상정, 추진방안 논의
- '20. 7. 법제 통합·재정비를 위한 개정 초안 마련을 위하여 연구용역 시행 및 결과 분석('20. 12. 결과 회신)
- 성폭력범죄 처벌 규정 통합 방안 추진 지속 검토

<여성가족부>

- 형법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관련 조문들을 삭제하고 형법으로 통합하는 개정안 발의(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18.8월, 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 2024년도 시행계획

<법무부>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형법」 체계에 부합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방안 추진 검토

- * 통합 대상인 성폭력범죄 처벌 규정의 소관 부처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소관인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처벌 규정 통합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고, 완전 통합 이전 단계에서 현행 「성폭력처벌법」을 「형법」 체계에 맞추어 정비 필요

○ 추진 내용

- 「형법」 체계에 부합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방안 추진 검토

- * 「형법」은 성폭력범죄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삼분체계로 규정하고 있으나, 「성폭력처벌법」 일부 조항은 종래의 ‘강간-강제추행’ 이분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징역형의 표현도 「형법」과 일부 상이한 부분 있음

○ 추진 방법

-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 검토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형법」 체계에 부합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방안 추진 검토
2/4분기	「형법」 체계에 부합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방안 추진 검토
3/4분기	「형법」 체계에 부합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방안 추진 검토
4/4분기	「형법」 체계에 부합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방안 추진 검토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성폭력범죄 처벌규정 통합안 검토	성폭력 범죄 처벌 규정 통합 방안 논의 및 연구 용역 시행	해외 입법례 등 연구 용역 결과 분석 하여 성폭력 범죄 처벌 규정 통합 방안 추진 검토	해외 입법례 등 연구 용역 결과 분석 하여 성폭력 범죄 처벌 규정 통합 방안 추진 검토	해외 입법례 등 연구 용역 결과 분석 하여 성폭력 범죄 처벌 규정 통합 방안 추진 검토	「형법」 체계에 부합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방안 추진 검토	검토 자료
○ 성과목표치 산식 : 검토 자료						

<여성가족부>

○ 추진 내용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필요성 검토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필요성 검토
2/4분기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필요성 검토 계속
3/4분기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필요성 검토 계속
4/4분기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필요성 검토 계속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 해당사항 없음

□ 기대효과

<법무부>

- 수범자인 국민과 법집행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체계 통일성 제고

<여성가족부>

- 처벌 규정 통합 실익 및 법체계 상 정비 검토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남소정 검사	전화번호	02) 2110-3695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조준홍 사무관		02) 2100-6405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 과제개요

- (목적) 폭언·폭력,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하여 심리상담·전문가 지원 및 의료현장의 인권침해 인식 개선 선도
- (근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3조(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및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 그간의 추진실적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19.4.23.) 및 시행('19.10.24.)
-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20.12월)
-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개소 및 운영('21.8월)
 - 전문 상담사의 심리상담 및 법무·노무 자문 실시
 - ※ '21년(8~12월) 79건 → '22년(1~12월) 711건 → '23(1~9월) 1,224건으로 지원실적 증가
- 보건의료인력 대상 인권교육 실시
 - (인권침해 예방교육) 의료기관 종별 맞춤형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 실시
 - ※ 실적: '22년(1~12월) 42건, 1,666명 → '23(1~9월) 57건, 2,525명으로 교육 실적 증가
 - (교육자료 제작)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과목(성희롱·성폭력 등 예방, 인권교육 등)의 표준교안 및 교육 영상 제작·배포('21.12월)
- 보건의료인력 인권보호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 (인권의식 제고)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홍보 관련 활동 다양화
 - 인권 홍보를 위한 브로슈어, 카드뉴스, 현수막 제작·게시('21~23년)

- '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력 등 인권보호 업무편람' 제작·배포('22.8월)
-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침해상담센터 홍보 동영상 제작·게시('21.9월, '23.9월)
-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보호 포스터 공모전('22.9월, '23.10월) 실시 및 수상작 활용하여 홍보 달력·리플릿 제작·배부('22.12월, '23.12월 예정)
-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인식도 조사('22.10월, '23.11월) 실시
- 보건의료인력 번아웃 예방을 위한 힐링캠프 운영('23.11월)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보건의료현장 종사자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교육' 확대
 - * '23년 대비 교육방식 다양화(강의식 또는 집단상담 등) 및 교육 대상 확대(예비의료인 등)
-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적기 대응 및 인권 친화적 근무 환경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대상 '인권센터 전략협의체' 운영

○ 추진내용 및 방법

- (인권교육 실시) 의료기관 대상 '찾아가는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교육' 추진
 - (대상)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및 예비의료인(간호대 등)
 - (방법) 온라인(zoom) 또는 대면 교육(의료기관 방문 교육) 실시, 강의식 교육 또는 소규모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의료기관의 수요에 맞게 운영
 - (내용) 인권보호의 중요성, 다빈도 인권침해 유형, 인권침해 대응요령 등
- (인권센터 전략협의체 운영) 의료기관 내 인권센터 담당자 대상 회의·교육 등 협의체 운영을 통해 바람직한 인권센터의 역할 정립
 - (대상)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등 병원 7곳
 - (방법) 반기별 1회 회의 운영
 - (내용) 의료기관 내 효과적인 인권교육 방법 논의, 인권침해 사건 관련 조사 기법 교육, 인권침해 사건 대응 사례 공유 등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1/4분기	인권센터 전략협의체 회의 실시 인권교육 실시
2/4분기	인권교육 실시
3/4분기	인권센터 전략협의체 회의 실시 인권교육 실시
4/4분기	인권교육 실시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의료인력양성및적정수급관리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	612		551	△61	△9.6
국비	612		551	△61	△9.6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1년)	(2022년)	(2023년)		
-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제정·배포(1건)	- 매뉴얼 개정·배포 (완료)	-	-		-
- 인권침해 상담매뉴얼/홍보영상 제작(각1건)	- 상담업무 매뉴얼(1건) - 홍보영상(1건)	-	-		- 상담매뉴얼 - 제작영상
- 의료기관 대상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교육 실시	-	- 인권교육 (54회)	- 인권교육 (54회)	- 인권교육 (55회)	- 실적보고서

□ 기대효과

- 의료기관 내 폭언·폭력,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한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담당자	진상인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2-2431
------	------------------	-----	---------	------	---------------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9. 12. 25.) 및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 개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검찰청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 가정폭력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 및 피해자 등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 도모

□ 그간의 추진실적

- '19. 3., '19. 10. 여성·아동분야 타겟형 교육 실시
 - 2차 피해 방지 교육, 성폭력 사건처리기준 철저 준수 및 성폭력·아동학대 수사 시 유의사항 등 전국 여성·아동 전담검사 대상으로 타겟형 교육 실시
- '19. 11.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정폭력 공동연구 결과 발표
 -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8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초부터 전문연구검사와 실무협약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분실태를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및 성별로 재구성하여 연구결과 발표
- '20.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
 - 가정폭력 사건의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검사 결정전조사 제도 도입
- '20. 6.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개정
 - 가정폭력 상담(교육)위탁서 서식 개정
- '21. 7~.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 구성·운영
 -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 구성·운영

- 가정폭력 수사매뉴얼 개정 작업 진행

○ '21. 11. 전국 여성·아동범죄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 개최

- 가정폭력 수사매뉴얼 등 관련 주요 쟁점, 수정·보완 사항 정리 등 논의

○ '21. 12. 가정폭력 수사매뉴얼 개정 및 책자 배포

- 가정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일선 청 송부

○ '22.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건의

- 가정폭력범죄에 있어서 긴급임시조치 취소 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건의

○ '22. 2, 7. 여성·아동 등 전담검사 지정 및 운영 현황 파악

-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전담검사 지정 및 지정에 따른 사건처리지침 송부

○ '22. 12.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례 연구」 제작·배포

-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사례 연구 책자 제작, 전국 청에 배포

○ '23. 2, 9. 여성·아동 등 전담검사 지정 및 운영 현황 파악

-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전담검사 지정 및 지정에 따른 사건처리지침 송부

□ 2024년도 시행계획

○ 가정폭력사범 처벌 강화(연중)

- 가정폭력사범 사건처리기준 이행 강화 및 지속적 점검·개선을 통한 가정폭력 사범 엄정 대응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가정폭력사범 기소율 (%)						
○성과목표치 산식 : 처분인원 대비 기소인원 비율	10.1%	9.4%	10.2%	11.4%	10.1%	검찰통계 시스템

□ 기대효과

- 가정폭력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 및 피해자 등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 도모

담당부서	대검찰청 형사4과	담당자	권은구 수사관	전화번호	02) 3480-2303
------	--------------	-----	---------	------	---------------

법무부 형사법제과,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와

□ 과제개요

<법무부>

-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재범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 범죄(폭행, 존속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여부 검토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의사 존중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수사 후 입건, 기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
 - *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함
- (사업목적) 피해자 보호 및 가정폭력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필요성 검토
- (주요내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후단의 '피해자의 의사 존중' 개정 검토

□ 그간의 추진실적

<법무부>

- 가정폭력 범죄(폭행, 존속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검토 및 국회 논의 지원
 - 20대 국회에서 이태규('17. 12.), 고용진('19. 3.), 채이배('19. 5.), 송희경('19. 7.) 의원 등 관련 개정안 대표발의
 - * 각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 21대 국회에서 고용진('21. 1., 7109호), 강선우('21. 3., 8579호), 김영주('22. 10., 17809호), 한병도('23. 3., 20931호), 이태규('23. 5., 22174호) 의원 등 관련 개정안

대표발의

- * 고용진·강선우·김영주案 각 현재 법사위 1소위 계류 중 (소위 미논의)
- * 한병도·이태규案 전체회의 미상정

- 형사법자문회의 개최, 해외 입법례 조사·분석, 국내 문헌 검토 등
 - 해외 입법례, 국내 문헌 등을 조사하여 관련 회의 자료 작성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 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논의 지원
 - * 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안(2107109),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안(2108579) 계류 중

□ 2024년도 시행계획

<법무부>

- 중점 추진사항
 -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 추진 내용
 -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 추진 방법
 -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2/4분기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3/4분기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4/4분기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국회 입법 논의 지원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해외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해외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해외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및 법률 개정 검토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검토 자료
○ 성과목표치 산식 : 법률 개정 검토	입법례, 논문 등 검토	입법례, 논문 등 검토	입법례, 논문 등 검토	입법례, 논문 등 검토		

<여성가족부>

○ 관련 법안 논의 모니터링

기대효과

○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남소정 검사	전화번호	02) 2110-3695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박시영 사무관		02) 2100-6422

□ 과제개요

-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 방안 검토

□ 그간의 추진실적

- 가정폭력의 정의에 데이트 관계를 포함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등 관련 제·개정안 검토 및 국회 논의 지원
 - 20대 국회에서 박광온(‘17. 8.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표창원(‘17. 8.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표창원(‘17. 9.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안), 신보라(‘17. 11. 「데이트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원 등 관련 법안 대표발의
 - * 각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 21대 국회에서 윤영석(‘20. 11., 「데이트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5177호), 김미애(‘22. 7. 「데이트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16478호) 의원 등 관련 제정안 각 대표발의 / 박광온(‘21. 3.,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8567호), 권인숙(‘21. 1.,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7302호) 의원 등 관련 개정안 각 대표발의
 - * 윤영석案 여가위 소위 계류 중
 - * 김미애·박광온·권인숙案 법사위 1소위 계류 중
- 형사법자문회의 개최, 해외 입법례 조사·분석, 국내 문헌 검토 등
 - 해외 입법례, 국내 문헌 등을 조사하여 관련 회의 자료 작성

□ 2024년도 시행계획

○ 중점 추진사항

-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 추진 내용

-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 추진 방법

- 해외 입법례, 논문 등 검토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2/4분기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3/4분기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4/4분기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가정폭력처벌법 적용범위를 동거관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해외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해외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해외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해외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검토 자료
○ 성과목표치 산식 : 법률 개정 검토	입법례, 논문 등 검토	입법례, 논문 등 검토	입법례, 논문 등 검토	입법례, 논문 등 검토		

□ 기대효과

- 데이트관계 폭력행위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남소정 검사	전화번호	02) 2110-3695
------	--------------	-----	--------	------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 과제개요

-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게 불법영상물 삭제지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 * 관련 근거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 그간의 추진실적

- 국가가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18.9월)
 - * ‘성폭력방지법’ 개정(‘18.3.13.), 시행(‘18.9.14.)
- 디지털 성범죄 발생·검거, 신고 현황 분석 및 디지털 성범죄 입법체계 개선안 마련 등을 위한 정책 연구
 -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21.6~12월)
- 디지털 성범죄 구상권 행사의 실효화 방안 관련 정책 연구
 - * 「새로운 정책 수요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22.6~12월)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입법 지속 지원

○ 추진 내용

- 구상권 행사 추진을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20.12월 발의) 지원
 - * 구상권 청구시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수집 및 구상권 업무 위탁 근거 규정(여가위 계류 중)
- 필요 시 구상권 행사의 요건·절차, 구상비용 산정 등 제반사항 검토 추진

○ 추진 방법

- 관련 연구 검토, 전문가·현장 의견수렴 및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통한 협의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4/4분기	- 구상권 행사 실효적 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현장 의견수렴 등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기대효과

-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2024년도 이후 추진계획

- 구상권 행사 추진 관련 입법추진사항 모니터링 및 입법 지속 지원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담당자	강동근 사무관 김민형 주무관	전화번호	02) 2100-6162 02) 2100-6163
------	--------------------	-----	--------------------	------	--------------------------------

□ 과제개요

- ‘온라인 그루밍’ 관련 정의·구성요건 등 종합적 검토 및 실제사례 등을 통한 범죄특성 현황 분석 등 추진

□ 그간의 추진실적

-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청소년성보호법 개정(제15조의2 신설), '21.3월)
- 제1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예비연구 실시('22)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현행법상 처벌 대상인 온라인 상 그루밍 행위를 오프라인 상 행위를 포함하도록 법 개정 검토·추진
- 제1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23) 결과 공표

○ 추진 내용

- 온라인 그루밍 처벌 대상 확대를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추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피해 현황, 피해자 지원 요구, 국민 인식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 1차 실시(3년 주기) 및 결과 공표·정책 개선 시 반영 등

○ 추진 방법

- 제반 사항 검토 및 관계기관·전문가 협의 등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4/4분기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검토 및 발의 추진
2/4분기	- 제1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 결과 공표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23.12월말 기준)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제1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	300	288	-	△300	△100
국비	300	288	-	△300	△100

기대효과

○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접근·유인 행위에 대한 효과적 제재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담당자	조준홍 사무관	전화번호	02) 2100-6405
------	--------------------	-----	---------	------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 과제개요

<고용노동부>

- 성매매 관련 국내외 유료직업소개소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지도·단속(사업정지, 경고·시정조치) 강화

<경찰청>

- 시·도경찰청 풍속수사팀 중심으로 온라인(알선사이트, 채팅앱), 오프라인(유흥업소, 성매매 집결지)을 통한 성매매 사범 집중단속 추진
- 재영업 행위 억제를 위해 범죄수익금 환수(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등) 및 건물주 입건 등 근원적 차단활동 추진

□ 그간의 추진실적

<고용노동부>

- 국내·외 유료직업소개소,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직업안정법 위반사항 적발, 공익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 '23년 10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법 위반 115건 적발
 - * ('20년) 등록취소 25, 사업정지 14, 경고·시정 93, 과태료 5
 - (*('21년) 등록취소 16, 사업정지 41, 경고·시정 78, 과태료 3
 - (*('22년) 등록취소 24, 사업정지 15, 경고·시정 117, 과태료 4
 - (*('23.10월) 등록취소 25, 사업정지 13, 경고·시정 76, 과태료 1
 - '23년 10월, 직업정보제공사업 법 위반 51건 적발
 - * ('20년) 사업정지 13, 경고·시정 68
 - (*('21년) 사업정지 4, 경고·시정 16
 - (*('22년) 사업정지 5, 경고·시정 67
 - (*('23.10월) 사업정지 7, 경고·시정 44

- '23년 10월, 거짓구인광고 신고포상금 6건(3백만원) 지급
* ('21년) 7건, ('22년) 6건, ('23.10월) 6건 지급

<경찰청>

-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 성매매사범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불법 영업의 형태 또한 음성화·지능화됨에 따라 집중단속 추진
* '22년 3,306건 단속, 7,018명 검거 → '23년 3,227건 단속, 6,918명 검거
- 범죄수익금 환수 및 건물주 입건 등 근원적 차단활동 추진
* (몰수·추징 보전 / 건물주 입건) '22년 596억 / 121명 → '23년 369억 / 122명

□ 2024년도 시행계획

<고용노동부>

- 성매매 등 불법 사전 차단을 위해 직업소개사업소 등에 대한 단속 및 자치단체 협력 강화
 - 자치단체 및 지방고용노동청 지도단속 강화 협조 지속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유흥업소 법 위반 의심 구인광고 모니터링(월2회) 및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수시 지도 점검, 반기 정기 지도·점검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지도단속
2/4분기	직업소개사업자·직업정보제공사업자 지도단속
3/4분기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지도단속
4/4분기	직업소개사업자·직업정보제공사업자 지도단속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직업안정법 지도·점검 적발(건)	218	158	232	166	195	'3년 실적평균 대비 5% 상향
○ 성과목표치 산식 : 직업안정법 지도·점검 적발(건)						

<경찰청>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성매매알선사이트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업소(유흥업소, 성매매집결지 등)를 이용한 성매매 사범 집중단속 추진
 - * 관계부처(여가부, 지자체 등) 합동 점검·단속으로 실효성 제고

○ 추진 내용 및 방법

- (성매매 단속 강화) 성매매 영업이 알선사이트 및 채팅앱 등과 연계한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의 성매매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추진
- (재영업 차단) 단속 후 추적 수사를 통한 범죄수익금 전액 환수,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건물주 입건 등 근원적 차단활동 추진
- (피해자 보호 강화) 성매매 피해자 표준 식별 모델 적극 활용하여 피해 아동·청소년 등 인지 등 피해자 보호 대책 실시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교육청·지자체와 학교 주변 유흥업소 합동단속 추진(상반기)
2/4분기	온·오프라인 연계 성매매 등 집중단속 추진
3/4분기	교육청·지자체와 학교 주변 유흥업소 합동단속 추진(하반기)
4/4분기	여가부·지자체와 외국인전용유흥업소 합동점검 추진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1년)	(2022년)	(2023년)		
○성매매 사범 단속(건)	3,044건	3,306	3,227	3,324	KICS 통계

기대효과

<고용노동부>

○ 국내·외 유료직업소개소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지도·단속(사업정지, 경고·시정조치) 강화를 통해 민간고용서비스시장 건전성 제고

<경찰청>

○ 성매매 사범 및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집중단속과 근원적 차단활동 추진으로 불법영업 근절하여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신지원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2-7393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정용기 경감		02) 3150-1396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9. 12. 25.) 및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 개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검찰청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성매매 범죄 유형에 적극 대응하고, 성매매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구매자들의 처벌 환경 조성 필요

□ 그간의 추진실적

- '19. 3., '19. 10. 여성·아동분야 타겟형 교육 실시
 - 성매매 등 성폭력 사건처리기준 철저 준수 및 성폭력·아동학대 수사시 유의사항 등 전국 여성·아동 전담검사 대상으로 타겟형 교육 실시
- '20. 6., 10. 여성·아동분야 저년차 검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성매매 등 성폭력사건 형사절차 개관 및 수사시 유의사항 등 교육 실시
- '20. 11. 성폭력·아동학대 관련 사건 고소인(고발인) 통지시스템 개선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 관련시스템 개선
- '21. 7~.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 구성·운영
 -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 구성·운영
 - 성매매 등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 작업 진행
- '21. 3., 10. 여성·아동분야 저년차 검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인신매매 수사실무 등 성매매 관련 교육 실시

- '21. 12.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 및 책자 배포
 -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일선 청 송부
- '22. 6., 9. 여성·아동분야 저년차 검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인신매매 수사실무 등 성매매 관련 교육 실시
- '22. 11. 성매매사범 처리기준 준수 지시
 - 성매매 재범 및 아동·청소년 성매매사범에 대한 사건 처분 시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엄정 대응
- '23. 3. 여성·아동분야 저년차 검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인신매매 수사실무 등 성매매 관련 교육 실시
- '23. 11. 성매매사범 처리기준 준수 지시
 - 성매매사건 처분 시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시에는 KICS 통합사건검색 기능을 활용하는 등 재범자 여부 확인 철저 지시

□ 2024년도 시행계획

- 성매매사범 엄정 대응(연중)
 - 아동·청소년 상대 성매매행위 등은 원칙적 구공판하고, 대상 아동·청소년이 16세 미만이거나 재범인 경우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원칙적 구속수사의 사건처리 지침 준수를 지시하여 아동·청소년 상대 성구매자 엄정 대응
- 철저한 범죄수익환수로 범행 동기 차단(연중)
 - 성매매 알선 사범에 대한 철저한 몰수·추징 보전으로 범죄 수익 박탈, 동기 차단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구매자 기소율(%)	15.6	17.6	16.5	23.3 (23.1~10.)	16.6	검찰통계 시스템
○ 성과목표치 산식 : 처분인원 대비 기소인원 비율						

□ 기대효과

- 성구매자 등 성매매 사범 엄정 대응

담당부서	대검찰청 형사4과	담당자	고성민 수사관	전화번호	02) 3480-2527
------	--------------	-----	---------	------	---------------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상담소, 보호(지원)시설 등 폭력유형별 지원 인프라 확대로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및 서비스 내실화 도모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예산 편성 및 배정) → 시·도, 시·군·구(사업추진 및 예산집행관리)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피해자 상담 및 의료·법률 등 지원)
- (주요내용)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상담소, 보호(지원)시설 등 폭력유형별 지원 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에 대한 온·오프라인 접근성 제고
 -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을 통해 서비스 점점 확대
 - * (국비 지원, '23.11월) 성폭력피해 상담소 : 102개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35개소, 해바라기센터 : 39개, 폭력피해 상담소 : 128개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65개소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종사자 확대로 피해자 지원 서비스 내실화('19년)
 - * 성폭력피해 상담소(104명),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30명), 해바라기센터 간호인력(39명)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9개소, 그룹홈 1개소 신규 설치로 지원서비스 기반 확대
 - 남성 보호시설 신규 설치(1개소)로 지원서비스 기반 확대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여성폭력 피해자 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피해자 접근성 제고(연중)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추가 인력 확충(연중)

○ 추진 내용

-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 미성년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 배치 및 운영
*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 : '24년 13개소 각 1명 신규 배치
-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1개소

○ 추진 방법

-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예산 교부(매분기별)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예산 교부(매분기별)
- 미성년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운영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교부(1/4분기)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리·운영 지원(계속)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리·운영 지원(계속)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교부(1/4분기) -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운영(계속)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교부(2/4분기)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리·운영 지원(계속)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리·운영 지원(계속)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교부(2/4분기) -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운영(계속)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교부(3/4분기)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리·운영 지원(계속)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리·운영 지원(계속)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교부(3/4분기)
4/4분기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교부(4/4분기)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리·운영 지원(계속)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리·운영 지원(계속)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교부(4/4분기) -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운영(계속)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폭력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37,537	36,689	37,354	△183	△0.5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양성평등 기금)	39,199	37,907	39,615	416	1.1

□ 기대효과

○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인프라 확충을 통한 피해자의 시설 접근성 제고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담당자	양재명 사무관 차경선 사무관	전화번호	02) 2100-6396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이현진 사무관 김수연 주무관
					02) 2100-6425
					02) 2100-6426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전반적인 지원서비스의 수준 제고
- (사업대상) 전국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 (수행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주요내용) 종사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운영,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 그간의 추진실적

- 여성폭력피해자 종사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운영
 - 여성폭력방지 전문상담원(성매매방지상담원) 양성
 - * ('20년) 88명 → ('21년) 92명 → ('22년) 96명 → ('23년) 94명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유형별, 경력별 맞춤형 보수교육 운영
 - * ('20년) 3,780명 → ('21년) 4,781명 → ('22년) 8,973명 → ('23년) 12,597명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대리외상 해소 및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 * ('20년) 185명 → ('21년) 135명 → ('22년) 565명 → ('23년) 455명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복합 피해 증가 및 피해 양상 다양화 대응 위한 종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신규 실시
- 추진 내용
 - 종사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운영

-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종사자 양성 및 보수교육 운영, 소진방지 프로그램 실시(연중)
2/4분기	종사자 양성 및 보수교육 운영, 소진방지 프로그램 실시(연중)
3/4분기	종사자 양성 및 보수교육 운영, 소진방지 프로그램 실시(연중)
4/4분기	종사자 양성 및 보수교육 운영, 소진방지 프로그램 실시(연중)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예산에 포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14,233	14,233	14,692	459	3.22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수료자 수(명)	3,780명	4,781명	8,937명	12,597명	11,700명	○ 실시간 대면교육 (집체 및 화상) 수료 인원 2,700명+ 이러닝 수료 인원 9,000명
○ 성과 목표치 산식: 실시간대면교육(집체 및 화상) 수료 인원 + 이러닝 수료 인원						

※ '23년 실적 대비 '24년 목표치 감소 사유 : 종사자 보수교육 예산 감액(740백만원 → 650백만원)에 따라 종사자 교육 횟수 조정('23년 137회 → '24년 122회) 운영

□ 기대효과

- 성매매방지상담원 등 신규 인력 양성으로 지원인력 확충
- 종사자 역량 강화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품질 제고
-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통한 종사자 정서적·심리적 소진 예방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조명식 사무관	전화번호	02) 2100-6387
------	-------------	-----	---------	------	---------------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 과제개요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종합지원 상담 및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을 통해 사건 처리절차 등에 대한 초기 상담을 실시하고, 심리·법률·의료 등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피해자 지원 및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개선 등 추진

□ 그간의 추진실적

- '20. 1월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설치
- '20. 3월 : 종합지원센터 본격 운영, 컨설팅 및 사건처리지원단 접수·공모
- '20. 12월 : 기관장 사건 전담신고 창구 개설·운영
- '22. 1월~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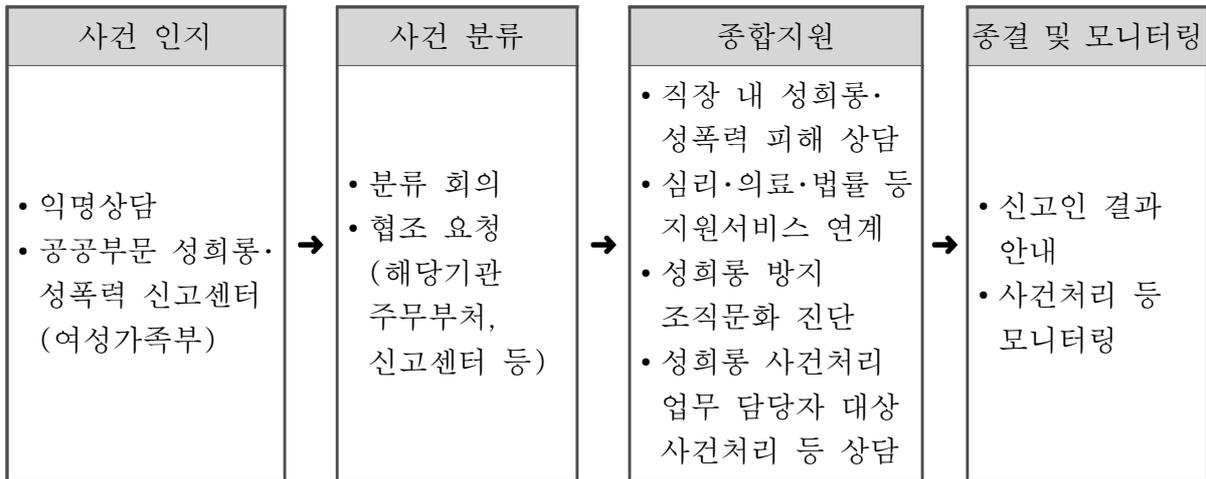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및 시행('21.10.21.~)에 따른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업무 등 공공부문 기관 내 성희롱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 집중 추진
- 추진 내용
 - 익명상담전화(02-735-7544) 운영
 - 피해자 지원 연계 : 피해자 초기 상담 등을 통해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의료·법률 등 지원기관 연계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기관 내 성희롱 예방과 사건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
- 사건처리 상담: 성희롱 사건처리 업무 담당자 대상 사건처리 절차 상담, 전문 기관 정보 제공 등

○ 추진 방법

- 피해자 보호 종합 지원 및 사건처리 지원을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지원 서비스 연계 - 성희롱 조직문화 진단 수요 파악 및 운영 - 기관 내 사건처리 업무 담당자 대상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등 상담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지원 서비스 연계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 기관 내 사건처리 업무 담당자 대상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등 상담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지원 서비스 연계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 기관 내 사건처리 업무 담당자 대상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등 상담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지원 서비스 연계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 기관 내 사건처리 업무 담당자 대상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등 상담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운영 지원에 포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성폭력 등 발생기관 재발방지)	14,233 (240)	14,233 (240)	14,692 (140)	459 (100)	3.2 (△41.6)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희롱방지 조직문화 진단 건수(건)	-	-	121	120	100	'24년 예산 감액에 따른 목표치 조정

□ 기대효과

-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초기상담 등 피해자 중심의 신고 시스템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 종합 지원
- 공공기관 등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및 재발방지 역량 강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담당자	박용준 사무관	전화번호	02) 2100-6164
------	-----------------	-----	---------	------	---------------

□ 과제개요

- 젠더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체계의 범부처 통합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이행점검의 주기적 환류를 통한 정책 이행력 제고
 - 5년 단위 범부처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에 따른 부처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의 체계적인 환류체계 구축

□ 그간의 추진실적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 심의·확정('20.2월)
- 2020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20.5월)
- 2021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21.3월)
- 2020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21.4~10월)
- 2022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22.3)
- 2021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22.4~10월)
- 2023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23.3)
- 2022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23.4~10월)

□ 2024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및 방법
 - 2024년 시행계획 수립 및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
 - 2023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분석·평가 실시

- 지역사회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 * 범죄 예방 조치 규정 및 현황, 안전시설, 범죄예방 사업 등 전반에 대해 분석
- 지역사회 내 폭력피해 지원노력에 대한 지자체 평가 반영 추진

○ 추진 방법

- 2022년 시행계획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24년 시행계획 수립
- 연구용역 진행 및 관련 부처·기관별 의견 수렴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지자체 폭력피해 지원 노력에 대한 평가 반영 추진(행안부 협조)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안) 마련('24.2월) - 2024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24.3월)
2/4분기	-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지침 안내('23.5월) - 지자체 폭력피해 지원노력에 대한 평가 반영 추진('24.上)
3/4분기	-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실시('23.6~10월) - 지자체 폭력피해 지원노력에 대한 평가 관련 협의(계속)
4/4분기	-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결과 공유(12월) -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및 기본계획 발표(12월) - 지자체 폭력피해 지원노력에 대한 평가 관련 협의(계속)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분석·평가 실시	분석·평가 지침 마련	분석·평가 지침 마련	분석·평가 지침 마련	분석·평가 지침 개정	분석·평가 실시	분석·평가 실시(공문)

□ 기대효과

- 부처별 여성폭력방지정책 이행력 제고를 통해 여성폭력 예방, 피해자 지원의 여성폭력 방지체계 구축 강화,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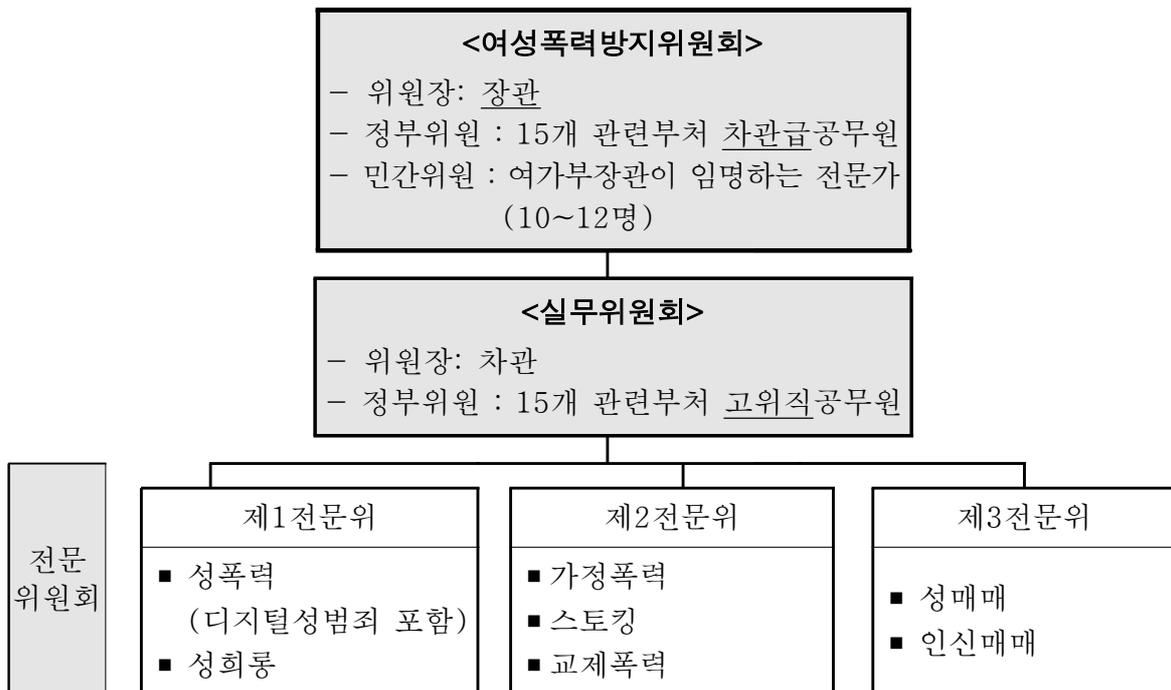
□ 기타 사항

- 관련 부처·기관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분석·평가 결과 적극 반영 필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양현순 서기관 유동길 주무관	전화번호	02) 2100-6306 02) 2100-6307
------	-------------	-----	--------------------	------	--------------------------------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정책 심의·조정을 위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하여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주요정책 논의
- (회의체 구성) 범정부 협의체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위원장 : 장관) 및 실무위원회(위원장 : 차관)를 운영
- (정부위원) 15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당연직)
 -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대검찰청, 경찰청
- (민간위원)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운영('20.2월~)



□ **그간의 추진실적**

- 여성폭력방지정책 심의·조정을 위한 제1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20~)
- 제2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22.2.) 및 전문위원회 개편('23.3.)
 - '디지털성범죄'(제4전문위) 분야를 '성폭력'(제1전문위) 분야에 포함, 새로이 시행되는 '인신매매 피해' 분야를 '성매매'(제3전문위) 분야에 추가
- '23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본 위원회 2회, 실무위원회 2회 개최

□ **2024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을 통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분석평가, 주요 정책 이행점검 등 여성폭력방지정책 이행력 제고
- 제3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24.2~)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상반기	-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하반기	- 제1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 성과목표치 산식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개최 횟수	6회	4회	6회*	4회	4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공문

* '22년 여성폭력통계 공표(3년 주기 의무)로 위원회 추가 개최(2회)

□ 기대효과

- 여성폭력 방지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부처 간 연계·협력 및 정부위원, 민간
위원의 심의·조정을 통해 여성폭력방지정책의 효과성 제고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정유진 사무관 우희정 주무관	전화번호	02) 2100-6382 02) 2100-6383
------	-------------	-----	--------------------	------	--------------------------------

□ 과제개요

- 여성폭력 관련 피해자 지원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교육, 각종서비스 연계, 지원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으로 수행

□ 그간의 추진실적

- 특수법인 설립 법적근거(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 제정·공포('18.12.18.)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특수법인 전환('19.12.19.)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5대 폭력 통합지원을 위한 원스톱 기능 강화, 통합지원체계 고도화
 - 광역 단위 지자체 대상 여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중앙기능 본격 수행
 - 정책 및 현안 대응 주도 위한 중앙기관 네트워크 강화, 심포지엄 개최
 - 신종폭력 대응 업무매뉴얼 개발 등 피해자지원기관 지원 내실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분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등 국제 주도적 역할 강화로 국내외 기관 인지도 확산

○ 추진 내용

- 여성폭력방지 및 현장지원

- | | |
|---------------------------|--------------------|
|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효율화 | • 여성폭력방지기관 현장 지원 |
| • 여성폭력방지 인식개선 홍보 | • 성폭력 등 발생기관 재발 방지 |
|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소진방지 | |
| • 여성폭력방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
| • 여성폭력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체계 구축 | |

- 종사자 교육 및 역량강화

- 여성폭력방지기관 종사자 양성교육
- 여성폭력방지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 및 컨설팅

- 여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

- 디지털성범죄 대응역량 강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 여성폭력 초기대응력 강화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연구 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조사연구, 기록, 홍보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대외협력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일본군'위안부'문제 전시 및 유네스코 등재 지원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예산에 포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14,233	14,233	14,692	459	3.22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여성폭력방지 및 현장지원 사업 효과성(점)	84.1	87.35	89.2	90.25	89.74	○ '22년과 '23년 실적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 성과목표치 산식 : 종사자교육 현업적용도, 컨설팅 만족도 평균						

□ 기대효과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전담기구 운영으로 5대 폭력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 실행력 강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조명식 사무관	전화번호	02) 2100-6387
------	-------------	-----	---------	------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지역사회 단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원기관과 유관기관 간 연계 강화 및 현장 중심의 개선 방안 도출

* 근거 : 국정과제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 확립

□ 그간의 추진실적

- 여성폭력 사건대응 및 피해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강화

연도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20년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통합연대회의(15회) - 수사 분야 협업워크숍(17회) - 장애 분야 이슈간담회(4회)
'21년	- 이주여성 폭력피해 대응강화 협업워크숍(7회) - 폭력피해 장애여성 지원강화 협업워크숍(3회)
'22년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통합연대회의(8회)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정신적 장애인 지원·지원을 위한 자원 확장 협력간담회(12회) - 초기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찰·유관기관 간담회(12회)
'23년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통합연대회의(8회) - 이주여성·스토킹 피해 지원 이슈간담회(4회) - 초기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찰·유관기관 간담회(7회)

□ 2024년도 시행계획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 5대 폭력 통합지원 강화를 위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및 유관기관 협업 강화

○ 추진 내용

- 5대 폭력 광역단위 통합지원 전문가 자문단 회의(3회)
- 통합지원 관련 이슈 간담회(3회)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대표자 회의(8회)
- 유관기관 협업회의(4회)

○ 추진 방법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및 지원 고도화를 위한 회의·간담회 추진

* 자문단 구성 및 회의, 이슈 간담회, 지원기관 대표자회의, 유관기관 협업회의 등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전문가 자문단 회의, 유관기관 협업회의, 지원시설 대표자 회의
2/4분기	- 이슈 간담회, 지원시설 대표자 회의, 유관기관 협업회의
3/4분기	- 전문가 자문단 회의, 이슈 간담회, 지원시설 대표자 회의, 유관기관 협업회의
4/4분기	- 전문가 자문단 회의, 이슈 간담회, 지원시설 대표자 회의, 유관기관 협업회의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예산에 포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14,233	14,233	14,692	459	3.22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성과지표명 : 지원시설 간 네트워크 강화(간담회, 회의)	36회	10회	28회	19회	18회	자문단 회의(3회), 이슈 간담회(3회), 대표자회의(8회), 협업회의(4회)

- ※ '20년 대비 '21년 실적 감소 사유 : '21년 코로나19로 인한 통합연대회의 미실시
- ※ '22년 대비 '23년 실적 감소 사유 : 예산 감액(40백만원→25백만원)에 따라 간담회 횟수 조정 운영(12회→4회) *'23년 목표치(17회) 대비 초과 달성(+2회)
- ※ '23년 실적 대비 '24년 목표치 감소 사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시설 간 네트워크 사업 재편

□ 기대효과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증가하는 복합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방안 도출 및 추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조명식 사무관	전화번호	02) 2100-6387
------	-------------	-----	---------	------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대검찰청 형사4과, 통계청 통계기준과,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 과제개요

<여성가족부>

- 효과적인 여성폭력방지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여성폭력 발생·피해·지원 등 여성폭력통계를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산출하여 공표

<법무부>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9. 12. 25.) 및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 개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여성폭력 통계 구축

<대검찰청>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9. 12. 25.) 및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 개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검찰청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통계청>

- 성폭력 등 여성 관련 범죄통계의 신뢰도 제고
 - 여성대상 범죄현황 파악, 예방 등 정책 수립 기초자료인 범죄통계의 개선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관련 정부부처의 공동 대응 필요
 - 국내 범죄통계 현황 및 문제점 파악, 효율적이고 국제 비교가능한 범죄통계 구축을 위한 국제범죄분류 체계 기준의 한국범죄분류체계 개발 추진

<경찰청>

- 경찰청 여성관련 통계 현황을 파악, 「여성폭력방지법」상 여성폭력통계 구축을 위한 부처 간 통계지표 등을 공유하여 여성안전 정책 추진에 기여

□ 그간의 추진실적

<여성가족부>

- 여성폭력 통계 구축 및 운영 위탁 추진을 통한 '여성폭력 통계 지표 체계(안)* 마련('20년)
 - * 여성폭력 발생·피해·지원 관련하여 수집·산출이 필요한 여성폭력 통계 범위·목록 분류
- 여성폭력통계 지표 체계(안)에 따른 통계 수집,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추진
 - * 여성폭력유형별(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성매매, 아내폭력,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폭력 등) 범죄 통계 산출 가능하도록 범죄통계원표 개정 요청
- 여성폭력통계 공표('22.12)
 - * (구성) 4개 영역(▲발생현황 ▲피해현황,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범죄자 처분), 152개 지표
- 여성폭력통계-성인지통계시스템 연계를 위한 검토회의 개최('23.2.)
 - * 여가부-여정연 간 협업을 통해 여성폭력통계 데이터 국민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 검토
- 여성폭력 통계 개선을 위한 통계협의회 개최('23.12.)
 - *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법원행정처가 참여하여 여성폭력통계 개선 방안 논의

<법무부>

- 신상정보등록시스템을 활용한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범죄자 등의 유형별 현황을 통한 여성통계 구축
- 성폭력,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현황, 진술조력인 지원 현황을 통한 여성통계 구축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유형별, 성별, 시도별, 의료비, 자립 지원 등 현황을 통한 여성통계 구축

○ '2022년 여성폭력통계' 공표 협업

- 여성가족부 주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여성폭력 관련 통계 종합하여 공표

<대검찰청>

○ '19. 7.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주최 포럼 개최

- 전문연구검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공동 연구진행하여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 모색(범죄분석 개선을 위한 성폭력 관련 통계 재정비) 및 검찰 사건 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의 현황 등의 주제로 연구결과 발표

○ '20. 5. 디지털·성착취물 관련 성범죄 사범 통계 구축

- 기존 검찰통계사무규정 내 성폭력사범의 일부로 분류되었던, 디지털·성착취물 관련 성범죄사범을 단일사범으로 분류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반포,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음란물제작·배포 등) 7개 대표 죄명으로 구성하여 통계 구축

○ '21.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세부 죄명 신설

-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에 대응하여 '16세미만 아동·청소년 간음', '16세미만 아동·청소년 추행' 통계 죄명 신설

○ '21. 10. 스토킹사범 통계 구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스토킹사범 통계 구축

○ '22. 1.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통계 구축

- 검찰통계사무규정 내 '성폭력처벌법위반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죄명을 세분화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 제14조 제4항에 대응한 통계 구축

○ '2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통계 구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5조의2 신설에 따라 이에 대응한 '성착취목적대화등' 통계 죄명 구축

<통계청>

○ 여성 관련 범죄통계 분류체계 개발

-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의 국제범죄분류(이하 ICCS*) 채택 및 이행권고에 따른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개발 추진(1단계, '17~'20년)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 국제범죄분류체계 및 국내 죄명코드 연계율 제고 등 한국범죄분류 제정을 위한 분류체계(안) 고도화 연구 수행(2단계, '21~'23)

* 성범죄(ICCS 대분류 03)를 포함한 한국범죄분류 개발(~'23)

○ 여성 관련 범죄통계 작성기관 협력체계 구축

- 분류체계 개선, 국제범죄분류와 한국범죄분류체계 간 여성 관련 범죄의 연계 타당성 검토, 자료 구축 및 활용을 위한 국내외 협업 실시

※ 범죄통계분류 국내외 협업 실적

- 부처협업 TF운영 계획 수립(2월), 협업회의(5월, 서울)로 분류 고도화 추진

※ 범죄분류 개발 절차 : 개발연구('17년~'20년) → 제정연구('21년~'23년)

- UNWOMEN 성평등센터-UNODC 아태범죄통계협센터 공동 주관 페미사이드 근절 국제 국제회의 참가(9월), 2023년 범죄통계 전문가 국제컨퍼런스 개최(10월) 등을 통해 범죄통계협력 강화 및 국제범죄분류 이행 사례 공유

<경찰청>

○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세분화 된 여성폭력 산출이 가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여 경찰청 범죄통계시스템(CSS) 고도화사업에 참여

- △ 원표 개선을 통한 가·피해자간 관계 세분화 △ 살인에 선행하는 여성폭력 산출체계 마련 △ 성폭력범죄 범주개선* 및 산출체계 마련 등

* 매년 발간되는 '경찰청 범죄통계'상 범죄분류가 아닌 별도의 분류 체계

○ 여성폭력통계 공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2년 여성폭력통계로 공표·활용될 자료 신규 작성·제공

□ 2024년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

○ 추진 내용

- 여성폭력통계 수집,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추진(반기별)
- 법무부, 경찰청 등 흩어져 있는 통계를 수집·공표한「여성폭력통계」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3조 개정('24.3월 개정)
 -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통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 관련 통계 자료를 법원행정처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예산사업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지표명 : 여성폭력통계 회의 추진(신규)	-	-	-	2회	2회	반기별 개최
○ 지표명 : 여성폭력통계 보고서 마련	통계 목록·체계 (안) 마련	여성폭력 통계 운용 지침 마련	여성 폭력 통계 보고서 마련			여성폭력통계 보고서

<법무부>

○ 여성폭력 통계 구축(연중)

- 범죄유형별, 피해자유형별, 지역별 등 통계 구축 노력

○ 유관기관과의 공동 연구 등 협업시스템 강화(연중)

- 여성폭력 통계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여성 폭력 통계 개선 방안 공동 연구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여성폭력통계 신설(건)	1	1	1	1	1	신상정보등록 시스템 등

<대검찰청>

○ 여성폭력 통계 구축(연중)

-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여성폭력 통계 구축 노력

○ 유관기관과의 공동 연구 등 협업시스템 강화(연중)

- 여성폭력 통계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여성 폭력 통계 개선 방안 공동 연구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단위 기재)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여성폭력통계 신설(건)	1	2	1	1	1	검찰통계 시스템

<통계청>

○ 한국범죄분류체계(안) 일반분류 제정·고시("24.6.)

- 한국범죄분류체계 제정안 작성, 자문위원회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후 일반분류 제정·고시

- 국제범죄분류와 국내 범죄명 연계 자동화 연구를 통한 분류체계 포괄성, 안정성 확보 및 범죄통계 품질 제고(국내 여성폭력 통계 활용 및 국제비교성 제고)

○ **국내외 관련 기관·기구 협업 강화 및 이용자 인식 제고**

- 한국범죄분류체계 합의점 도출을 위한 부처간 협업 강화, 국제기구(UNODC) 국제범죄분류 활용 매뉴얼 검토(연내)
- 분류항목 해설서 제공 및 교육·홍보 실시
- 한국범죄분류 활용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 청취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운영(4, 9월)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한국범죄분류 초안 및 조정안 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 의견 수렴 (1~3월)
2/4분기	• 한국범죄분류 잠정안 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 의견 수렴(4월~5월) • 한국범죄분류체계 활용지원 연구용역 실시(~11월) • 한국범죄분류 제정 및 고시(6월)
3/4분기	• 분류 활용 활성화 자문위 개최
4/4분기	• 한국범죄분류체계 활용지원 연구용역 결과 공개(12월)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 해당사항 없음

<경찰청>

- **(검수·보완)** 범죄통계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완료되고 데이터가 축적되면, 새롭게 마련된 통계체계에 대한 오류·미비점 등 검수 및 보완작업 병행
- **(협업 강화)**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통계 공표' 에 적극적으로 협업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 비예산 사업

○ 성과 지표 : 해당없음

□ 기대효과

○ 여성폭력통계를 반영한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설계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양현순 서기관 유동길 주무관	전화번호	02) 2100-6306 02) 2100-6307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서안나 주무관		02) 2110-3998
	대검찰청 형사4과		고성민 수사관		02) 3480-2527
	통계청 통계기준과		심경보 사무관		042) 481-2566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송진영 경감		02) 3150-0823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12월 시행)」 상 여성폭력의 지역별·연령별·직업별 분포, 여성폭력의 발생원인·배경, 여성폭력의 유형·특성·빈도 등에 대해 조사*
 - * 관계 법률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해 3년 주기로 실태조사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문항 개발, 표본설계 등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사전연구 추진('20년)
- 개별법에서 누락된 스토킹·데이트 폭력 등 여성폭력 실태조사 최초 실시('21년)
 - * 조사표 확정 및 표본설계(8월), 통계작성 승인(9월, 통계청), 조사 실시(9~10월, 만 19세 이상 여성, 표본 7천명)
- 여성폭력실태조사 결과 공표('22.8.)
- 여성폭력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23.3.~12.)

□ 2024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실태조사와의 유사·중복성 해소 및 통계 신뢰도 제고를 위한 통합실태조사 근거* 마련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 개정('24.3월 개정)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에 포함되어 집행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765	765	3,415	2,631	333.6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2024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표	사전 연구 실시	본조사 실시	결과 공표		본조사 실시	결과보고서 등
○여성폭력실태조사 개선 방안 연구용역 실시	-	-	-	연구 용역 실시	-	결과보고서 등

□ 기대효과

- 여성폭력에 관한 인식, 여성폭력 피해 양상 등 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 폭력방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양현순 서기관 유동길 주무관	전화번호	02) 2100-6306 02) 2100-6307
------	-------------	-----	--------------------	------	--------------------------------

